

Gyeonggido Elder Protection Agency

2022년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경기등부/경기서부/경기북부/경기북서부]

본 보고서 실적은 경기도 자체자료입니다.

CONTENTS

2022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목 차

- 01 I.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07 II. 일반현황
- 15 III.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분석 요약
- 33 IV. 경기도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 53 V. 2022년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 69 VI. 주요 사례분석 결과

표목차

제Ⅳ장. 경기도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 34 [표4-1] 신고접수 건수
- 35 [표4-2] 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 건수
- 35 [표4-3] 월별 신고접수
- 36 [표4-4]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 36 [표4-5]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 37 [표4-6] 시군별 신고접수
- 38 [표4-7] 학대발생 장소
- 39 [표4-8] 시군별 가정 내 학대 판정 건수
- 40 [표4-9] 시군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학대 판정 건수
- 41 [표4-10] 시군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내 학대 판정 건수
- 41 [표4-11] 시군별 재가복지시설 내 학대 판정 건수
- 42 [표4-12] 시군별 공공장소 내 학대 판정 건수
- 42 [표4-13] 시군별 요양병원 내 학대 판정 건수
- 43 [표4-14] 시군별 일반병원 내 학대 판정 건수
- 43 [표4-15] 시군별 기타장소 내 학대 판정 건수
- 44 [표4-16] 학대유형
- 45 [표4-17] 월별 학대사례 상담
- 45 [표4-18] 월별 일반사례 상담
- 46 [표4-19] 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 46 [표4-20] 학대피해노인·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 47 [표4-21] 신고자 유형
- 48 [표4-22] 신고접수 경로
- 48 [표4-23]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 49 [표4-24]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 49 [표4-2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현황(실인원)
- 49 [표4-2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현황(연인원)
- 50 [표4-2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여 입소현황
- 50 [표4-2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자 퇴소현황
- 50 [표4-2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쉼터 입소자 학대유형
- 51 [표4-3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쉼터 서비스 내용

표목차

제 V 장. 경기도내 2022년 노인학대 현황

- 54 [표5-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55 [표5-2] 노인학대 월별 신고접수 현황
- 56 [표5-3] 노인학대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 57 [표5-4] 2022년 현장조사 실시 현황
- 57 [표5-5] 2022년 학대사례 사례판정 결과
- 59 [표5-6] 신고자 유형 현황
- 60 [표5-7] 신고접수 경로 현황
- 60 [표5-8]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현황
- 61 [표5-9] 노인학대유형 현황
- 62 [표5-10] 학대발생장소 현황
- 63 [표5-11] 노인학대 시군별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현황
- 64 [표5-12] 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 64 [표5-13] 월별 학대사례 상담
- 65 [표5-14] 상담방법 현황
- 65 [표5-15] 학대피해노인 제공 서비스 현황
- 65 [표5-16]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 66 [표5-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현황
- 66 [표5-1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현황
- 66 [표5-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유형 현황
- 67 [표5-2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내용
- 67 [표5-21] 2022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표목차

제VI장. 경기도내 2019~2022년 주요 사례분석 결과

- 70 [표6-1]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 70 [표6-2]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분포
- 71 [표6-3] 학대피해노인 성별 사례판정 유형 분포
- 72 [표6-4] 학대피해노인 성별 학대장소 분포
- 73 [표6-5]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분포
- 74 [표6-6]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76 [표6-7] 학대피해노인 결혼상태 분포
- 76 [표6-8]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동거 여부
- 76 [표6-9]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분포
- 77 [표6-10]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분포
- 77 [표6-11] 학대피해노인 교육수준 분포
- 77 [표6-12] 학대피해노인 경제수준 분포
- 78 [표6-13] 학대발생빈도 분포
- 78 [표6-1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지속 기간
- 78 [표6-1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발생빈도
- 81 [표6-16]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분포
- 81 [표6-17]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분포
- 82 [표6-18] 학대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 82 [표6-19]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분포
- 83 [표6-20]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분포
- 84 [표6-21]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분포
- 84 [표6-22] 학대피해노인 종결현황과 사유
- 85 [표6-23] 학대행위자 성별
- 85 [표6-24]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대
- 85 [표6-2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86 [표6-26] 학대행위자 결혼상태
- 86 [표6-27] 학대행위자 교육수준
- 87 [표6-28] 학대행위자 경제수준
- 87 [표6-29]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88 [표6-30] 학대행위자 주관적 건강상태

표목차

제VI장. 경기도내 2019~2022년 주요 사례분석 결과

- 88 [표6-31] 학대행위자 질병유형
- 89 [표6-32]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 89 [표6-33] 학대행위자 치매정도
- 90 [표6-34]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 91 [표6-35] 학대발생 장소
- 91 [표6-36] 신고자 유형
- 92 [표6-37] 시설학대 피해노인 연령대
- 93 [표6-38] 시설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결과 유형
- 94 [표6-39] 시설학대 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95 [표6-40] 시설학대 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97 [표6-41] 시설학대 피해노인 교육수준
- 97 [표6-42] 시설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 98 [표6-43] 시설학대 피해노인 학대 지속기간
- 99 [표6-44] 시설학대 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 99 [표6-45] 시설학대 피해노인 질병유형
- 100 [표6-46] 시설학대 피해노인 장애유형
- 100 [표6-47] 시설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 100 [표6-48] 시설학대 유형별 학대지속기간
- 101 [표6-49] 시설학대 피해노인 종결현황과 사유
- 102 [표6-50] 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 건수
- 102 [표6-51] 재학대 피해노인 연령대
- 103 [표6-52]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사례판정 유형
- 103 [표6-53]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104 [표6-54] 재학대 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105 [표6-55] 재학대 피해노인 결혼상태
- 105 [표6-56]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 105 [표6-57] 재학대 발생장소
- 106 [표6-58] 재학대 피해노인 주거형태
- 106 [표6-59]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 106 [표6-60]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자유형
- 107 [표6-61] 재학대 피해노인 교육수준

표목차

제VI장. 경기도내 2019~2022년 주요 사례분석 결과

- 107 [표6-62] 재학대 피해노인 경제수준
- 107 [표6-63] 재학대 발생빈도
- 108 [표6-64] 재학대 지속기간
- 108 [표6-65] 재학대 피해노인 주거형태
- 108 [표6-66] 재학대 피해노인 직업유형
- 109 [표6-67] 재학대 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 109 [표6-68] 재학대 피해노인 질병유형
- 110 [표5-69] 재학대 피해노인 장애유형
- 110 [표6-70]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 110 [표6-71] 재학대 피해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 111 [표6-72] 재학대 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112 [표6-73] 2019년~2022년 재학대 유형별 학대지속기간
- 113 [표6-74] 재학대 피해노인 종결현황과 사유 분포

Gyeonggido Elder Protection Agency

2022년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경기동부/경기서부/경기북부/경기북서부]

1.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발달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3개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강화사업을 별도 수탁하여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사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19년~2022년 동안 발생한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길 바란다.

2.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본 자료는 경기도 자체 자료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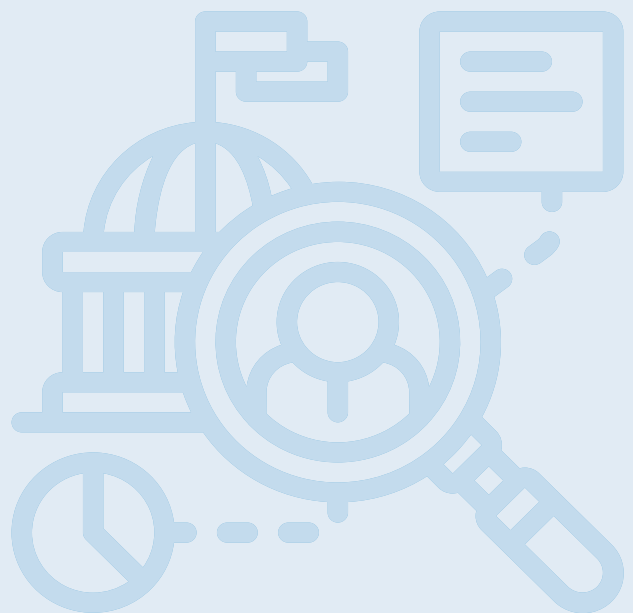
3. 자료분석

- 노인학대 현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 사례에 대한 연도별(2019년~2022년) 추이를 살펴봄
-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무응답 자료는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변수와 관련된 문항 전부를 응답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신뢰 수준 95%임.

2022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 1 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

01 신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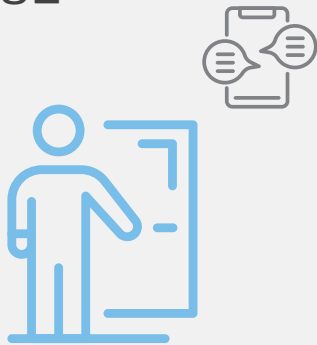
1577-1389 전화 (24시간 상담)

02 접수



현재 상황 파악, 피해노인 안전확보

03 현장방문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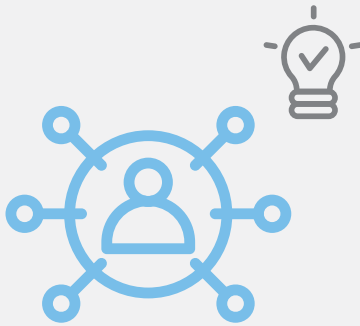
04 사례판정



학대 여부 판정, 개입방향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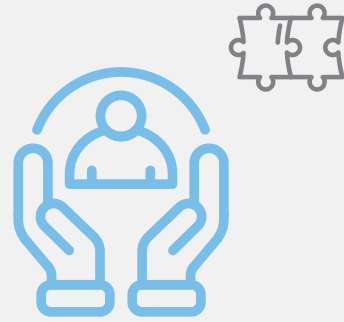


05 서비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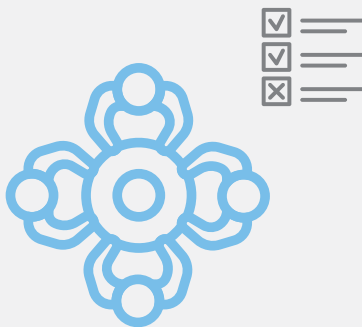
피해노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06 서비스 제공



공식적 · 비공식적 자원 연계

07 서비스 종결



사례 개입 지속여부 판단 및 종결

08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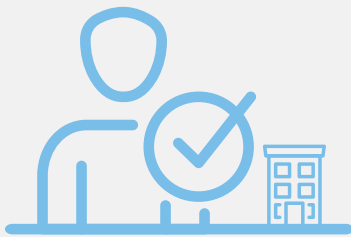
종결 이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학대 재발 방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하는 일

Gyeonggi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01 인테이크 및 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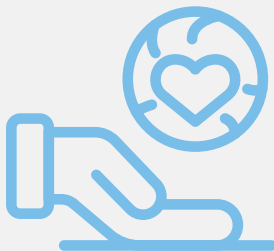
피해노인, 보호자 대상 설명 후 입소

02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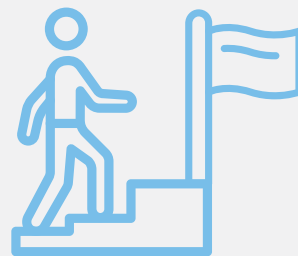
피해노인 건강검진 및 상태확인

03 서비스제공(프로그램)



건강관리, 심리치유, 사회적응사업 등

04 퇴소



상황종결 또는 거주지 확보 시 퇴소

여 백

2022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II장
일반현황



일반현황

1. 운영법인 소개

- 운영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대표자 안혜영
- 설립일 2020년 1월 29일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건강증진센터
- 연락처 (전화) 031)267-9389 (팩스)070-8280-0090
- 홈페이지 <http://gg.pass.or.kr>
- 비전과 목표



2.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개

- **설립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위탁일** 2020. 4. 1
- **기관정보**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운영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오행남	19. 02. 25	031-268-1389	031-601-9331	gg1389. or.kr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성남시	이재홍	04. 11. 10	031-736-1389	031-735-3795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김지순	06. 03. 01	031-821-1461	031-821-2246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이현주	10. 09. 30	032-683-1389	032-683-1388	
경기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고양시	김한국	21. 07. 20	031- 978-1389	031- 696-5610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의정부시	김지순	11. 01. 10	-	-	-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부천시	이현주	11. 04. 05	-	-	-
경기남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용인시	이재홍	22.11.01	-	-	-

3. 미션 및 비전

미션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이 지켜지는 경기도

비전 우리는 어르신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며, 노인학대 예방의 중심기관

핵심가치

권익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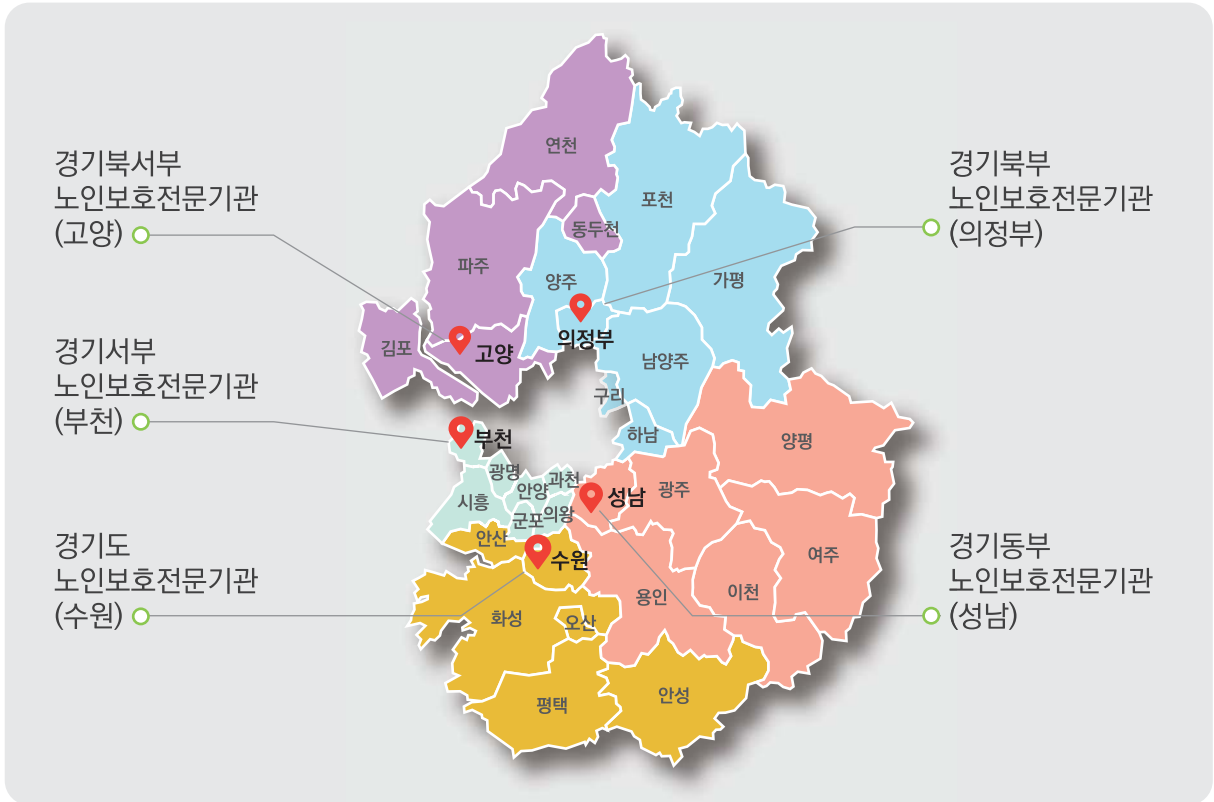
전문성

실천

연대

- 경기도 어르신의 노인인권을 향상한다
- 경기도 어르신의 권리옹호자로 어르신이 존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든다
- 경기도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선다

4. 관할구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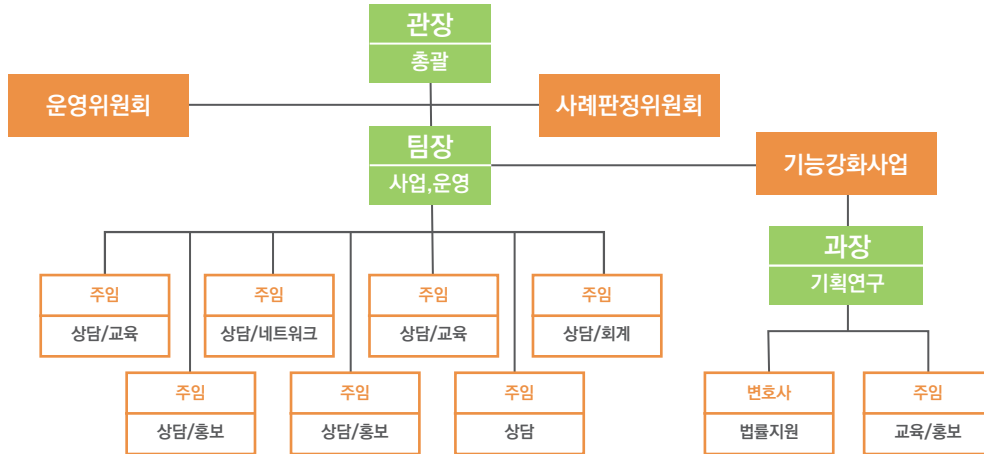


5.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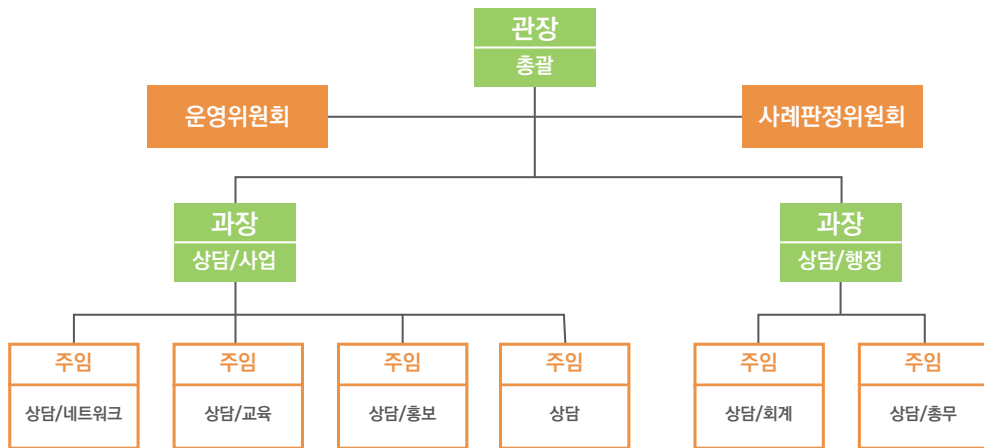
- 2004.11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現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06.01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010.09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011.01 경기북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2011.04 경기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2018.12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
- 2019.07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북부,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북부,서부)
- 2019.12 경기도 공공센터협의회 구성
- 2020.0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관으로 운영주체 변경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남부,북부,서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북부,서부)
- 2020.05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명 변경「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20.10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강화사업 수탁
- 2021.07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021.11 전국 최초 상근변호사 임용
- 2021.12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포럼 ‘노인보호전문기관 발전방안’
- 2022.04 경기도 노인인권 사진공모전 개최
- 2022.11 경기남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2022.12 2022년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포럼 ‘학대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연계 중요성과 현실대안’

6.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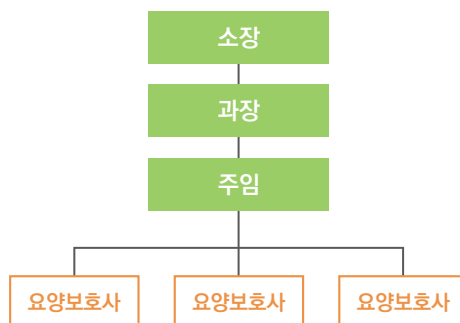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동부·경기북부·경기서부·경기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북부·경기서부·경기남부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7.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 사업의 의의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및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인식을 개선한다.

• 사업의 목적

- 1) 노인학대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노인보호 기능 강화
-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사업

1) 상담사업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를 통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상담을 수행하여 피해노인의 안전확보 및 차별 해소 등 인권 확립을 위해 원조하고, 가정 내 역할 회복 및 사회 재적응을 유도

- 노인학대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설치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사례관리 및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2) 예방교육사업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 노인인식 고취, 지역사회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며,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

- 예방교육 실시 : 노인 및 일반인,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 노인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3) 홍보사업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노인학대 상담전화를 홍보하여 기관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

- 대중매체 및 인터넷 홍보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 기관방문 홍보 활동 등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사업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자원들을 적재적소 활용함으로써 노인학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례해결을 위한 자원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

- 사업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보고서 발간 및 조사연구
-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주요사업

• 사업의 의의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행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재학대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 주요사업 내용

- 건강관리지원사업 : 활력징후체크, 병원진료, 건강검진, 목욕, 물리치료 등
- 일상생활지원사업 : 건강식 제공, 티타임, 간식, 이·미용 서비스
- 심리치유사업 : 음악/원예/웃음치료, 요가, 도예, 레크레이션, 자체프로그램 등
- 사회적응사업 : 문화지원, 생신잔치, 어버이날, 명절행사, 송년모임 등

•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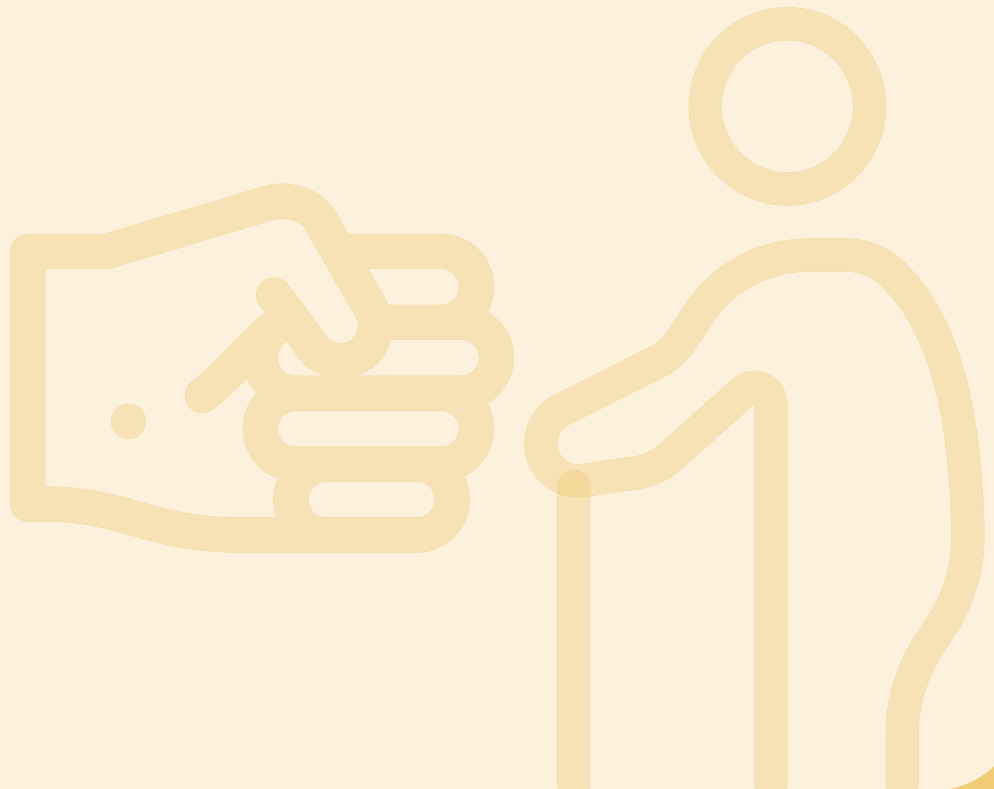
• 보호기간

- 4개월 이내(단, 학대재발 등으로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연간 6개월 이내)

2022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III장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분석 요약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노인학대 신고접수

▶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목적의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 피해 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학대발생 장소

▶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현장조사

▶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일반사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복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을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법률서비스 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서비스 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형태**▶ **노인독거 가구**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부부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건강상태

▶ 치매

○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간이정신상태검사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 ADL / IADL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기타용어

▶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 보호자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여 백

경기도내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2019~2022년)

노인학대 현황파악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 신고 접수

- ◎ 본 보고서는 경기도내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 동부, 서부, 북부, 북서부)의 노인학대 사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임
- ◎ 본 보고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접수된 11,034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 신고접수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재학대사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4년(2019년~2022년) 동안의 신고·접수된 사례는 11,034건이며, 학대판정 사례는 5,109건(46.3%)임
 - 신고·접수된 사례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으로 전년대비 2020년은 6.0%, 2021년은 11.11%, 2022년은 8.2%로 매년 증가하였음
 - 전국 신고접수 사례 중 경기도 비율은 2019년 15.2%, 2020년 15.6%, 2021년 11.2%를 차지하였음
 - 전국 신고접수 사례 중 경기도 비율은 2019년 32.6%, 2020년 36.9%, 2021년은 34.9%이며, 경기도는 2019년 37.4%, 2020년 46%, 2021년 49.7%, 2022년 50.4%로 전국 평균보다 학대판정 비율이 높음
- ※ 일반사례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말함
- ※ 사례판정 결과의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사례 :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 경기도 신규 학대 사례는 2019년 809건, 2020년은 1,072건, 2021년은 1,275건이며 2022년은 1,3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대 사례는 2019년 105건, 2020년 120건, 2021년 156건, 2022년 212건으로 매년 증가함 (재학대 발생률 2022년 전년대비 35.9% 증가함) (전국 평균 재학대 발생률도 매년 증가함)
 - 월 평균 경기도 내 신고접수된 사례는 230건임
 - 4년(2019년~2022년)합계로 보면 학대사례 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5월이며, 가장 적은 달은 11월임
 - 4년(2019년~2022년)동안 학대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4,438건(86.9%), 생활시설 520건(10.2%), 이용시설 39건(0.8%)을 차지함
- ◎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하며, 4년(2019년~2022년)동안의 학대 유형 건수는 11,650건이며 신고접수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학대유형 건수도 증가하였음 (2019년 2,089건, 2020년 2,718년, 2021년 3,401년, 2022년 3,263건)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학대유형 건수으로는 신체적 학대 5,129건(44.0%), 정서적 학대 5,095건(43.7%), 방임 874건(7.5%), 경제적 학대 259건(2.2%) 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전체 학대 유형의 87.7%를 차지함

2. 노인학대 상담현황

- ◎ 노인학대 상담은 일반학대와 학대상담으로 구분되며,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보통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이 종료되며, 학대상담의 경우 학대상담방법과 학대상담과정에 따라 분류함
-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전체 신고접수 건수 11,034건에 대한 전체 상담 횟수는 103,183회임
 - 학대판정 사례 5,109건, 학대상담 횟수 79,868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15.6회
 - 일반판정 사례 5,925건, 일반상담 횟수 23,315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3.9회
- ◎ 학대피해노인·행위자 대상 제공서비스는 매년 증가하였음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법률서비스 연계, 의료서비스 연계,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함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학대피해노인 5,109명, 학대행위자 5,375명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47,927회임
 - 세부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서비스 76,604회(51.8%), 정보제공서비스 62,998회(42.6%), 복지서비스 연계 7,701회(4.8%) 순으로 나타남

3. 신고자 및 접수, 인지

- ◎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함
- ◎ 4년(2019년~2022년) 동안의 노인학대 사례 5,10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451건(8.8%), 비신고의무자는 4,660건(91.2%)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유형 중에서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218건, 4.2%)가 가장 많음
 - 비신고의무자 유형 중에서는 관련기관 종사자(3,946건, 77.2%)가 가장 많음
-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지율은 높음
 - 이미 알고 있었음 88.6%이며, 매년 인지도가 증가하였음

4.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 ◎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면서 2021년 168회(3,657명), 2022년 213회(4,785명)로 증가하였음
- ◎ 노인인권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면서 2021년 151회(3,382명), 2022년 189회(3,9145명)로 증가하였음

5.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현황은 2020년 55명, 2021년 46명, 2022년 68명임
- ◎ 1인 평균 입소기간은 2020년 27일, 2021년 42일, 2022년 29일임
- ◎ 퇴소후 유형 중에서 원가정복귀가 50.7%, 별도 공간 마련 18.3%, 시설입소 11.3% 순으로 나타남
-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입소자 학대유형 건수으로는 정서적 학대 233건(44.6%), 신체적 학대 225건(43.0%), 방임 23건(4.4%), 경제적 학대 20건(4.4%)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내 2022년 노인학대 현황 요약

1. 노인학대 신고 접수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전체사례) 3,116건, 전년대비 **7.5% 증가**(21년 2,881건 → 3,116건)
- (학대사례) 1,572건, 전년대비 **9.0% 증가**(21년 1,431건 → 1,572건)
- (일반사례) 1,544건, 전년대비 **6.1% 증가**(21년 1,450건 → 1,544건)

◎ 노인학대 월별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로 289건, 가장 적은 달은 12월로 231건임
- 시군별 신고접수 사례는 평균 101건임

2. 신고자 및 접수, 인지

◎ 노인학대 판정 사례 신고자 유형 현황

- (신고의무자) 142명 전년대비 19.0% 증가(21년 115명 → 22년 142명)
- (비신고의무자) 1,430명 전년대비 8.0% 증가(21년 1,360명 → 22년 1,430명)

◎ 신고접수 경로 현황

- 경찰 1,083건(68.9%), 자체접수 366건(23.3%), 지자체(시청,도청) 2.8% 순으로 나타남

3.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1,452건(44.5%), 정서 1,392건(42.7%), 방임 255건(7.8%)

경제 89건(2.7%), 자기방임 29건(0.9%), 성 24건(0.7%)순으로 나타남

4. 노인학대 발생장소

◎ 가정 내 1,360건(86.5%), 생활시설 153건(9.7%), 요양·일반병원 27건(1.7%), 이용시설 13건(0.8%),

공공장소 8건(0.5%) 기타 11건 (0.7) 순으로 나타남

5. 노인학대 상담서비스

- ◎ 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 (전체사례) 3,116건
 - (학대사례) 사례 1,572건, 총상담 26,169건 사례당 평균상담 16.6회
 - (일반사례) 사례 1,544건 총상담 5,767건 사례당 평균상담 3.7회
- ◎ 학대피해노인 제공 서비스 현황
 - 총 38,541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상담서비스 21,170회(54.9%), 정보제공서비스 15,005회(38.9%), 복지서비스 1,825회(4.7%)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 총 5,107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상담 2,662회(52.1%), 정보제공서비스 2,219회(43.5%), 복지서비스 78회(1.5%) 순으로 나타남

6.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총 입소인원은 68명이며 남성 11명, 여성 57명임
- ◎ 1인 평균 입소일은 29일임
- ◎ 퇴소유형으로는 원가정 복귀 36명(50.7%), 별도 공간마련 13명(18.3%), 시설입소 8명(11.3%), 타 부양가정 5명(7.0%) 순으로 나타남
- ◎ 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52건(44.8%), 정서적 48건(41.4%), 경제적 9건(7.8%), 방임 건(2.6%)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피해노인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건강프로그램으로 6,139회(37.8%), 심리치유 매개 프로그램 584회(3.6%) 순으로 나타남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 ◎ 노인학대예방교육 346회 8,905명, 노인인권교육 189회 3,914명

경기도내 2019~2022년 주요 사례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 분석

1) 학대피해노인

-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학대피해노인은 5,109명임
- ◎ 학대피해 노인 평균연령 76.6세이며, 성별은 여성 3,814명(74.7%), 남성 1,295명(25.3%).
- ◎ 가장 많은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로는 남성은 75~84세, 여성은 70~74세임
- ◎ 학대피해 사례판정 결과로는 비응급 3,074건(60.1%), 잠재적 1,921건(37.6%), 응급 114건 (2.3%) 순으로 나타남
- ◎ 학대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 4,438건(87.0%), 생활시설 520건(10.2%), 요양·일반병원 57건(1.2%), 이용시설 39건(0.8%), 공공장소 31건(0.7%), 기타 24건(0.4%) 순으로 나타남
- ◎ 노인학대 성별 노인학대 유형으로 남성 학대피해노인은 신체적 학대 1,168건(42.6%), 정서적 학대 1,087건(39.7%), 방임 311건(28.6%), 경제적 학대 72건(2.6%)순이며, 여성 학대피해노인은 정서적 학대 4,008건(45.0%), 신체적 학대 3,961건(44.5%), 방임 563건(6.3%), 경제적 학대 187건(2.1%)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와 동거에 있어서 동거(73.6%)가 많음
 - 동거자유형으로는 배우자 동거 (37.8%)임
 -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35.9%)와 노인부부동거(33.1%) 순임
- ◎ 학대피해노인 교육수준에 있어서 초졸 1,899명(37.2%), 고졸 1,134명(22.2%), 무학 896명(17.5%) 순으로 나타남
- ◎ 경제수준에서는 수급자보다는 일반 60.9%를 차지함
- ◎ 학대 피해 노인 직업유형으로는 무직(87.3%)이 가장 많음
- ◎ 학대 발생빈도는 일회성이 25.6%이지만 한 달에 한 번 20.4%, 1주일에 한 번 이상 18.3%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학대 지속 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 1,526명(29.9%), 5년 이상 1,422명(27.8%), 일회성 1,248명(24.4%), 1개월 이상~1년 미만 742명(14.5%) 순으로 나타남
- ◎ 학대 발생 주거형태로는 자택 3,085명(60.4%)임
- ◎ 주거형태로는 자택(61.3%)이 제일 많으며, 직업유형으로는 무직(87.4%)이 가장 많음
- ◎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40.8%), 건강치 못함(29.3%), 건강(20.1%), 매우 건강치 못함(6.2%) 순으로 나타남
- ◎ 신체장애는 270명(66.7%), 정신장애 135명(33.3%) 임
- ◎ 치매정도는 치매없음 (74.8%), 치매진단(15.3%), 치매의심(9.9%) 로 치매노인을 위한 상담도 필요함
- ◎ 종결사유로는 피해자 개입거부 967건(18.9%), 학대행위자 태도 변환 922건(18%), 부양지지자원 강화 409건(8%), 피해자 독립 220건(4.3%), 학대행위자 독립 211건(4.1%), 피해노인 타가족과 동거 159건(3.1%), 부양강화 150건(2.9%), 피해노인 시설입소 146건(2.9%) 순으로 나타남

2) 학대행위자

-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학대피해노인은 5,375명임
- ◎ 학대행위자는 남성(72.4%)이 여성보다 많음
 - 평균연령 58.1세임
 - 학대행위자 연령대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음(30.2%)
-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로는 배우자(35.0%), 아들(32.8%), 노인의료복지시설 (12.1%)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의 결혼상태는 초혼 2,866명(53.3%), 미혼 1,551명(28.9%), 이혼 475명 (8.8%), 재혼 187명(3.5%), 사실혼 144명(2.7%)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졸 2,191명(40.8%), 전문대졸이상 1,429명(26.6%), 중졸 828명(15.4%) 순으로 나타남
- ◎ 경제수준에서는 수급자보다는 일반이 66.8%를 차지함
- ◎ 직업유형으로는 무직(64.6%)이 가장 많음
- ◎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45.6%), 건강(24.5%), 건강치 못함(19.4%), 매우 건강(7.4%) 순으로 나타남
- ◎ 신체장애는 173명(25.2%), 정신장애 513명(74.8%) 임
- ◎ 치매정도는 치매없음 4,837명(90.5%), 치매의증 290명 (5.4%), 치매진단 219명(4.1%)로 치매노인을 위한 상담도 필요함
- ◎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으로는 알콜사용 장애 819명(94.6%), 도박 27명(3.1%), 약물사용장애 20명 (2.3%) 순으로 나타남

2. 시설학대

-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시설학대 피해노인은 671명임
-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64명(73.6%)로 가장 높음
- ◎ 신고자 유형으로는 신고의무자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관계자가 138명(50.6%)으로 가장 높고, 비신고의무자군에서는 친족 77명(57.9%), 관련 기관 종사자(경찰 등) 50명(37.6%) 순으로 나타남
- ◎ 85~89세(26.7%) 연령대가 가장 많으며, 가정 내 학대 사례보다 연령이 높은 편임
- ◎ 사례판정 결과에서는 잠재적 학대 447건(61.8%), 비응급 213건(35.4%), 응급 6건(2.8%)임
- ◎ 노인학대 유형으로 방임 529건(41.2%), 신체적 학대 438명(34.1%), 정서적 학대 220건(17.1%), 성 학대 58건(4.5%), 경제적 학대 19건(1.5%), 유기 15건(1.2%), 자기방임 6건(0.5%) 순으로 나타남
- ◎ 교육수준은 초졸이 356명(45.6%), 무학 234명(34.9%) 순으로 나타남
- ◎ 학대발생빈도는 일회성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매일-1주일에 한번 이상으로 나타남
- ◎ 학대지속기간은 일회성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이상으로 나타남
- ◎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함이 많고 치매진단(62.9%)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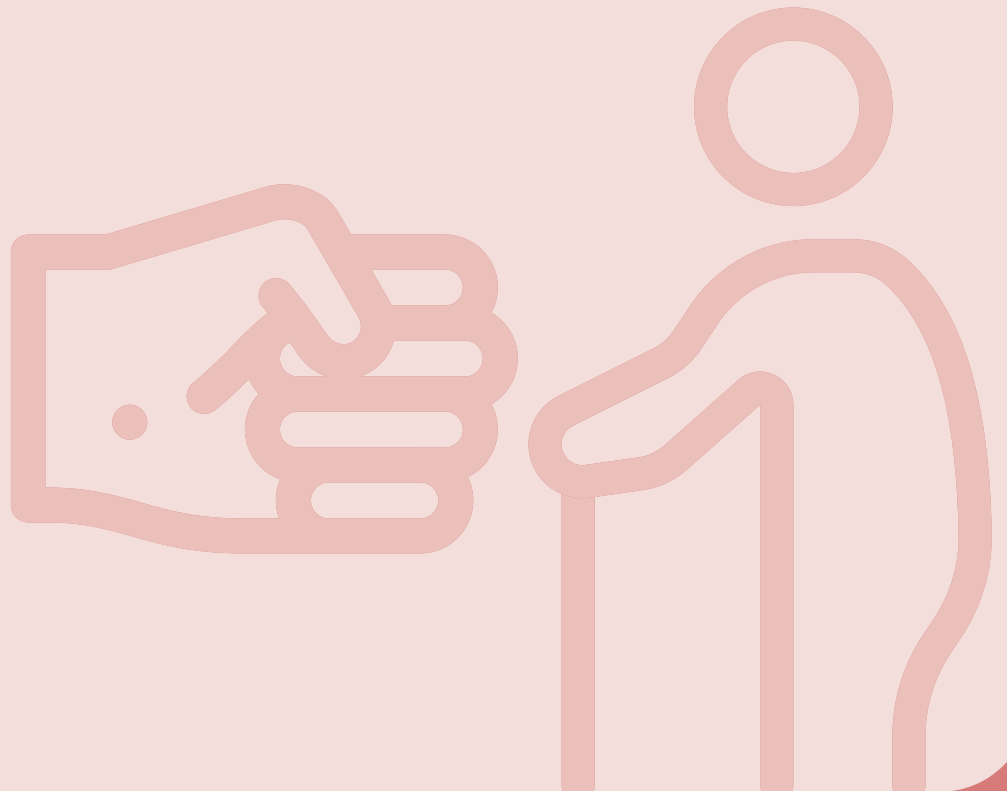
3. 재학대 사례분석

- ◎ 4년(2019년~2022년)동안의 재학대 피해노인은 593명임
매년 재학대사례가 늘어남: (2021년 156건→ 2022년 212건)
- 비응급사례가 70.5%로 가장 많음
- ◎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평균연령 76.4세
-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로는 75~79세가 가장 많음
(남성은 80~84세가 가장 많고 여성은 75~79세가 가장 많음)
- ◎ 재학대는 대부분 가정(98.5%)에서 일어남
- 학대행위자 동거여부 비율(85.3%) 높음
-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46%, 노인부부 동거비율 34.2%, 노인단독 9.8%, 손자녀 동거 4.8% 순으로 나타남
- ◎ 재학대 피해노인 교육수준은 초졸 256명(43.2%), 무학 114명(19.2%), 고졸 114명(16.4%) 순으로 나타남
- ◎ 재학대 피해노인 경제수준은 일반 321명(54.1%), 수급자 98명(16.5%), 저소득 74명(12.5%) 순으로 나타남
- ◎ 재학대 학대발생빈도는 1달에 한번이상 150명(25.3%), 6개월에 한번이상 134명(22.6%), 1주일에 한번이상 115명(19.4%), 3개월에 한번이상 109명(18.4%) 순으로 나타남
-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은 1년이상 5년 미만 273명(46.0%), 5년이상 218명(36.8%), 1개월 이상 1년 미만 56명(9.4%) 순으로 나타남
- ◎ 재학대 피해노인 직업유형으로는 무직 507명(85.5%), 단순노무 종사자 49명(8.3%) 임
- ◎ 재학대 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로는 보통 275명(46.4%), 건강치 못함 167명(28.2%), 건강 120명(20.2%)임
- ◎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는 치매없음 479명(80.8%), 치매의증 66명(11.1%), 치매진단 48명(8.1%) 임
- ◎ 재학대 피해노인 제공서비스는 상담서비스 8,375회, 정보제공서비스 6,605회, 복지서비스 833회 임
- ◎ 재학대 종결사유로는 피해자 개입거부 113건(19.1%), 학대행위자 태도변화 111건(19.1%), 학대행위자 병원입원 44건(7.4%), 지지자원거부 38건(6.4%), 지지자원 강화 30건(5.1%) 순으로 나타남

2022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Ⅳ장

경기도내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2019년~2022년)



1. 노인학대 신고접수

가. 합계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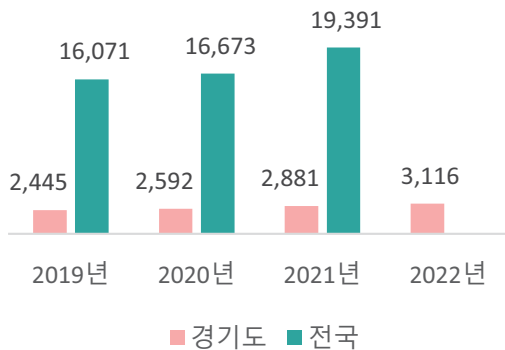
1) 신고접수

(단위:건,%)

구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신고건수(학대+일반)	2,445	2,592	2,881	3,116
	학대 사례건수(%)	914(37.4)	1,192(46.0)	1,431(49.7)	1,572(50.4)
	일반 사례건수(%)	1,531(62.6)	1,400(54.0)	1,450(50.3)	1,544(49.6)
	전년대비 신고 증감률(%)	-2.7	6.0	11.2	8.2
	전국 신고건수 중 경기도 비율	15.2	15.6	14.9	미발표
전국	신고건수(학대+일반)	16,071	16,673	19,391	
	학대 사례건수(%)	5,243(32.6)	6,259(36.9)	6,774(34.9)	
	일반 사례건수(%)	10,828(67.4)	10,714(63.1)	12,617(65.1)	
	전년대비 증감률(%)	5.2	-1.1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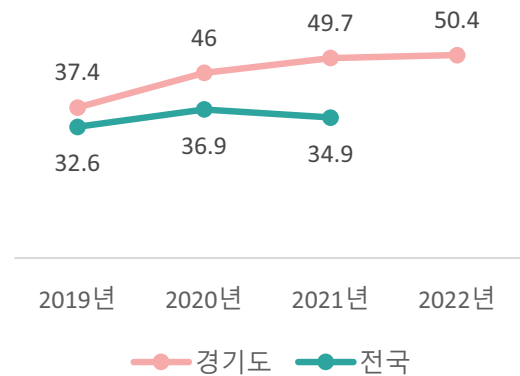
[표4-1] 신고접수 건수

연도별 경기도 전국 학대의심 신고건수



[그래프4-1-1] 연도별 경기도 전국 학대의심 신고건수

연도별 신고접수 학대판정 비율추이



[그래프4-1-2] 연도별 신고접수 학대판정 비율추이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신규 학대사례	809	1,072	1,275	1,360	
	재학대 사례	건수	105	120	156	212
		비율(%)	11.5	10.1	10.9	13.5
	전년대비 증감률(%)	-18.6	14.3	30.0	35.9	
전국	신규 학대사례	5,243	6,259	6,774	미발표	
	재학대 사례	건수	500	614		739
		비율(%)	9.5	9.8		10.9
	전년대비 증감률(%)	2.5	22.8	20.4		

[표4-2] 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 건수

2) 신고접수

(단위:건,%)

구분	월별 신고접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2,445	(100)	2,592	(100)	2,881	(100)	3,116	(100)	11,034	(100)
1월	212	(8.7)	221	(8.5)	200	(6.9)	247	(7.9)	880	(8.0)
2월	183	(7.5)	217	(8.4)	251	(8.7)	254	(8.2)	905	(8.2)
3월	183	(7.5)	224	(8.6)	260	(9.0)	287	(9.2)	954	(8.6)
4월	203	(8.3)	210	(8.1)	301	(10.4)	251	(8.1)	965	(8.7)
5월	193	(7.9)	238	(9.2)	240	(8.3)	254	(8.2)	925	(8.4)
6월	227	(9.3)	242	(9.3)	219	(7.6)	252	(8.1)	940	(8.5)
7월	256	(10.5)	227	(8.8)	255	(8.9)	289	(9.3)	1,027	(9.3)
8월	224	(9.2)	214	(8.3)	213	(7.4)	258	(8.3)	909	(8.2)
9월	198	(8.1)	222	(8.6)	259	(9.0)	279	(9.0)	958	(8.3)
10월	201	(8.2)	224	(8.6)	231	(8.0)	258	(8.3)	914	(8.3)
11월	186	(7.6)	175	(6.7)	233	(8.1)	256	(8.2)	850	(7.7)
12월	179	(7.3)	178	(6.9)	219	(7.6)	231	(7.4)	807	(7.3)
월평균	204		216		240		260		230	

[표4-3] 월별 신고접수

나. 월별 사례판정

1)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단위:건,%)

구분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1월	81	(8.9)	95	(8.0)	105	(7.3)	122	(7.8)	403	(7.9)
2월	66	(7.2)	83	(7.0)	145	(10.1)	115	(7.3)	409	(8.0)
3월	63	(6.9)	95	(8.0)	142	(9.9)	139	(8.8)	439	(8.6)
4월	77	(8.4)	91	(7.7)	157	(11.0)	121	(7.7)	446	(8.7)
5월	80	(8.8)	114	(9.5)	123	(8.6)	141	(9.0)	458	(9.0)
6월	90	(9.8)	107	(9.0)	107	(7.5)	136	(8.7)	440	(8.6)
7월	95	(10.4)	113	(9.5)	135	(9.4)	165	(10.5)	508	(9.9)
8월	84	(9.2)	90	(7.5)	115	(8.0)	133	(8.5)	422	(8.3)
9월	60	(6.6)	109	(9.1)	118	(8.2)	130	(8.3)	417	(8.2)
10월	81	(8.9)	114	(9.5)	98	(6.8)	113	(7.2)	406	(7.9)
11월	61	(6.7)	84	(7.1)	97	(6.8)	134	(8.5)	376	(7.4)
12월	76	(8.3)	97	(8.1)	89	(6.2)	123	(7.8)	385	(7.5)
월평균	76		99		119		131		106	

[표4-4]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2)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단위:건,%)

구분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1,531	(100)	1,400	(100)	1,450	(100)	1,544	(100)	5,925	(100)
1월	131	(8.6)	126	(9.0)	95	(6.6)	125	(8.1)	477	(8.1)
2월	117	(7.6)	134	(9.6)	106	(7.3)	139	(9.0)	496	(8.4)
3월	120	(7.8)	129	(9.2)	118	(8.1)	148	(9.6)	515	(8.7)
4월	126	(8.2)	119	(8.5)	144	(9.9)	130	(8.4)	519	(8.8)
5월	113	(7.4)	124	(8.9)	117	(8.1)	113	(7.3)	467	(7.9)
6월	137	(8.9)	135	(9.6)	112	(7.7)	116	(7.5)	500	(8.4)
7월	161	(10.5)	114	(8.1)	120	(8.3)	124	(8.0)	519	(8.8)
8월	140	(9.1)	124	(8.9)	98	(6.8)	125	(8.1)	487	(8.2)
9월	138	(9.0)	113	(8.1)	141	(9.7)	149	(9.7)	541	(9.1)
10월	120	(7.8)	110	(7.9)	133	(9.2)	145	(9.4)	508	(8.6)
11월	125	(8.2)	91	(6.4)	136	(9.4)	122	(7.9)	474	(8.0)
12월	103	(6.7)	81	(5.8)	130	(9.0)	108	(7.0)	422	(7.1)
평균	128		117		121		129		123	

[표4-5]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다. 시군별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1) 시군별 신고접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신고접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2,445	(100)	2,592	(100)	2,881	(100)	3,116	(100)	11,034	(100)
수원시	128	(5.2)	166	(6.4)	199	(6.9)	180	(5.8)	673	(6.1)
안산시	147	(6.0)	176	(6.8)	144	(5.0)	160	(5.1)	627	(5.7)
안성시	15	(0.6)	14	(0.5)	27	(0.9)	52	(1.7)	108	(1.0)
오산시	41	(1.7)	33	(1.3)	34	(1.2)	45	(1.4)	153	(1.4)
평택시	63	(2.6)	72	(2.8)	50	(1.7)	59	(1.9)	244	(2.2)
화성시	50	(2.0)	106	(4.1)	82	(2.8)	83	(2.7)	321	(2.9)
광주시	60	(2.5)	49	(1.9)	47	(1.6)	67	(2.2)	223	(2.0)
성남시	170	(7.0)	212	(8.2)	264	(9.2)	207	(6.6)	853	(7.7)
양평군	19	(0.8)	19	(0.7)	32	(1.1)	27	(0.9)	97	(0.9)
여주시	7	(0.3)	18	(0.7)	15	(0.5)	25	(0.8)	65	(0.6)
용인시	157	(6.4)	208	(8.0)	175	(6.1)	179	(5.7)	719	(6.5)
이천시	53	(2.2)	42	(1.6)	40	(1.4)	32	(1.0)	167	(1.5)
의왕시	12	(0.5)	7	(0.3)	8	(0.3)	10	(0.3)	37	(0.3)
과천시	10	(0.4)	14	(0.5)	12	(0.4)	19	(0.6)	55	(0.5)
하남시	20	(0.8)	26	(1.0)	22	(0.8)	27	(0.9)	95	(0.9)
광명시	49	(2.0)	53	(2.0)	43	(1.5)	70	(2.2)	215	(1.9)
군포시	59	(2.4)	42	(1.6)	54	(1.9)	72	(2.3)	227	(2.1)
부천시	169	(6.9)	162	(6.2)	199	(6.9)	217	(7.0)	747	(6.8)
시흥시	39	(1.6)	52	(2.0)	93	(3.2)	120	(3.9)	304	(2.8)
안양시	116	(4.7)	53	(2.0)	59	(2.0)	71	(2.3)	299	(2.7)
김포시	50	(2.0)	47	(1.8)	44	(1.5)	56	(1.8)	197	(1.8)
고양시	153	(6.3)	185	(7.1)	159	(5.5)	276	(8.9)	773	(7.0)
파주시	71	(2.9)	63	(2.4)	73	(1.4)	131	(4.2)	338	(3.1)
양주시	34	(1.4)	70	(2.7)	83	(2.9)	65	(2.1)	252	(2.3)
동두천시	18	(0.7)	10	(0.4)	12	(0.4)	26	(0.8)	66	(0.6)
연천군	13	(0.5)	13	(0.5)	18	(0.6)	10	(0.3)	54	(0.5)
의정부시	276	(11.3)	322	(12.4)	281	(9.8)	337	(10.8)	1,216	(11.0)
포천시	33	(1.3)	27	(1.0)	77	(2.7)	64	(2.1)	201	(1.8)
구리시	36	(1.5)	50	(1.9)	74	(2.6)	52	(1.7)	212	(1.9)
남양주시	185	(7.6)	178	(6.9)	256	(8.9)	270	(8.7)	889	(8.1)
가평군	14	(0.6)	13	(0.5)	10	(0.3)	13	(0.4)	50	(0.5)
무응답	178	(7.3)	90	(3.5)	195	(6.8)	94	(3.0)	557	(5.0)
시평균*	73.1		80.7		86.6		97.4		255.4	

* 응답한 시군 현황의 평균(무응답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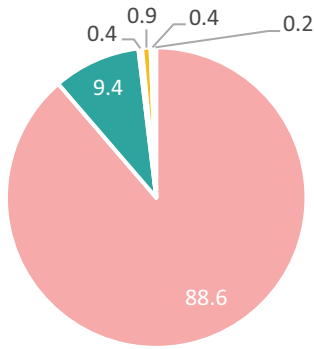
[표4-6] 시군별 신고접수

2) 학대사례 발생장소 판정 건수 및 비율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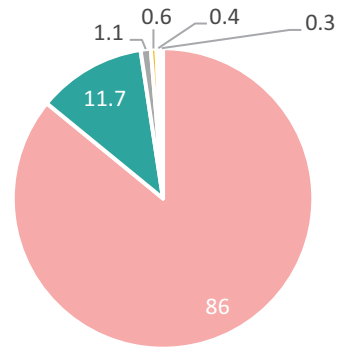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가정 내	810	(88.6)	1,025	(86.0)	1,243	(86.9)	1,360	(86.5)	4,438	(86.9)
생활시설 ¹⁾	86	(9.4)	139	(11.7)	142	(9.9)	153	(9.7)	520	(10.2)
이용시설 ²⁾	4	(0.4)	13	(1.1)	9	(0.6)	13	(0.8)	39	(0.8)
공공장소	8	(0.9)	7	(0.6)	8	(0.6)	8	(0.5)	31	(0.6)
요양·일반병원	4	(0.4)	5	(0.4)	21	(1.5)	27	(1.7)	57	(1.1)
기타	2	(0.2)	3	(0.3)	8	(0.6)	11	(0.7)	24	(0.5)

[표4-7] 학대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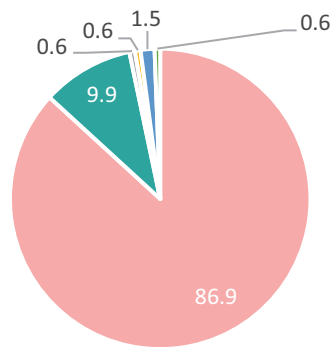
■ 가정 내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공공장소 ■ 요양·일반병원 ■ 기타

[그래프4-7-1] 2019년 학대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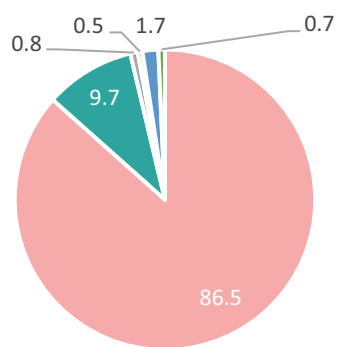
■ 가정 내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공공장소 ■ 요양·일반병원 ■ 기타

[그래프4-7-2] 2020년 학대발생 장소



■ 가정 내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공공장소 ■ 요양·일반병원 ■ 기타

[그래프4-7-3] 2021년 학대발생 장소



■ 가정 내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공공장소 ■ 요양·일반병원 ■ 기타

[그래프4-7-4] 2022년 학대발생 장소

1) 생활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2)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단위:건,%)

구분	시군별 가정학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810	(100)	1,025	(100)	1,243	(100)	1,360	(100)	4,438	(100)
수원시	32	(4.0)	62	(6.0)	87	(7.0)	88	(6.5)	269	(6.1)
안산시	38	(4.7)	58	(5.7)	66	(5.3)	72	(5.3)	234	(5.3)
안성시	3	(0.4)	1	(0.1)	11	(0.9)	10	(0.7)	25	(0.6)
오산시	12	(1.5)	12	(1.2)	14	(1.1)	19	(1.4)	57	(1.3)
평택시	12	(1.5)	24	(2.3)	25	(2.0)	22	(1.6)	83	(1.9)
화성시	9	(1.1)	34	(3.3)	27	(2.2)	19	(1.4)	89	(2.0)
광주시	31	(3.8)	8	(0.8)	19	(1.5)	28	(2.1)	86	(1.9)
성남시	68	(8.4)	92	(9.0)	107	(8.6)	78	(5.7)	345	(7.8)
양평군	4	(0.5)	6	(0.6)	2	(0.2)	8	(0.6)	20	(0.5)
여주시	1	(0.1)	8	(0.8)	0	(0.0)	0	(0.0)	9	(0.2)
용인시	52	(6.4)	74	(7.2)	68	(5.5)	68	(5.0)	262	(5.9)
이천시	28	(3.5)	26	(2.5)	17	(1.4)	7	(0.5)	78	(1.8)
의왕시	2	(0.2)	3	(0.3)	7	(0.6)	6	(0.4)	18	(0.4)
과천시	1	(0.1)	4	(0.4)	9	(0.7)	10	(0.7)	24	(0.5)
하남시	8	(1.0)	8	(0.8)	12	(1.0)	8	(0.6)	36	(0.8)
광명시	25	(3.1)	39	(3.8)	26	(2.1)	38	(2.8)	128	(2.9)
군포시	34	(4.2)	24	(2.3)	25	(2.0)	32	(2.4)	115	(2.6)
부천시	95	(11.7)	105	(10.2)	130	(10.5)	109	(8.0)	439	(9.9)
시흥시	19	(2.3)	34	(3.3)	49	(3.9)	51	(3.8)	153	(3.4)
안양시	43	(5.3)	33	(3.2)	31	(2.5)	36	(2.6)	143	(3.2)
김포시	23	(2.8)	28	(2.7)	25	(2.0)	25	(1.8)	101	(2.3)
고양시	53	(6.5)	86	(8.4)	83	(6.7)	149	(11.0)	371	(8.4)
파주시	11	(1.4)	16	(1.6)	42	(3.4)	81	(6.0)	150	(3.4)
양주시	10	(1.2)	12	(1.2)	17	(1.4)	19	(1.4)	58	(1.3)
동두천시	6	(0.7)	3	(0.3)	5	(0.4)	13	(1.0)	27	(0.6)
연천군	9	(1.1)	7	(0.7)	11	(0.9)	0	(0.0)	27	(0.6)
의정부시	46	(5.7)	43	(4.2)	57	(4.6)	99	(7.3)	245	(5.5)
포천시	15	(1.9)	11	(1.1)	51	(4.1)	32	(2.4)	109	(2.5)
구리시	23	(2.8)	35	(3.4)	44	(3.5)	36	(2.6)	138	(3.1)
남양주시	89	(11.0)	123	(12.0)	164	(13.2)	180	(13.2)	556	(12.5)
가평균	8	(1.0)	6	(0.6)	9	(0.7)	7	(0.5)	30	(0.7)
시 평균	26.1		33.1		40.0		43.5		35.7	

[표4-8] 시군별 가정 내 학대 판정 건수

구분	시군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79	(100)	133	(100)	134	(100)	148	(100)	494	(100)
수원시	0	(0.0)	1	(0.8)	2	(1.5)	4	(2.7)	7	(1.4)
안산시	0	(0.0)	4	(3.0)	0	(0.0)	0	(0.0)	4	(0.8)
안성시	0	(0.0)	1	(0.8)	0	(0.0)	1	(0.7)	2	(0.4)
오산시	1	(1.3)	0	(0.0)	0	(0.0)	0	(0.0)	1	(0.2)
평택시	1	(1.3)	1	(0.8)	0	(0.0)	1	(0.7)	3	(0.6)
화성시	0	(0.0)	0	(0.0)	1	(0.7)	0	(0.0)	1	(0.2)
광주시	4	(5.1)	1	(0.8)	0	(0.0)	2	(1.4)	7	(1.4)
성남시	3	(3.8)	5	(3.8)	5	(3.7)	14	(9.5)	27	(5.5)
양평군	0	(0.0)	1	(0.8)	10	(7.5)	1	(0.7)	12	(2.4)
여주시	0	(0.0)	0	(0.0)	1	(0.7)	0	(0.0)	1	(0.2)
용인시	8	(10.1)	15	(11.3)	13	(9.7)	14	(9.5)	50	(10.1)
이천시	0	(0.0)	0	(0.0)	0	(0.0)	1	(0.7)	1	(0.2)
의왕시	1	(1.3)	0	(0.0)	0	(0.0)	0	(0.0)	1	(0.2)
하남시	3	(3.8)	0	(0.0)	4	(3.0)	5	(3.4)	12	(2.4)
광명시	0	(0.0)	0	(0.0)	1	(0.7)	1	(0.7)	2	(0.4)
군포시	2	(2.5)	4	(3.0)	1	(0.7)	1	(0.7)	8	(1.6)
부천시	2	(2.5)	3	(2.3)	3	(2.2)	1	(0.7)	9	(1.8)
시흥시	0	(0.0)	2	(1.5)	2	(1.5)	6	(4.1)	10	(2.0)
안양시	0	(0.0)	0	(0.0)	6	(4.5)	0	(0.0)	6	(1.2)
김포시	0	(0.0)	0	(0.0)	0	(0.0)	6	(4.1)	6	(1.2)
고양시	17	(21.5)	25	(18.8)	22	(16.4)	17	(11.5)	81	(16.4)
파주시	8	(10.1)	14	(10.5)	6	(4.5)	7	(4.7)	35	(7.1)
양주시	6	(7.6)	23	(17.3)	19	(14.2)	18	(12.2)	66	(13.4)
동두천시	0	(0.0)	2	(1.5)	1	(0.7)	1	(0.7)	4	(0.8)
연천군	0	(0.0)	4	(3.0)	0	(0.0)	4	(2.7)	8	(1.6)
의정부시	10	(12.7)	9	(6.8)	4	(3.0)	11	(7.4)	34	(6.9)
포천시	2	(2.5)	3	(2.3)	8	(6.0)	12	(8.1)	25	(5.1)
구리시	2	(2.5)	2	(1.5)	12	(9.0)	0	(0.0)	16	(3.2)
남양주시	9	(11.4)	10	(7.5)	13	(9.7)	20	(13.5)	52	(10.5)
가평군	0	(0.0)	3	(2.3)	0	(0.0)	0	(0.0)	3	(0.6)
시 평균	2.5		4.3		4.3		4.8		4.0	

[표4-9] 시군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확대 판정 건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7	(100)	6	(100)	8	(100)	5	(100)	26	(100)
수원시	0	(0.0)	0	(0.0)	1	(12.5)	0	(0.0)	1	(3.8)
오산시	0	(0.0)	1	(16.7)	0	(0.0)	0	(0.0)	1	(3.8)
화성시	1	(14.3)	0	(0.0)	1	(12.5)	0	(0.0)	2	(7.7)
광주시	0	(0.0)	3	(50.0)	0	(0.0)	0	(0.0)	3	(11.5)
성남시	0	(0.0)	1	(16.7)	0	(0.0)	0	(0.0)	1	(3.8)
여주시	0	(0.0)	1	(16.7)	0	(0.0)	0	(0.0)	1	(3.8)
시흥시	1	(14.3)	0	(0.0)	1	(12.5)	0	(0.0)	2	(7.7)
안양시	1	(14.3)	0	(0.0)	2	(25.0)	1	(20.0)	4	(15.4)
김포시	1	(14.3)	0	(0.0)	0	(0.0)	0	(0.0)	1	(3.8)
고양시	1	(14.3)	0	(0.0)	0	(0.0)	0	(0.0)	1	(3.8)
의정부시	0	(0.0)	0	(0.0)	0	(0.0)	1	(20.0)	1	(3.8)
포천시	0	(0.0)	0	(0.0)	0	(0.0)	2	(40.0)	2	(7.7)
남양주시	2	(28.6)	0	(0.0)	3	(37.5)	1	(20.0)	6	(23.1)

[표4-10] 시군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내 학대 판정 건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재가복지시설 학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4	(100)	13	(100)	9	(100)	13	(100)	39	(100)
안산시	1	(25.0)	0	(0.0)	0	(0.0)	0	(0.0)	1	(2.6)
화성시	0	(0.0)	2	(15.4)	0	(0.0)	0	(0.0)	2	(5.1)
광주시	0	(0.0)	0	(0.0)	0	(0.0)	1	(7.7)	1	(2.6)
성남시	0	(0.0)	3	(23.1)	0	(0.0)	1	(7.7)	4	(10.3)
양평군	0	(0.0)	0	(0.0)	1	(11.1)	0	(0.0)	1	(2.6)
용인시	0	(0.0)	0	(0.0)	1	(11.1)	0	(0.0)	1	(2.6)
부천시	0	(0.0)	0	(0.0)	1	(11.1)	0	(0.0)	1	(2.6)
고양시	1	(25.0)	6	(46.2)	2	(22.2)	4	(30.8)	13	(33.3)
파주시	1	(25.0)	1	(7.7)	0	(0.0)	0	(0.0)	2	(5.1)
양주시	0	(0.0)	0	(0.0)	0	(0.0)	2	(15.4)	2	(5.1)
동두천시	0	(0.0)	1	(7.7)	0	(0.0)	0	(0.0)	1	(2.6)
의정부시	0	(0.0)	0	(0.0)	2	(22.2)	1	(7.7)	3	(7.7)
구리시	0	(0.0)	0	(0.0)	1	(11.1)	0	(0.0)	1	(2.6)
남양주시	1	(25.0)	0	(0.0)	1	(11.1)	1	(7.7)	3	(7.7)
가평군	0	(0.0)	0	(0.0)	0	(0.0)	3	(23.1)	3	(7.7)

[표4-11] 시군별 재가복지시설 내 학대 판정 건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공공장소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8	(100)	7	(100)	8	(100)	8	(100)	31	(100)
수원시	4	(50.0)	1	(14.3)	1	(12.5)	2	(25.0)	8	(25.8)
안산시	0	(0.0)	0	(0.0)	2	(25.0)	0	(0.0)	2	(6.5)
오산시	0	(0.0)	1	(14.3)	0	(0.0)	0	(0.0)	1	(3.2)
화성시	0	(0.0)	0	(0.0)	1	(12.5)	1	(12.5)	2	(6.5)
성남시	0	(0.0)	0	(0.0)	0	(0.0)	1	(12.5)	1	(3.2)
용인시	0	(0.0)	0	(0.0)	1	(12.5)	0	(0.0)	1	(3.2)
광명시	0	(0.0)	0	(0.0)	1	(12.5)	1	(12.5)	2	(6.5)
군포시	0	(0.0)	0	(0.0)	1	(12.5)	0	(0.0)	1	(3.2)
부천시	1	(12.5)	1	(14.3)	0	(0.0)	0	(0.0)	2	(6.5)
시흥시	1	(12.5)	0	(0.0)	1	(12.5)	2	(25.0)	4	(12.9)
김포시	0	(0.0)	2	(28.6)	0	(0.0)	0	(0.0)	2	(6.5)
고양시	0	(0.0)	1	(14.3)	0	(0.0)	0	(0.0)	1	(3.2)
파주시	0	(0.0)	1	(14.3)	0	(0.0)	0	(0.0)	1	(3.2)
의정부시	2	(25.0)	0	(0.0)	0	(0.0)	0	(0.0)	2	(6.5)
남양주시	0	(0.0)	0	(0.0)	0	(0.0)	1	(12.5)	1	(3.2)

[표4-12] 시군별 공공장소 내 학대 판정 건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요양병원 학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3	(100)	4	(100)	20	(100)	22	(100)	49	(100)
성남시	0	(0.0)	0	(0.0)	4	(20.0)	0	(0.0)	4	(8.2)
여주시	1	(33.3)	0	(0.0)	0	(0.0)	0	(0.0)	1	(2.0)
용인시	1	(33.3)	0	(0.0)	1	(5.0)	2	(9.1)	4	(8.2)
이천시	0	(0.0)	0	(0.0)	0	(0.0)	1	(4.5)	1	(2.0)
의왕시	0	(0.0)	0	(0.0)	0	(0.0)	1	(4.5)	1	(2.0)
하남시	0	(0.0)	0	(0.0)	0	(0.0)	1	(4.5)	1	(2.0)
부천시	0	(0.0)	1	(25.0)	2	(10.0)	3	(13.6)	6	(12.2)
시흥시	0	(0.0)	0	(0.0)	1	(5.0)	1	(4.5)	2	(4.1)
안양시	0	(0.0)	0	(0.0)	1	(5.0)	0	(0.0)	1	(2.0)
김포시	0	(0.0)	0	(0.0)	1	(5.0)	2	(9.1)	3	(6.1)
고양시	1	(33.3)	1	(25.0)	2	(10.0)	0	(0.0)	4	(8.2)
파주시	0	(0.0)	1	(25.0)	2	(10.0)	3	(13.6)	6	(12.2)
의정부시	0	(0.0)	1	(25.0)	3	(15.0)	4	(18.2)	8	(16.3)
구리시	0	(0.0)	0	(0.0)	1	(5.0)	1	(4.5)	2	(4.1)
남양주시	0	(0.0)	0	(0.0)	2	(10.0)	3	(13.6)	5	(10.2)

[표4-13] 시군별 요양병원 내 학대 판정 건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일반병원 내 학대판정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1	(100)	1	(100)	1	(100)	5	(100)	8	(100)
부천시	1	(100)	0	(0.0)	0	(0.0)	0	(100)	1	(12.5)
성남시	0	(0.0)	0	(0.0)	0	(0.0)	1	(20.0)	1	(12.5)
여주시	0	(0.0)	0	(0.0)	0	(0.0)	2	(40.0)	2	(25.0)
용인시	0	(0.0)	1	(100)	0	(0.0)	0	(0.0)	1	(12.5)
의정부시	0	(0.0)	0	(0.0)	1	(100)	2	(40.0)	3	(37.5)

[표4-14] 시군별 일반병원 내 학대 판정 건수

(단위:건,%)

구분	시군별 기타장소 내 학대 판정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2	(100)	3	(100)	8	(100)	11	(100)	24	(100)
수원시	0	(0.0)	0	(0.0)	5	(62.5)	4	(36.4)	9	(37.5)
안산시	0	(0.0)	1	(33.3)	0	(0.0)	1	(9.1)	2	(8.3)
평택시	1	(50.0)	0	(0.0)	0	(0.0)	0	(0.0)	1	(4.2)
광주시	0	(0.0)	0	(0.0)	0	(0.0)	1	(9.1)	1	(4.2)
성남시	1	(50.0)	0	(0.0)	0	(0.0)	0	(0.0)	1	(4.2)
용인시	0	(0.0)	0	(0.0)	1	(12.5)	0	(0.0)	1	(4.2)
이천시	0	(0.0)	0	(0.0)	0	(0.0)	1	(9.1)	1	(4.2)
광명시	0	(0.0)	0	(0.0)	0	(0.0)	1	(9.1)	1	(4.2)
부천시	0	(0.0)	1	(33.3)	1	(12.5)	3	(27.3)	5	(20.8)
양주시	0	(0.0)	1	(33.3)	0	(0.0)	0	(0.0)	1	(4.2)
포천시	0	(0.0)	0	(0.0)	1	(12.5)	0	(0.0)	1	(4.2)

[표4-15] 시군별 기타장소 내 학대 판정 건수

라. 학대유형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5,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정서적 학대 5,095건으로 나타났으며, 유기 학대가 72건으로 가장 적었다. 학대유형은 1개 사례에 2개 이상 중복 될 수 있었으며, 보통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2,089	(100)	2,718	(100)	3,401	(100)	3,263	(100)	11,650	(100)
신체	860	(41.2)	1,152	(42.4)	1,541	(45.3)	1,452	(44.5)	5,129	(44.0)
정서	941	(45.0)	1,188	(43.7)	1,529	(45.0)	1,392	(42.7)	5,095	(43.7)
성	23	(1.1)	13	(0.5)	32	(0.9)	24	(0.7)	100	(0.9)
경제	33	(1.6)	77	(2.8)	58	(1.7)	89	(2.7)	259	(2.2)
방임	177	(8.5)	240	(8.8)	202	(5.9)	255	(7.8)	874	(7.5)
자기방임	42	(2.0)	25	(0.9)	18	(0.5)	29	(0.9)	114	(1.0)
유기	13	(0.6)	21	(0.8)	16	(0.5)	22	(0.7)	72	(0.6)
무응답	0	(0.0)	2	(0.1)	5	(0.1)	0	(0.0)	7	(0.1)

* 응답한 시군 현황의 평균(무응답제외)

[표4-16] 학대유형

2. 노인학대 상담현황

가. 월별 학대사례 상담

(단위:회,%)

구분	월별 학대사례 상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13,019	(100)	19,224	(100)	21,456	(100)	26,169	(100)	79,868	(100)
1월	943	(7.2)	1,217	(6.3)	1,531	(7.1)	675	(2.6)	4,366	(5.5)
2월	910	(7.0)	1,313	(6.8)	1,838	(8.6)	880	(3.4)	4,941	(6.2)
3월	923	(7.1)	1,501	(7.8)	1,928	(9.0)	1,070	(4.1)	5,422	(6.8)
4월	970	(7.4)	1,395	(7.2)	2,122	(9.9)	1,132	(4.3)	5,619	(7.0)
5월	1,130	(8.7)	1,794	(9.3)	1,844	(8.6)	2,124	(8.1)	6,892	(8.7)
6월	1,253	(9.6)	1,879	(9.8)	1,746	(8.1)	2,337	(8.9)	7,215	(9.1)
7월	1,361	(10.5)	1,805	(9.4)	1,708	(8.0)	3,106	(11.9)	7,980	(10.0)
8월	1,158	(8.9)	1,423	(7.4)	1,761	(8.2)	3,137	(12.0)	7,479	(9.4)
9월	913	(7.0)	1,773	(9.2)	1,779	(8.3)	2,885	(11.0)	7,350	(9.2)
10월	1,067	(8.2)	1,770	(9.2)	1,518	(7.1)	2,711	(10.4)	7,066	(8.8)
11월	1,036	(8.0)	1,653	(8.6)	1,650	(7.7)	2,892	(11.1)	7,231	(9.0)
12월	1,355	(10.4)	1,701	(8.8)	2,031	(9.5)	3,220	(12.3)	8,307	(10.3)
월평균	1,085		1,602		1,788		2,181		1,664	

[표4-17] 월별 학대사례 상담

나. 월별 일반사례 상담

(단위:회,%)

구분	월별 일반사례 상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5,397	(100)	5,894	(100)	6,257	(100)	5,767	(100)	23,315	(100)
1월	438	(8.1)	490	(8.3)	326	(5.2)	164	(2.8)	1,418	(6.0)
2월	373	(6.9)	468	(7.9)	396	(6.3)	150	(2.6)	1,387	(5.9)
3월	452	(8.4)	620	(10.5)	480	(7.7)	160	(2.8)	1,712	(7.3)
4월	441	(8.2)	565	(9.6)	587	(9.4)	143	(2.5)	1,736	(7.4)
5월	389	(7.2)	502	(8.5)	435	(7.0)	443	(7.7)	1,769	(7.5)
6월	417	(7.7)	551	(9.3)	549	(8.8)	604	(10.5)	2,121	(9.0)
7월	547	(10.1)	437	(7.4)	549	(8.8)	638	(11.1)	2,171	(9.3)
8월	456	(8.4)	459	(7.8)	436	(7.0)	547	(9.5)	1,898	(8.1)

(단위:회,%)

9월	505	(9.4)	534	(9.1)	603	(9.6)	707	(12.3)	2,349	(10.0)
10월	524	(9.7)	438	(7.4)	684	(10.9)	793	(13.8)	2,439	(10.4)
11월	462	(8.6)	475	(8.1)	579	(9.3)	694	(12.0)	2,210	(9.4)
12월	393	(7.3)	355	(6.0)	633	(10.1)	724	(12.6)	2,105	(9.0)
평균	450		491		521		481		486	

[표4-18] 월별 일반사례 상담

다. 사례당 평균 상담

(단위:회,%)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사례	914	1,192	1,431	1,572	1,531	1,400	1,450	1,544
총 상담	13,019	19,224	21,025	26,169	5,397	5,894	6,688	5,767
평균 상담	14.2	16.1	14.7	16.6	3.5	4.2	4.6	3.7

[표4-19] 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라. 학대사례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24,541	(100)	38,420	(100)	41,318	(100)	43,649	(100)	147,927	(100)
법률서비스	47	(0.2)	110	(0.3)	55	(0.1)	87	(0.2)	299	(0.2)
보호서비스	54	(0.2)	52	(0.1)	58	(0.1)	105	(0.2)	269	(0.2)
복지서비스	529	(2.2)	2,356	(6.1)	2,283	(5.5)	1,903	(4.4)	7,071	(4.8)
사후관리	미등록		미등록		2	(0.0)	297	(0.7)	299	(0.2)
상담서비스	12,773	(52.0)	19,115	(49.8)	20,884	(50.5)	23,832	(54.6)	76,604	(51.8)
의료서비스	67	(0.3)	50	(0.1)	63	(0.2)	58	(0.1)	238	(0.2)
정보제공 서비스	11,071	(45.1)	16,737	(43.6)	17,966	(43.5)	17,225	(39.5)	62,998	(42.6)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미등록		미등록		7	(0.0)	142	(0.3)	149	(0.1)

[표4-20] 학대피해노인·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3. 신고자 및 접수, 인지

가. 신고자 유형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192	1,431	1,572	5,109
신 고 자 의 무 자	소계	75	119	115	142	45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6	9	6	0	0
	방문요양과돌봄,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4	0	0	5	9
	노인복지시설종사자	27	55	73	63	218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2	6	2	5	15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21	19	12	24	78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관련종사자	1	1	1	3	6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1	12	3	10	26
	구급대 대원	0	0	0	0	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0	0	0	0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0	0	0	0	0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0	0	0	0	0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0	1	0	0	1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5	5	9	5	24
	노인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7	10	8	26	51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	1	1	1	4
비 신 고 자 의 무 자	소계	839	1,075	1,316	1,430	4,660
	학대피해노인	43	48	51	62	204
	학대행위자	0	1	1	1	3
	친족	77	114	111	123	425
	타인	22	14	24	22	80
	관련 기관 종사자	697	898	1,129	1,222	3,946

[표4-21] 신고자 유형

나. 신고접수 경로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914	1,192	1,431	1,572	5,109
자체접수	277	396	350	366	1,390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4	10	13	23	60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	0	0	0	1
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5	3	5	8	21
경찰	586	739	997	1,083	3,405
행정복지센터	11	17	24	27	79
희망복지지원단	2	0	0	0	2
경로당	1	0	0	0	1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2	1	4	2	9
건강보험공단	1	7	9	4	21
노인일자리아사업	0	1	0	0	1
지자체(시청,도청)	10	7	21	44	82
정신건강복지센터	3	1	3	3	10
의료기관	1	5	2	1	9
1366 이관	0	5	1	4	10
신고앱	0	0	2	7	9

[표4-22] 신고접수 경로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914	1,192	1,431	1,572	5,109
대중매체	14	17	19	13	63
직접홍보	15	4	8	5	32
타기관 안내	51	51	73	70	245
주변인	17	23	11	24	75
인터넷	23	33	30	52	138
이미 알고 있었음	788	1,058	1,278	1,404	4,528
개입 경험 있었음	6	6	12	4	28

[표4-23]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4.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단위:회,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고 의무자	회	189	92	168	213	662	
		명	9,281	1,675	3,657	4,785	19,398	
	비신고 의무자	회	244	118	118	133	613	
		명	11,331	3,764	2,534	4,120	21,749	
노인인권교육			회	60	37	151	189	437
			명	12,198	907	3,382	3,914	20,401

[표4-24]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5.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가. 입소현황

(단위:명)

구분	실인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2	(100)	59	(100)	55	(100)	46	(100)	68	(100)
남자	3	(4.8)	15	(25.4)	7	(12.7)	7	(15.2)	11	(16.2)
여자	59	(95.2)	44	(74.6)	48	(87.3)	39	(84.8)	57	(83.8)

[표4-25]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 입소현황(실인원)

(단위:명)

구분	연인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2,568	(100)	2,253	(100)	1,473	(100)	1,923	(100)	1,999	(100)
남자	45	(1.8)	403	(17.9)	172	(11.7)	601	(31.3)	376	(18.8)
여자	2,523	(98.2)	1,850	(82.1)	1,301	(88.3)	1,322	(68.7)	1,623	(81.2)

[표4-26]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 입소현황(연인원)

(단위:명)

구분	1인 평균 입소기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1	38	27	42	29
남자	15	27	25	86	34
여자	43	42	27	34	28

[표4-2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여 입소현황 (1인 평균 입소기간)

나. 퇴소유형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1	(100)	59	(100)	55	(100)	46	(100)	71	(100)
원가정복귀	30	(49.2)	34	(57.6)	30	(54.5)	19	(41.3)	36	(50.7)
입소 전 거주지 복귀	-	(0.0)	-	(0.0)	1	(1.8)	-	(0.0)	-	(0.0)
타부양자 가정	6	(9.8)	9	(15.3)	5	(9.1)	6	(13.0)	5	(7.0)
시설입소	7	(11.5)	3	(5.1)	3	(5.5)	3	(6.5)	8	(11.3)
의료기관	3	(4.9)	3	(5.1)	5	(9.1)	3	(6.5)	3	(4.2)
별도 공간 마련	12	(19.7)	6	(10.2)	6	(10.9)	9	(19.6)	13	(18.3)
기타	3	(4.9)	4	(6.8)	5	(9.1)	6	(13.0)	6	(8.5)

[표4-2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자 퇴소현황

다. 학대유형

(단위: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116	(100)	108	(100)	99	(100)	84	(100)	116	(100)	523	(100)
신체적학대	52	(44.8)	46	(42.6)	39	(39.4)	36	(42.9)	52	(44.8)	225	(43.0)
정서적학대	57	(49.1)	47	(43.5)	42	(42.4)	39	(46.4)	48	(41.4)	233	(44.6)
성학대	3	(2.6)	1	(0.9)	0	(0.0)	1	(1.2)	0	(0.0)	5	(1.0)
경제적학대	2	(1.7)	2	(1.9)	6	(6.1)	1	(1.2)	9	(7.8)	20	(3.8)
방임	0	(0.0)	9	(8.3)	8	(8.1)	3	(3.6)	3	(2.6)	23	(4.4)
자기방임	1	(0.9)	3	(2.8)	2	(2.0)	1	(1.2)	0	(0.0)	7	(1.3)
유기	1	(0.9)	0	(0.0)	2	(2.0)	3	(3.6)	4	(3.4)	10	(1.9)

[표4-2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쉼터 입소자 학대유형

라. 서비스 내용

(단위:회,%)

구분	입소자 서비스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6,951	(100)	11,636	(100)	8,997	(100)	14,698	(100)	16,366	(100)	
식사 제공	조식	2,268	(13.4)	2,140	(18.4)	1,363	(15.1)	1,981	(13.5)	2,017	(12.3)
	중식	3,232	(19.1)	2,058	(17.7)	1,309	(14.5)	1,907	(13.0)	1,979	(12.1)
	석식	2,261	(13.3)	2,102	(18.1)	1,336	(14.8)	1,967	(13.4)	1,984	(12.1)
	소계	7,761	(45.8)	6,300	(54.1)	4,008	(44.5)	5,855	(39.8)	5,980	(36.5)
법률 서비스	연결	2	(0.0)	0	(0.0)	4	(0.0)	6	(0.0)	3	(0.0)
	지원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2	(0.0)	0	(0.0)	4	(0.0)	6	(0.0)	3	(0.0)
의료 서비스	연계	259	(1.5)	89	(0.8)	95	(1.0)	134	(0.9)	62	(0.4)
	지원	210	(0.2)	217	(1.9)	139	(1.5)	207	(1.4)	145	(1.5)
	기타	924	(5.5)	891	(7.7)	1,187	(13.2)	1,974	(13.4)	2,038	(12.5)
	소계	1,393	(8.2)	1,197	(10.3)	1,422	(15.8)	2,315	(15.8)	2,245	(14.3)
상담	쉼터	149	(0.9)	280	(2.4)	228	(2.5)	410	(2.8)	472	(2.9)
	노보	163	(1.0)	107	(0.9)	132	(1.5)	106	(0.7)	97	(0.6)
	전문가	262	(1.5)	97	(0.8)	76	(0.8)	89	(0.6)	62	(0.4)
	가족 상담	-	(0.0)	1	(0.0)	1	(0.0)	3	(0.0)	4	(0.0)
	기타	-	(0.0)	0	(0.0)	0	(0.0)	0	(0.0)	369	(2.3)
	소계	574	(3.4)	485	(4.2)	437	(4.9)	608	(4.1)	1,004	(6.1)
프로그램	건강	5,445	(32.1)	2,587	(22.2)	2,547	(28.3)	5,088	(34.6)	6,189	(37.8)
	문화	218	(1.3)	25	(0.2)	23	(0.3)	90	(0.6)	135	(0.8)
	회복	37	(0.2)	25	(0.2)	9	(0.1)	29	(0.2)	16	(0.1)
	심리	1,512	(8.9)	938	(8.1)	455	(5.1)	619	(4.2)	584	(3.6)
	기타	9	(0.1)	79	(0.7)	92	(1.0)	88	(0.6)	110	(0.7)
	소계	7,221	(42.6)	3,654	(31.4)	3,126	(34.7)	5,914	(40.2)	7,034	(43.0)

[표4-3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쉼터 서비스 내용

2022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V장

경기도내 2022년 노인학대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목적의 모든 사례로 경기도는 권역별로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 동부, 서부, 북부, 북서부)에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 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및 서신에 의한 접수,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12, 119 신고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접수된 사례는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노인학대 의심사례와 일반사례를 판정한다.

- **노인학대 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응급(12시간),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72시간)로 일정 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한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 **일반사례** :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노인학대와 관련 없이 단순 시설입소, 기관안내 등의 문의와 자녀 간 재산 갈등의 법적 분쟁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및 노인학대로 신고 되었지만 정보부족(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부족, 주소 불명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이처럼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 사례 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일반사례로 분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 사례에 포함되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 접수 건수의 총계를 전체 신고접수 건수로 보았다.

가. 전체 신고접수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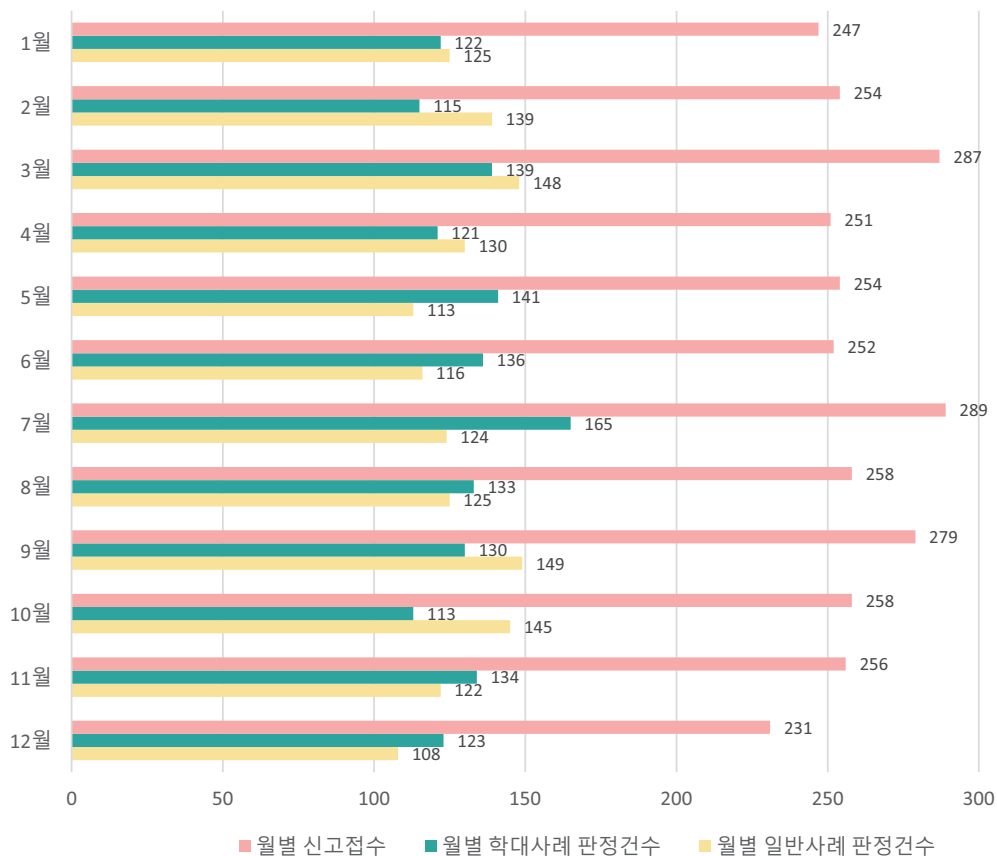
구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신고건수 (학대+일반)	2,445	2,592	2,881	3,116
	학대 사례건수(%)	914(37.4)	1,192(46.0)	1,431(49.7)	1,572(50.4)
	일반 사례건수(%)	1,531(62.6)	1,400(54.0)	1,450(50.3)	1,544(49.6)
	전년대비 신고 증감률(%)	-2.7	6.0	11.2	8.2

[표5-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2022년					
	월별 신고접수 (학대+일반)		월별 학대사례 판정건수		월별 일반사례 판정건수	
계	3,116	(100)	1,572	(100)	1,544	(100)
1월	247	(7.9)	122	(7.8)	125	(8.1)
2월	254	(8.2)	115	(7.3)	139	(9.0)
3월	287	(9.2)	139	(8.8)	148	(9.6)
4월	251	(8.1)	121	(7.7)	130	(8.4)
5월	254	(8.2)	141	(9.0)	113	(7.3)
6월	252	(8.1)	136	(8.7)	116	(7.5)
7월	289	(9.3)	165	(10.5)	124	(8.0)
8월	258	(8.3)	133	(8.5)	125	(8.1)
9월	279	(9.0)	130	(8.3)	149	(9.7)
10월	258	(8.3)	113	(7.2)	145	(9.4)
11월	256	(8.2)	134	(8.5)	122	(7.9)
12월	231	(7.4)	123	(7.8)	108	(7.0)
월평균	260		131		129	

[표5-2] 2022년 노인학대 월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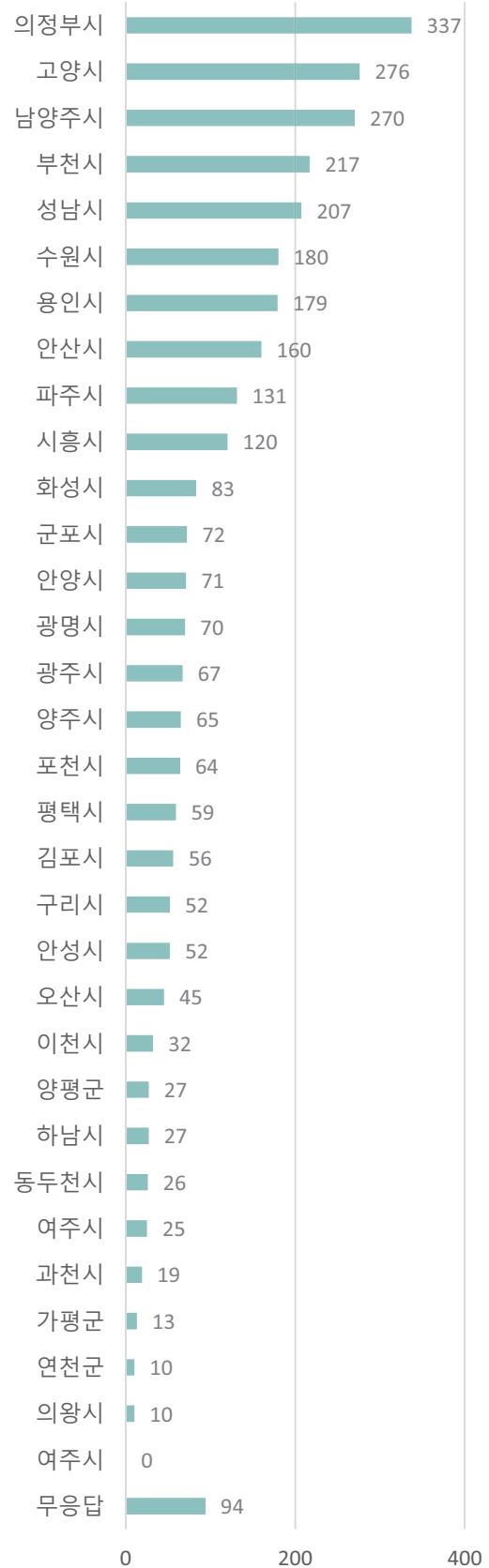


[그래프5-2] 2022년 노인학대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신고접수	
계	3,116	(100)
의정부시	337	(10.8)
고양시	276	(8.9)
남양주시	270	(8.7)
부천시	217	(7.0)
성남시	207	(6.6)
수원시	180	(5.8)
용인시	179	(5.7)
안산시	160	(5.1)
파주시	131	(4.2)
시흥시	120	(3.9)
화성시	83	(2.7)
군포시	72	(2.3)
안양시	71	(2.3)
광명시	70	(2.2)
광주시	67	(2.2)
양주시	65	(2.1)
포천시	64	(2.1)
평택시	59	(1.9)
김포시	56	(1.8)
구리시	52	(1.7)
안성시	52	(1.7)
오산시	45	(1.4)
이천시	32	(1.0)
양평군	27	(0.9)
하남시	27	(0.8)
동두천시	26	(0.8)
여주시	25	(0.8)
과천시	19	(0.6)
가평군	13	(0.4)
연천군	10	(0.3)
의왕시	10	(0.3)
여주시	0	(0.0)
무응답	94	(3.0)
시 평균*	101	

*응답한 시군 현황의 평균(무응답제외)



[표5-3] 2022년 노인학대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그래프5-3] 2022년 노인학대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나. 사례판정

사례판정은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 사례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일반사례로 분류한다.

- **응급사례** :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현장조사는 총 1,524건임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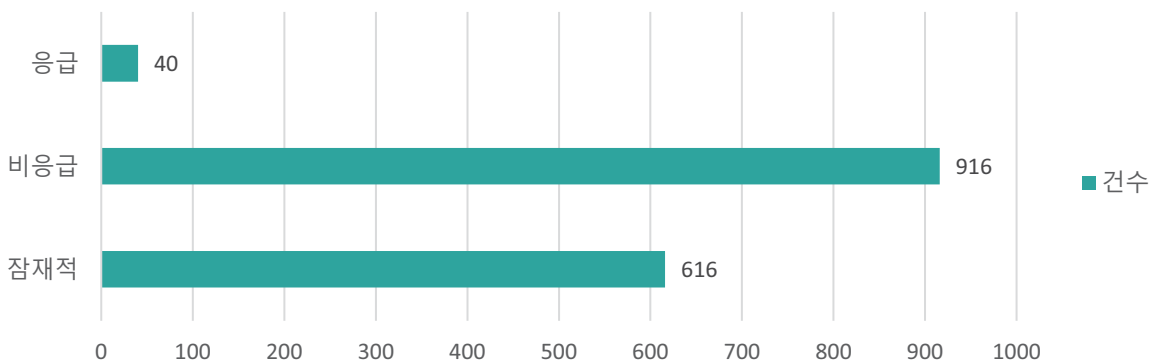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실시	40	900	584	1,524
미실시	0	16	25	41
무응답	0	0	7	7
계	40	916	616	1,572

[표5-4] 2022년 현장조사 실시 현황

(단위:건,%)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건수	40	916	616	1,572
비율(%)	2.5	58.3	39.2	100

[표5-5] 2022년 학대사례 사례판정 결과



[그래프5-5] 2022년 학대사례 사례판정 결과

2. 신고자 및 접수, 인지

가.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비신고의무자 대상

- 관련기관: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
- 친족: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 타인: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

(단위:명,%)

구분		2022년	
합계		1,572	(100)
신고 의무자	소계	142	(9.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0	(0.0)
	방문요양과돌봄,안전,확인등의서비스종사자	5	(0.3)
	노인복지시설종사자	63	(4.0)
	가정폭력관련종사자	5	(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4	(1.5)
	사회복지관,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관련종사자	3	(0.2)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10	(0.6)
	구급대대원	0	(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0	(0.0)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0	(0.0)
	응급 구조사 및 의료기사	0	(0.0)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5	(0.3)
	노인복지시설설치및관리업무담당공무원	26	(1.7)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	(0.1)
비신고 의무자	소계	1,430	(91.0)
	학대피해노인	62	(3.9)
	학대행위자	1	(0.1)
	친족	123	(7.8)
	타인	22	(1.4)
	관련기관 종사자	1,222	(77.7)

[표5-6] 신고자 유형 현황

나.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2 또는 119 신고에 의해 접수된다.

(단위:건,%)

구분	2022년	
계	1,572	(100)
자체접수	366	(23.3)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3	(1.5)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0	(0.0)
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8	(0.5)
경찰	1,083	(68.9)
행정복지센터	27	(1.7)
희망복지지원단	0	(0.0)
경로당	0	(0.0)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2	(0.1)
건강보험공단	4	(0.3)
노인일자리사업	0	(0.0)
지자체(시청,도청)	44	(2.8)
정신건강복지센터	3	(0.2)
의료기관	1	(0.1)
1366 이관	4	(0.3)
신고앱	7	(0.4)

[표5-7] 신고접수 경로 현황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단위:건,%)

구분	2022년	
계	1,572	(100)
대중매체	13	(0.8)
직접홍보	5	(0.3)
타기관 안내	70	(4.5)
주변인	24	(1.5)
인터넷	52	(3.3)
알고 있었음	1,404	(89.3)
개입경험 유	4	(0.3)

[표5-8]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경로 현황

3.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 유형은 노인복지법 제2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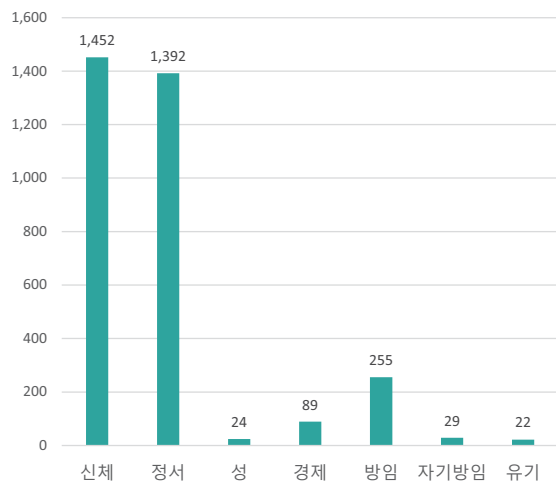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복학대**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중복학대)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구분	2022년	
계	3,263	(100)
신체	1,452	(44.5)
정서	1,392	(42.7)
성	24	(0.7)
경제	89	(2.7)
방임	255	(7.8)
자기방임	29	(0.9)
유기	22	(0.7)

[표5-9] 학대유형



[그래프5-9] 학대유형

4. 노인학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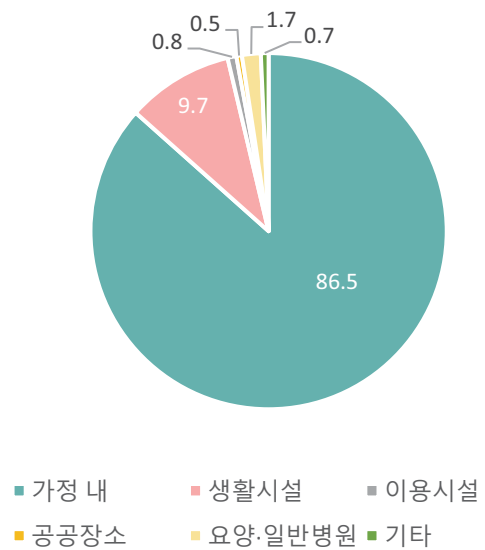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나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내 학대이다.

- **가정내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단위:건,%)

구분	2022년	
계	1,572	(100)
가정 내	1,360	(86.5)
생활시설	153	(9.7)
이용시설	13	(0.8)
공공장소	8	(0.5)
요양·일반병원	27	(1.7)
기타	11	(0.7)

[표5-10] 학대발생장소 현황



[그래프5-10] 학대발생장소 현황

(단위:건,%)

구분	2022년			
	가정학대 판정건수		시설학대 판정건수	
계	1,360	(100)	212	(100)
수원시	88	(6.5)	10	(8.0)
안산시	72	(5.3)	1	(0.5)
안성시	10	(0.7)	1	(0.5)
오산시	19	(1.4)	0	(0.0)
평택시	22	(1.6)	1	(0.5)
화성시	19	(1.4)	1	(0.5)
광주시	28	(2.1)	4	(1.9)
성남시	78	(5.7)	17	(8.0)
양평군	8	(0.6)	1	(0.5)
여주시	10	(0.0)	2	(0.0)
용인시	68	(5.0)	16	(7.5)
이천시	7	(0.5)	3	(1.4)
의왕시	6	(0.4)	1	(0.5)
과천시	10	(0.7)	-	-
하남시	8	(0.6)	6	(2.8)
광명시	38	(2.8)	3	(1.4)
군포시	32	(2.4)	1	(0.5)
부천시	109	(8.0)	7	(3.3)
시흥시	51	(3.8)	9	(4.2)
안양시	36	(2.6)	1	(0.5)
김포시	25	(1.8)	8	(3.8)
고양시	149	(11.0)	21	(9.9)
파주시	81	(6.0)	10	(4.7)
양주시	19	(1.4)	20	(9.4)
동두천시	13	(1.0)	1	(0.5)
연천군	0	(0.0)	4	(1.9)
의정부시	99	(7.3)	19	(9.0)
포천시	32	(2.4)	14	(6.6)
구리시	36	(2.6)	1	(0.5)
남양주시	180	(13.2)	26	(12.3)
가평균	7	(0.5)	3	(1.4)
시 평균	43.9		6.9	

[표5-11] 2022년 노인학대 시군별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현황

5. 노인학대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 **일반상담** :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 **접수상담** :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
- **진행상담** :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을 앞두고 실시한 상담으로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단위:회,%)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총 사례	1,572	1,544	3,116
총 상담	26,169	5,767	31,936
평균 상담	16.6	3.7	10.2

[표5-12] 사례당 평균 상담건수

(단위:회,%)

구분	2022년 총 상담건수: 31,936			
	월별 학대사례 상담		월별 일반사례 상담	
계	26,169	(100)	5,767	(100)
1월	675	(2.6)	164	(2.8)
2월	880	(3.4)	150	(2.6)
3월	1,070	(4.1)	160	(2.8)
4월	1,132	(4.3)	143	(2.5)
5월	2,124	(8.1)	443	(7.7)
6월	2,337	(8.9)	604	(10.5)
7월	3,106	(11.9)	638	(11.1)
8월	3,137	(12.0)	547	(9.5)
9월	2,885	(11.0)	707	(12.3)
10월	2,711	(10.4)	793	(13.8)
11월	2,892	(11.1)	694	(12.0)
12월	3,220	(12.3)	724	(12.6)
월 평균	2,180		480	

[표5-13] 월별 학대사례 상담

(단위:건,%)

2022년		
구분	건	비율
계	31,936	(100)
내방	168	(0.5)
방문	4,838	(15.1)
서신	2,836	(8.9)
온라인	299	(0.9)
전화	23,321	(73.0)
기타	300	(0.9)

[표5-14] 상담방법 현황

(단위:회,%)

2022년		
구분	건	비율
계	38,541	(100)
법률서비스	85	(0.2)
보호서비스	105	(0.3)
복지서비스	1,825	(4.7)
사후관리	297	(0.8)
상담서비스	21,170	(54.9)
의료서비스	54	(0.1)
정보제공서비스	15,005	(38.9)

[표5-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회,%)

2022년		
구분	건	비율
계	5,107	(100)
법률서비스	2	(0.0)
복지서비스	78	(1.5)
상담서비스	2,662	(52.1)
의료서비스	4	(0.1)
정보제공서비스	2,219	(43.5)

[표5-16]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6.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가. 2022년 입소현황

◎ 총 68명이며 남성 11명, 여성 57명임

(단위:명,%)

구분	명	비율
계	68	(100)
남성	11	(16.2)
여성	57	(83.8)
1인 평균 이용일	29일	

[표5-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현황

나. 퇴소현황

(단위:명,%)

합계	71	(100)
원가정복귀	36	(50.7)
입소 전 거주지 복귀	0	(0.0)
타부양자 가정	5	(7.0)
시설입소	8	(11.3)
의료기관	3	(4.2)
별도 공간 마련	13	(18.3)
기타	6	(8.5)

[표5-1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현황

다. 학대유형

(단위:건,%)

합 계	116	(100)
신체적 학대	52	(44.8)
정서적 학대	48	(41.4)
성적 학대	-	(0.0)
경제적 학대	9	(7.8)
방임	3	(2.6)
자기방임	-	(0.0)
유기	3	(3.6)

[표5-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유형 현황

라. 서비스 내용

(단위:회,%)

구분		2022년	
계		16,366	(100)
식사 제공	조식	2,017	(12.3)
	중식	1,979	(12.1)
	석식	1,984	(12.1)
	소계	5,980	(36.5)
법률 서비스	연결	3	(0.0)
	지원	0	(0.0)
	소계	3	(0.0)
의료 서비스	연계	62	(0.4)
	지원	145	(1.5)
	기타	2,038	(12.5)
	소계	2,245	(14.3)
상담	쉼터	472	(2.9)
	노보	97	(0.6)
	전문가	62	(0.4)
	가족상담	4	(0.0)
	기타	369	(2.3)
	소계	1,004	(6.1)
프로그램	건강	6,189	(37.8)
	문화	135	(0.8)
	회복	16	(0.1)
	심리	584	(3.6)
	기타	110	(0.7)
	소계	7,034	(43.0)

[표5-2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내용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단위:회,%)

구분		회	명
노인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213	4,785
	비신고의무자	133	4,120
	소계	346	8,905
노인인권교육		189	3,914

[표5-21] 2022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2022
경기도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 VI장

경기도내 2022년 주요 사례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 분석

가. 학대피해노인 현황

(단위:명,%)

구분	2021년				2022년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수		학대피해 노인 수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수		학대피해 노인 수	
계	1,881,464	(100)	1,431	(100)	1,992,807	(100)	1,572	(100)
남	834,466	(44.4)	349	(24.4)	890,053	(44.7)	395	(25.1)
여	1,046,998	(56.6)	1,082	(75.6)	1,102,754	(55.3)	1,177	(74.9)

*65세 이상 인구수: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12 기준)

[표6-1]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5~69세이하	166	(18.2)	235	(19.7)	330	(23.1)	346	(22.0)	1,077	(21.1)
70~74세이하	225	(24.6)	249	(20.9)	332	(23.2)	326	(20.7)	1,132	(22.2)	
75~79세이하	211	(23.1)	273	(22.9)	306	(21.4)	346	(22.0)	1,136	(22.2)	
80~84세이하	182	(19.9)	235	(19.7)	239	(16.7)	279	(17.7)	935	(18.3)	
85~89세이하	81	(8.9)	128	(10.7)	148	(10.3)	185	(11.8)	542	(10.6)	
90~94세이하	43	(4.7)	51	(4.3)	58	(4.1)	65	(4.1)	217	(4.2)	
95~99세이하	6	(0.7)	20	(1.7)	16	(1.1)	21	(1.3)	63	(1.2)	
100세이상	0	(0.0)	1	(0.1)	2	(0.1)	4	(0.3)	7	(0.1)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남자	65~69세이하	39	(16.3)	55	(17.7)	60	(17.2)	81	(20.5)	235	(18.1)
	70~74세이하	55	(22.9)	67	(21.5)	73	(20.9)	70	(17.7)	265	(20.5)
	75~79세이하	57	(23.8)	74	(23.8)	75	(21.5)	83	(21.0)	289	(22.3)
	80~84세이하	56	(23.3)	61	(19.6)	69	(19.8)	82	(21.0)	289	(22.3)
	85~89세이하	19	(7.9)	34	(10.9)	56	(16.0)	61	(15.4)	170	(13.1)
	90~94세이하	13	(5.4)	16	(5.1)	13	(3.7)	14	(3.5)	56	(4.3)
	95~99세이하	1	(0.4)	4	(1.3)	3	(0.9)	4	(1.0)	12	(0.9)
	합계	240	(100)	311	(100)	349	(100)	395	(100)	1,295	(100)

[표6-2]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분포=평균연령 76.6세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여자	65~69세이하	127	(18.8)	180	(20.4)	270	(25.0)	265	(22.5)	842	(22.1)
	70~74세이하	170	(25.2)	182	(20.7)	259	(23.9)	256	(21.8)	867	(22.7)
	75~79세이하	154	(22.8)	199	(22.6)	231	(21.3)	263	(22.3)	847	(22.2)
	80~84세이하	126	(18.7)	174	(19.8)	170	(15.7)	197	(16.7)	667	(17.5)
	85~89세이하	62	(9.2)	94	(10.7)	92	(8.5)	124	(10.5)	372	(9.8)
	90~94세이하	30	(4.5)	35	(4.0)	45	(4.2)	51	(4.3)	161	(4.2)
	95~99세이하	5	(0.7)	16	(1.8)	13	(1.2)	17	(1.4)	51	(1.3)
	100세이상	0	(0.0)	1	(0.1)	2	(0.2)	4	(0.3)	7	(0.2)
	합계	674	(100)	881	(100)	1,082	(100)	1,177	(100)	3,814	(100)

[표6-2]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분포=평균연령 76.6세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남자	240	(26.3)	311	(26.1)	349	(24.4)	395	(25.1)	1,295	(25.3)
	여자	674	(73.7)	881	(73.9)	1,082	(75.6)	1,177	(74.9)	3,814	(74.7)
비응급	남자	125	(23.7)	174	(24.7)	202	(21.8)	211	(23.0)	712	(23.2)
	여자	403	(76.3)	531	(75.3)	723	(78.2)	705	(77.0)	2,362	(76.8)
	합계	528	(100)	705	(100)	925	(100)	916	(100)	3,074	(100)
응급	남자	7	(43.8)	3	(12.5)	10	(29.4)	9	(22.5)	29	(25.4)
	여자	9	(56.3)	21	(87.5)	24	(70.6)	31	(77.5)	85	(74.6)
	합계	16	(100)	24	(100)	34	(100)	40	(100)	114	(100)
잠재적	남자	108	(29.2)	134	(28.9)	137	(29.0)	175	(28.4)	554	(28.8)
	여자	262	(70.8)	329	(71.1)	335	(71.0)	441	(71.6)	1,367	(71.2)
	합계	370	(100)	463	(100)	472	(100)	616	(100)	1,921	(100)

[표6-3] 학대피해노인 성별 사례판정 결과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가정내	남	1,088	810	(88.6)	1,025	(86.0)	1,243	(86.9)	1,360	(86.5)	4,438	(87.0)
	여	3,350										
생활시설	남	155	86	(9.4)	139	(11.7)	142	(9.9)	153	(9.7)	520	(10.2)
	여	365										
이용시설	남	8	4	(0.4)	13	(1.1)	9	(0.6)	13	(0.8)	39	(0.8)
	여	31										
국민장소	남	9	8	(0.9)	7	(0.6)	8	(0.6)	8	(0.5)	31	(0.7)
	여	22										
여양·일반병원	남	29	4	(0.4)	5	(0.4)	21	(1.5)	27	(1.7)	57	(1.2)
	여	57										
기타	남	6	2	(0.2)	3	(0.3)	8	(0.6)	11	(0.7)	24	(0.4)
	여	18										

[표6-4] 학대피해노인 성별 학대장소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2,089	2,897	3,401	3,263	11,650
합계	경제적 학대	33	79	58	89	259
	방임	177	240	202	255	874
	성적학대	23	21	32	24	100
	신체적 학대	860	1,276	1,541	1,452	5,129
	유기	13	21	16	22	72
	자기방임	42	25	18	29	114
	정서적 학대	941	1,233	1,529	1,392	5,095
	무응답	0	2	5	0	7
	합계	2,089	2,897	3,401	3,263	11,650
남자	경제적 학대	15	13	14	30	72
	방임	65	78	67	101	311
	신체적 학대	202	301	344	321	1,168
	자기방임	20	11	9	10	50
	정서적 학대	203	255	315	314	1,087
	무응답	0	2	1	0	3
	합계	515	675	763	787	2,740
여자	경제적 학대	18	66	44	59	187
	방임	112	162	135	154	563
	성적 학대	18	15	26	17	76
	신체적 학대	658	975	1,197	1,131	3,961
	유기	8	12	9	18	47
	자기방임	22	14	9	19	64
	정서적 학대	738	978	1,214	1,078	4,008
	무응답	0	0	4	0	4
	합계	1,574	2,222	2,638	2,476	8,910

[표6-5]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경제적학대	33	79	58	89	259
	방임	177	240	202	255	874
	성적학대	23	21	32	24	100
	신체적학대	860	1,276	1,541	1,452	5,129
	유기	13	21	16	22	72
	자기방임	42	25	18	29	114
	정서적학대	941	1,233	1,529	1,392	5,095
	무응답	0	2	5	0	7
	합계	2,089	2,897	3,401	3,263	11,650
65세 이상 69세 이하	경제적학대	2	12	10	3	27
	방임	9	21	6	13	49
	성적학대	5	2	4	4	15
	신체적학대	156	285	404	374	1,219
	유기	2	0	1	0	3
	자기방임	7	5	4	5	21
	정서적학대	196	285	347	326	1,154
	무응답	0	0	3	0	3
	합계	377	610	779	725	2,491
70세 이상 74세 이하	경제적학대	3	11	9	22	45
	방임	10	19	21	10	60
	성적학대	4	2	9	6	21
	신체적학대	223	300	379	324	1,226
	유기	1	0	5	2	8
	자기방임	6	7	3	5	21
	정서적학대	255	295	379	295	1,224
	무응답	0	1	1	0	2
	합계	502	635	806	664	2,607
75세 이상 79세 이하	경제적학대	9	20	20	26	75
	방임	28	27	38	51	144
	성적학대	1	5	7	1	14
	신체적학대	231	285	348	305	1,169
	유기	3	4	3	4	14
	자기방임	11	6	2	7	26
	정서적학대	237	283	375	357	1,252
	합계	520	630	793	751	2,694
80세 이상 84세 이하	경제적학대	15	16	6	17	54
	방임	72	72	53	62	259

[표6-6]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명,%)

80세 이상 84세 이하	성적학대	4	5	2	4	15
	신체적학대	170	228	223	248	869
	유기	4	11	3	4	22
	자기방임	5	2	6	5	18
	정서적학대	170	204	231	240	845
	합계	440	538	524	580	2,082
85세 이상 89세 이하	경제적학대	4	15	7	18	44
	방임	37	62	52	80	231
	성적학대	7	3	6	6	22
	신체적학대	54	102	123	143	422
	유기	1	6	2	5	14
	자기방임	4	3	3	4	14
	정서적학대	58	116	130	128	432
	무응답	0	0	1	0	1
합계	165	307	324	384	1,180	
90세 이상 94세 이하	경제적학대	0	5	5	2	12
	방임	21	30	22	24	97
	성적학대	2	0	2	1	5
	신체적학대	20	52	49	49	170
	유기	2	0	0	5	7
	자기방임	9	2	0	3	14
	정서적학대	23	36	53	34	146
	무응답	0	1	0	0	1
합계	77	126	131	118	452	
95세 이상 99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	1	1	2
	방임	0	9	10	13	32
	성적학대	0	4	1	2	7
	신체적학대	6	24	14	9	53
	유기	0	0	2	2	4
	정서적학대	2	13	13	10	38
	합계	8	50	41	37	136
100세 이상	방임	-	0	0	2	2
	성적학대	-	0	1	0	1
	신체적학대	-	0	1	0	1
	정서적학대	-	1	1	2	4
	합계	-	1	3	4	8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6]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초혼	518	(56.7)	683	(57.3)	806	(56.3)	813	(51.7)	2,820	(55.2)
재혼	37	(4.0)	49	(4.1)	45	(3.1)	80	(5.1)	211	(4.1)
이혼	33	(3.6)	43	(3.6)	75	(5.2)	78	(5.0)	229	(4.5)
사실혼	25	(2.7)	34	(2.9)	32	(2.2)	57	(3.6)	148	(2.9)
사별	282	(30.9)	366	(30.7)	445	(31.1)	512	(32.6)	1,605	(31.4)
미혼	11	(1.2)	10	(0.8)	11	(0.8)	12	(0.8)	44	(0.9)
별거	8	(0.9)	7	(0.6)	16	(1.1)	17	(1.1)	48	(0.9)
가출	0	(0.0)	0	(0.0)	1	(0.1)	3	(0.2)	4	(0.1)

[표6-7] 학대피해노인 결혼상태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동거	681	(74.5)	857	(71.9)	1,081	(75.5)	1,139	(72.5)	3,758	(73.6)
비동거	233	(25.5)	335	(28.1)	350	(24.5)	433	(27.5)	1,351	(26.4)

[표6-8]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동거 여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227	(100)	1,581	(100)	1,855	(100)	2,016	(100)	6,679	(100)
배우자	448	(36.5)	599	(37.9)	702	(37.8)	776	(38.5)	2,525	(37.8)
아들	315	(25.7)	411	(26.0)	472	(25.4)	483	(24.0)	1,681	(25.2)
딸	98	(8.0)	135	(8.5)	154	(8.3)	186	(9.2)	573	(8.6)
손자녀	102	(8.3)	90	(5.7)	130	(7.0)	109	(5.4)	431	(6.5)
시설	71	(5.8)	98	(6.2)	108	(5.8)	125	(6.2)	402	(6.0)
며느리	43	(3.5)	50	(3.2)	40	(2.2)	45	(2.2)	178	(2.7)
병원	10	(0.8)	15	(0.9)	19	(1.0)	19	(0.9)	63	(0.9)
사위	10	(0.8)	7	(0.4)	14	(0.8)	14	(0.7)	45	(0.7)
기타 동거인	9	(0.7)	9	(0.6)	15	(0.8)	22	(1.1)	55	(0.8)
기타 친,인척	5	(0.4)	5	(0.3)	9	(0.5)	10	(0.5)	29	(0.4)
무응답	116	(9.5)	162	(13.3)	192	(15.8)	277	(22.8)	470	(38.6)

*학대피해노인이 2명이상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9]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노인단독	147	(16.1)	146	(12.2)	186	(13.0)	201	(12.8)	680	(13.3)
노인부부	295	(32.3)	380	(31.9)	485	(33.9)	530	(33.7)	1,690	(33.1)
자녀동거	321	(35.1)	449	(37.7)	503	(35.2)	561	(35.7)	1,834	(35.9)
손자녀동거	51	(5.6)	44	(3.7)	46	(3.2)	45	(2.9)	186	(3.6)
자녀·손자녀 동거	40	(4.4)	34	(2.9)	55	(3.8)	48	(3.1)	177	(3.5)
기타	60	(6.6)	139	(11.7)	156	(10.9)	187	(11.9)	542	(10.6)

[표6-10]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무학	161	(17.6)	214	(18.0)	293	(20.5)	228	(14.5)	896	(17.5)
초졸	441	(48.2)	481	(40.4)	430	(30.0)	547	(34.8)	1,899	(37.2)
중졸	162	(17.7)	228	(19.1)	256	(17.9)	279	(17.7)	925	(18.1)
고졸	110	(12.0)	216	(18.1)	375	(26.2)	433	(27.5)	1,134	(22.2)
전문대졸이상	40	(4.4)	53	(4.4)	77	(5.4)	85	(5.4)	265	(5.0)

[표6-11] 학대피해노인 교육수준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고소득	10	(1.1)	23	(1.9)	19	(1.3)	21	(1.3)	73	(1.4)
소득없음	166	(18.2)	193	(16.2)	304	(21.2)	249	(15.8)	912	(17.9)
수급자	95	(10.4)	136	(11.4)	167	(11.7)	193	(12.3)	591	(11.6)
일반	532	(58.2)	720	(60.4)	849	(59.3)	1,010	(64.2)	3,111	(60.9)
저소득	111	(12.1)	120	(10.1)	92	(6.4)	99	(6.3)	422	(8.3)

[표6-12] 학대피해노인 경제수준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1달에 한번이상	180	(19.7)	236	(19.8)	311	(21.7)	316	(20.1)	1,043	(20.4)
1주일에 한번이상	231	(25.3)	198	(16.6)	264	(18.4)	243	(15.5)	936	(18.3)
3개월에 한번이상	82	(9)	160	(13.4)	172	(12)	225	(14.3)	639	(12.5)
6개월에 한번이상	91	(10)	159	(13.3)	163	(11.4)	218	(13.9)	631	(12.4)
매일	136	(14.9)	150	(12.6)	138	(9.6)	128	(8.1)	552	(10.8)
일회성	194	(21.2)	289	(24.2)	383	(26.8)	442	(28.1)	1,308	(25.6)

[표6-13] 학대발생빈도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1개월 미만	29	(3.2)	49	(4.1)	42	(2.9)	51	(3.2)	171	(3.3)
1개월 이상 1년 미만	123	(13.5)	186	(15.6)	215	(15.6)	218	(13.9)	742	(14.5)
1년이상 5년 미만	303	(33.2)	358	(30)	397	(27.7)	468	(29.8)	1,526	(29.9)
5년이상	281	(30.7)	322	(27)	411	(28.7)	408	(26)	1,422	(27.8)
일회성	178	(19.5)	277	(23.2)	366	(25.6)	427	(27.2)	1,248	(24.4)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1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지속기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달에 한번이상	414	(19.8)	645	(22.3)	775	(22.8)	695	(21.3)	2,529	(21.7)
	1주일에 한번이상	570	(27.3)	538	(18.6)	828	(24.3)	639	(19.6)	2,575	(22.1)
	3개월에 한번이상	185	(8.9)	347	(12.0)	383	(11.3)	486	(14.9)	1,401	(12.0)
	6개월에 한번이상	196	(9.4)	396	(13.7)	384	(11.3)	458	(14.0)	1,434	(12.3)
	매일	425	(20.3)	471	(16.3)	414	(12.2)	300	(9.2)	1,610	(13.8)
	일회성	299	(14.3)	500	(17.3)	617	(18.1)	685	(21.0)	2,101	(18.0)
	합계	2,089	(100)	2,897	(100)	3,401	(100)	3,263	(100)	11,650	(100)

[표6-1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발생빈도

(단위:명,%)

경제전학대	1달에 한번이상	3	(9.1)	24	(30.4)	16	(27.6)	30	(33.7)	73	(28.2)
	1주일에 한번이상	16	(48.5)	14	(17.7)	19	(32.8)	13	(14.6)	62	(23.9)
	3개월에 한번이상	1	(3.0)	6	(7.6)	5	(8.6)	8	(9.0)	20	(7.7)
	6개월에 한번이상	2	(6.1)	10	(12.7)	4	(6.9)	6	(6.7)	22	(8.5)
	매일	2	(6.1)	13	(16.5)	6	(10.3)	13	(14.6)	3	(13.1)
	일회성	9	(27.3)	12	(15.2)	8	(13.8)	19	(21.3)	48	(18.5)
	합계	33	(100)	79	(100)	58	(100)	89	(100)	259	(100)
판교	1달에 한번이상	14	(7.9)	22	(9.2)	28	(13.9)	29	(11.4)	93	(10.6)
	1주일에 한번이상	30	(16.9)	41	(17.1)	25	(12.4)	31	(12.2)	127	(14.5)
	3개월에 한번이상	9	(5.1)	6	(2.5)	10	(5.0)	6	(2.4)	31	(3.5)
	6개월에 한번이상	4	(2.3)	13	(5.4)	9	(4.5)	10	(3.9)	36	(4.1)
	매일	66	(37.3)	66	(27.5)	43	(21.3)	85	(33.3)	260	(29.7)
	일회성	54	(30.5)	92	(38.3)	87	(43.1)	94	(36.9)	327	(37.4)
	합계	177	(100)	240	(100)	202	(100)	255	(100)	874	(100)
조전학대	1달에 한번이상	1	(4.3)	4	(19.0)	9	(28.1)	2	(8.3)	16	(16.0)
	1주일에 한번이상	11	(47.8)	1	(4.8)	9	(28.1)	8	(33.3)	29	(29.0)
	3개월에 한번이상	1	(4.3)	0	(0.0)	2	(6.3)	0	(0.0)	3	(3.0)
	6개월에 한번이상	0	(0.0)	1	(4.8)	1	(3.1)	2	(8.3)	4	(4.0)
	매일	8	(34.8)	11	(52.4)	6	(18.8)	6	(25.0)	31	(31.0)
	일회성	2	(8.7)	4	(19.0)	5	(15.6)	6	(25.0)	17	(17.0)
	합계	23	(100)	21	(100)	32	(100)	24	(100)	100	(100)
신체전학대	1달에 한번이상	192	(22.3)	276	(21.6)	349	(22.6)	302	(20.8)	1,119	(21.8)
	1주일에 한번이상	219	(25.5)	218	(17.1)	355	(23.0)	269	(18.5)	1,061	(20.7)
	3개월에 한번이상	96	(11.2)	188	(14.7)	174	(11.3)	245	(16.9)	703	(13.7)
	6개월에 한번이상	100	(11.6)	198	(15.5)	185	(12.0)	224	(15.4)	707	(13.8)
	매일	95	(11.0)	155	(12.1)	142	(9.2)	73	(5.0)	465	(9.1)
	일회성	158	(18.4)	241	(18.9)	336	(21.8)	339	(23.3)	1,074	(20.9)
	합계	860	(100)	1,276	(100)	1,541	(100)	1,452	(100)	5,129	(100)

[표6-1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발생빈도

(단위:명,%)

유기	1달에 한번이상	0	(0.0)	4	(19.0)	2	(12.5)	3	(13.6)	9	(12.5)
	1주일에 한번이상	0	(0.0)	2	(9.5)	3	(18.8)	1	(4.5)	6	(8.3)
	3개월에 한번이상	1	(7.7)	1	(4.8)	1	(6.3)	0	(0.0)	3	(4.2)
	6개월에 한번이상	0	(0.0)	0	(0.0)	1	(6.3)	3	(13.6)	4	(5.6)
	매일	10	(76.9)	9	(42.9)	3	(18.8)	5	(22.7)	27	(37.5)
	일회성	2	(15.4)	5	(29.8)	6	(37.5)	10	(45.5)	23	(31.9)
	합계	13	(100)	21	(100)	16	(100)	22	(100)	72	(100)
자기방임	1달에 한번이상	2	(4.8)	1	(4.0)	0	(0.0)	3	(10.3)	6	(5.3)
	1주일에 한번이상	6	(14.3)	2	(8.0)	2	(11.1)	3	(10.3)	13	(11.4)
	3개월에 한번이상	0	(0.0)	0	(0.0)	2	(11.1)	1	(3.4)	3	(2.6)
	6개월에 한번이상	2	(4.8)	1	(4.0)	2	(11.1)	0	(0.0)	5	(4.4)
	매일	31	(73.8)	18	(72.0)	10	(55.6)	22	(75.9)	81	(71.1)
	일회성	1	(2.4)	3	(12.0)	2	(11.1)	0	(0.0)	6	(5.3)
	합계	42	(100)	25	(100)	18	(100)	29	(100)	114	(100)
정서적학대	1달에 한번이상	202	(21.5)	314	(25.5)	370	(24.2)	326	(23.4)	1,212	(23.8)
	1주일에 한번이상	288	(30.6)	260	(21.1)	415	(27.1)	314	(22.6)	1,277	(25.1)
	3개월에 한번이상	77	(8.2)	146	(11.8)	189	(12.4)	226	(16.2)	638	(12.5)
	6개월에 한번이상	88	(9.4)	173	(14.0)	181	(11.8)	213	(15.3)	655	(12.9)
	매일	213	(22.6)	199	(16.1)	204	(13.3)	96	(6.9)	712	(14.0)
	일회성	73	(7.8)	141	(11.4)	170	(11.1)	217	(15.6)	601	(11.8)
	합계	941	(100)	1,233	(100)	1,529	(100)	1,392	(100)	5,095	(100)
무이유	1달에 한번이상	-	-	0	(0.0)	1	(20.0)	-	-	1	(14.3)
	6개월에 한번이상	-	-	0	(0.0)	1	(20.0)	-	-	1	(14.3)
	일회성	-	-	2	(100)	3	(60.0)	-	-	5	(71.4)
	합계	-	-	2	(100)	5	(100)	-	-	7	(100)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1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발생빈도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기타	12	(1.3)	13	(1.1)	22	(1.5)	13	(0.8)	60	(1.2)
무상	5	(0.5)	19	(1.6)	15	(1)	32	(2)	71	(1.4)
영구임대아파트	72	(7.9)	61	(5.1)	88	(6.1)	106	(6.7)	327	(6.4)
월세	56	(6.1)	61	(5.1)	67	(4.7)	87	(5.5)	271	(5.3)
의료복지시설	69	(7.5)	118	(9.9)	134	(9.4)	147	(9.4)	468	(9.2)
의료시설	17	(1.9)	25	(2.1)	27	(1.9)	25	(1.6)	94	(1.8)
자택	514	(56.2)	732	(61.4)	877	(61.3)	962	(61.2)	3,085	(60.4)
전세	158	(17.3)	150	(12.6)	190	(13.3)	182	(11.6)	680	(13.3)
주거복지시설	10	(1.1)	9	(0.8)	9	(0.6)	14	(0.9)	42	(0.8)
주야간보호시설	1	(0.1)	4	(0.3)	2	(0.1)	4	(0.3)	11	(0.2)

[표6-16]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	(0.1)	2	(0.2)	2	(0.1)	0	(0)	5	(0.1)
기능업 및 관련 기능종사자	1	(0.1)	0	(0)	2	(0.1)	5	(0.3)	8	(0.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0.3)	3	(0.3)	4	(0.3)	9	(0.6)	19	(0.4)
농,어,축산업 종사자	8	(0.9)	10	(0.8)	11	(0.8)	16	(1)	45	(0.9)
단순 노무 종사자	53	(5.8)	48	(4)	80	(5.6)	105	(6.7)	286	(5.6)
무직	800	(87.5)	1,067	(89.5)	1,251	(87.4)	1,344	(85.5)	4,462	(87.3)
사무종사자	1	(0.1)	2	(0.2)	1	(0.1)	6	(0.4)	10	(0.2)
서비스, 판매종사자	24	(2.6)	29	(2.4)	27	(1.9)	35	(2.2)	115	(2.3)
자영업자	17	(1.9)	21	(1.8)	31	(2.2)	37	(2.4)	106	(2.1)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	(0)	1	(0.1)	0	(0)	2	(0.1)	3	(0.1)
전문직	6	(0.7)	9	(0.8)	18	(1.3)	10	(0.6)	43	(0.8)
종교인	0	(0)	0	(0)	4	(0.3)	3	(0.2)	7	(0.1)

[표6-17]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2,591	(100)
매우 건강	25	(2.7)	43	(3.6)	44	(3.1)	69	(4.4)	181	(3.5)
건강	141	(15.4)	194	(16.3)	324	(22.6)	366	(23.3)	1,025	(20.1)
보통	371	(40.6)	486	(40.7)	580	(40.5)	650	(41.3)	2,086	(40.8)
건강치 못함	315	(34.5)	383	(32.2)	386	(27.0)	414	(26.3)	1,498	(29.3)
매우 건강치 못함	62	(6.8)	86	(7.2)	97	(6.8)	73	(4.6)	318	(6.2)

[표6-18] 학대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413	(100)	596	(100)	778	(100)	804	(100)	2,591	(100)
갑상선 질환	2	(0.5)	6	(1)	7	(0.9)	10	(1.2)	25	(1)
고혈압	76	(18.4)	123	(20.6)	147	(18.9)	180	(22.4)	526	(20.3)
골다공증	14	(3.4)	20	(20.6)	21	(2.7)	21	(2.6)	76	(2.9)
골절,후유증	7	(1.7)	20	(3.4)	18	(2.3)	26	(3.2)	71	(2.7)
관절염	53	(12.8)	81	(13.6)	116	(14.9)	113	(14.1)	363	(14)
기타	103	(24.9)	126	(21.1)	190	(24.4)	161	(20)	580	(22.4)
녹내장	0	(0)	2	(0.3)	2	(0.3)	3	(0.4)	7	(0.3)
당뇨병	44	(10.7)	81	(13.6)	99	(12.7)	114	(14.2)	338	(13)
디스크	20	(4.8)	27	(4.5)	32	(4.1)	44	(5.5)	123	(4.7)
만성간염,간경변	0	(0)	1	(0.2)	0	(0)	5	(0.6)	6	(0.2)
만성기관지염	0	(0)	2	(0.3)	2	(0.3)	0	(0)	4	(0.2)
만성신장질환	4	(1)	6	(1)	13	(1.7)	8	(1)	31	(1.2)
백내장	5	(1.2)	2	(0.3)	6	(0.8)	4	(0.5)	17	(0.7)
빈혈	3	(0.7)	4	(0.7)	3	(0.4)	3	(0.4)	13	(0.5)
소화성궤양	2	(0.5)	1	(0.2)	0	(0)	1	(0.1)	4	(0.2)
신경통	11	(2.7)	17	(2.9)	9	(1.2)	4	(0.5)	41	(1.6)
악성신생물(암)	12	(2.9)	12	(2)	28	(3.6)	19	(2.4)	71	(2.7)
요통,좌골통	14	(3.4)	12	(2)	14	(1.8)	11	(1.4)	51	(2)
저혈압	1	(0.2)	1	(0.2)	2	(0.3)	3	(0.4)	7	(0.3)
중풍,뇌혈관	17	(4.1)	27	(4.5)	33	(4.2)	39	(4.9)	116	(4.5)
천식	5	(1.2)	4	(0.7)	10	(1.3)	5	(0.6)	24	(0.9)
폐결핵,결핵	0	(0)	1	(0.2)	1	(0.1)	2	(0.2)	4	(0.2)
피부병	6	(1.5)	4	(0.7)	4	(0.5)	9	(1.1)	23	(0.9)
협심증,심근경색증	14	(3.4)	16	(2.7)	21	(2.7)	19	(2.4)	70	(2.7)

[표6-19]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73	(100)	93	(100)	120	(100)	119	(100)	405	(100)
신체장애	간	0 (0.0)	1 (1.4)	0 (0.0)	1 (1.4)	0 (0.0)	1 (1.3)	2 (0.7)	1 (0.4)	2 (0.7)
	간질	0 (0.0)	0 (0.0)	0 (0.0)	1 (1.4)	1 (1.4)	1 (1.3)	2 (0.7)	2 (0.7)	2 (0.7)
	뇌병변	4 (8.0)	6 (8.5)	3 (4.3)	6 (7.5)	19 (7.0)	19 (7.0)	19 (7.0)	19 (7.0)	19 (7.0)
	시각	5 (10.0)	10 (14.1)	15 (21.7)	12 (15.0)	42 (15.6)	42 (15.6)	42 (15.6)	42 (15.6)	42 (15.6)
	신장	1 (2.0)	2 (2.8)	5 (7.2)	0 (0.0)	8 (3.0)	8 (3.0)	8 (3.0)	8 (3.0)	8 (3.0)
	심장	1 (2.0)	4 (5.6)	2 (2.9)	0 (0.0)	7 (2.6)	7 (2.6)	7 (2.6)	7 (2.6)	7 (2.6)
	언어	2 (4.0)	2 (2.8)	2 (2.9)	0 (0.0)	6 (2.2)	6 (2.2)	6 (2.2)	6 (2.2)	6 (2.2)
	장루, 요루	0 (0.0)	0 (0.0)	0 (0.0)	1 (1.3)	1 (0.4)	1 (0.4)	1 (1.3)	1 (0.4)	1 (0.4)
	지적	1 (2.0)	0 (0.0)	0 (0.0)	3 (3.8)	4 (1.5)	4 (1.5)	4 (1.5)	4 (1.5)	4 (1.5)
	지체	25 (50.0)	23 (32.4)	20 (29.0)	32 (40.0)	100 (37.0)	100 (37.0)	100 (37.0)	100 (37.0)	100 (37.0)
	청각	11 (22.0)	22 (31.0)	21 (30.4)	24 (30.0)	78 (28.9)	78 (28.9)	78 (28.9)	78 (28.9)	78 (28.9)
	호흡기	0 (0.0)	1 (1.4)	0 (0.0)	1 (1.3)	2 (0.7)	2 (0.7)	2 (0.7)	2 (0.7)	2 (0.7)
	계	50 (100)	71 (100)	69 (100)	80 (100)	270 (100)	270 (100)	270 (100)	270 (100)	270 (100)
	정신장애	반사회적 인격	1 (4.3)	0 (0.0)	0 (0.0)	0 (0.0)	1 (0.7)	1 (0.7)	1 (0.7)	1 (0.7)
우울		15 (65.2)	19 (86.4)	40 (78.4)	34 (87.2)	108 (80.0)	108 (80.0)	108 (80.0)	108 (80.0)	108 (80.0)
정동		2 (8.7)	0 (0.0)	3 (5.9)	0 (0.0)	5 (3.7)	5 (3.7)	5 (3.7)	5 (3.7)	5 (3.7)
정신분열		5 (21.7)	3 (13.6)	6 (11.8)	5 (12.8)	19 (14.1)	19 (14.1)	19 (14.1)	19 (14.1)	19 (14.1)
지적		0 (0.0)	0 (0.0)	2 (3.9)	0 (0.0)	2 (1.5)	2 (1.5)	2 (1.5)	2 (1.5)	2 (1.5)
계		23 (100)	22 (100)	51 (100)	39 (100)	135 (100)	135 (100)	135 (100)	135 (100)	135 (100)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음

[표6-20]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치매없음	673	(73.7)	873	(73.2)	1,098	(76.7)	1,178	(74.9)	3,822	(74.8)
치매의증 (치매의심)	119	(13)	132	(11.1)	129	(9)	126	(8)	506	(9.9)
치매진단 (치매진단받음)	122	(13.3)	187	(15.7)	204	(14.3)	268	(17)	781	(15.3)

[표6-21]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분포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14	(100)	1,192	(100)	1,431	(100)	1,572	(100)	5,109	(100)
독립(피해자)	42	(4.6)	53	(4.4)	66	(4.6)	59	(3.8)	220	(4.3)
독립(학대행위자)	37	(4)	52	(4.4)	58	(4.1)	64	(4.1)	211	(4.1)
병원입원(피해자)	32	(3.5)	31	(2.6)	27	(1.9)	35	(2.2)	125	(2.4)
병원입원 (학대행위자)	52	(5.7)	50	(4.2)	74	(5.2)	77	(4.9)	253	(5)
부양강화	28	(3.1)	37	(3.1)	35	(2.4)	50	(3.2)	150	(2.9)
시설입소(피해자)	25	(2.7)	29	(2.4)	35	(2.4)	57	(3.6)	146	(2.9)
시설입소 (학대행위자)	4	(0.4)	3	(0.3)	7	(0.5)	10	(0.6)	24	(0.5)
지지자원강화	60	(6.6)	120	(10.1)	113	(7.9)	116	(7.4)	409	(8)
지지자원거부	36	(3.9)	36	(3)	72	(5)	43	(2.7)	187	(3.7)
타가족동거 (피해자)	35	(3.8)	41	(3.4)	34	(2.4)	49	(3.1)	159	(3.1)
타기관 의뢰	10	(1.1)	26	(2.2)	25	(1.7)	26	(1.7)	87	(1.7)
타지역노인전문 기관의뢰	1	(0.1)	1	(0.1)	1	(0.1)	1	(0.1)	4	(0.1)
피해자 개입거부	168	(18.4)	258	(21.6)	310	(21.7)	231	(14.7)	967	(18.9)
피해자사망	21	(2.3)	28	(2.3)	20	(1.4)	29	(1.8)	98	(1.9)
학대행위자사망	3	(0.3)	3	(0.3)	5	(0.3)	9	(0.6)	20	(0.4)
학대행위자 태도 변환	174	(19)	199	(16.7)	249	(17.4)	300	(19.1)	922	(18)
형사처벌 (학대행위자)	7	(0.8)	12	(1)	14	(1)	20	(1.3)	53	(1)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30	(3.3)	21	(1.8)	23	(1.6)	20	(1.3)	94	(1.8)
기타	0	(0)	0	(0)	0	(0)	1	(0.1)	1	(0)
기타(이민및이주)	47	(5.1)	101	(8.5)	114	(8)	111	(7.1)	373	(7.3)
무응답	102	(11.7)	91	(10.5)	149	(17.1)	264	(30.3)	606	(100)

[표6-22] 학대피해노인 종결현황과 사유

나. 학대행위자 현황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163	(100)	5,375	(100)
남자	703	(72.5)	905	(72.2)	1,113	(74.7)	1,173	(70.5)	3,894	(72.4)
여자	267	(27.5)	348	(27.8)	376	(25.3)	487	(29.3)	1,478	(27.5)
무응답	0	(0.0)	0	(0.0)	0	(0.0)	3	(0.2)	3	(0.1)

*학대행위자는 2명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과 차이가 있음

[표6-23]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663	(100)	5,375	(100)
10세 미만	0	(0.0)	0	(0.0)	0	(0.0)	1	(0.1)	1	(0.0)
10~19세이하	12	(1.2)	10	(0.8)	20	(1.3)	19	(1.1)	61	(1.1)
20~29세이하	18	(1.9)	31	(2.5)	36	(2.4)	51	(3.1)	136	(2.5)
30~39세이하	63	(6.5)	69	(5.5)	99	(6.6)	115	(6.9)	346	(6.4)
40~49세이하	194	(20.0)	265	(21.1)	299	(20.1)	297	(17.9)	1,055	(19.6)
50~59세이하	234	(24.1)	331	(26.4)	362	(24.3)	373	(22.4)	1,300	(24.2)
60~69세이하	137	(14.1)	202	(16.1)	238	(16.0)	275	(16.5)	852	(15.9)
70세이상	312	(32.2)	345	(27.5)	435	(29.2)	532	(32.0)	1,624	(30.2)

[표6-24] 학대행위자 연령대(평균연령 58.2세)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663	(100)	5,375	(100)
배우자	340	(35.1)	411	(32.8)	516	(34.7)	612	(36.8)	1,879	(35.0)
아들	323	(33.3)	436	(34.8)	507	(34.0)	496	(29.8)	1,762	(32.8)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113	(11.5)	177	(14.1)	173	(11.6)	185	(11.1)	648	(12.1)
딸	86	(8.9)	114	(9.1)	151	(10.1)	193	(11.5)	544	(10.1)
손자녀	28	(2.9)	40	(3.2)	46	(3.1)	59	(3.5)	173	(3.2)
며느리	27	(2.8)	27	(2.2)	19	(1.3)	17	(1.0)	90	(1.7)
피해자본인	27	(2.8)	17	(1.4)	18	(1.2)	19	(1.1)	81	(1.5)
기타관련종사자	2	(0.2)	2	(0.2)	14	(0.9)	17	(1.0)	35	(0.7)
기타타인	3	(0.3)	6	(0.5)	10	(0.7)	13	(0.8)	32	(0.6)

[표6-2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동거인	3	(0.3)	5	(0.4)	6	(0.4)	17	(1.0)	31	(0.6)
사위	7	(0.7)	5	(0.4)	10	(0.7)	9	(0.5)	31	(0.6)
친척	5	(0.5)	9	(0.7)	9	(0.6)	4	(0.2)	27	(0.5)
의료인	4	(0.4)	2	(0.2)	3	(0.2)	17	(1.0)	26	(0.5)
이웃	1	(0.1)	2	(0.2)	7	(0.5)	5	(0.3)	15	(0.3)
친구	1	(0.1)	0	(0.0)	0	(0.0)	0	(0.0)	1	(0.0)

[표6-2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663	(100)	5,375	(100)
초혼	535	(55.2)	685	(54.7)	799	(53.7)	847	(50.9)	2,866	(53.3)
재혼	36	(3.7)	45	(3.6)	36	(2.4)	70	(4.2)	187	(3.5)
이혼	92	(9.5)	121	(9.7)	134	(9.0)	128	(7.0)	475	(8.8)
사실혼	29	(3.0)	25	(2.0)	30	(2.0)	60	(3.6)	144	(2.7)
사별	20	(3.0)	25	(2.0)	30	(2.0)	60	(3.6)	144	(2.7)
미혼	240	(24.7)	342	(27.3)	459	(30.8)	510	(30.7)	1,551	(28.9)
가출	0	(0.0)	4	(0.3)	0	(0.0)	2	(0.1)	6	(0.1)
별거	18	(1.9)	9	(0.7)	14	(0.9)	17	(1.0)	58	(1.1)

[표6-26] 학대행위자 결혼상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663	(100)	5,375	(100)
무학	45	(4.6)	34	(2.7)	77	(5.2)	59	(3.5)	215	(4.0)
초졸	173	(17.8)	175	(14.0)	164	(11.0)	200	(12.0)	712	(13.2)
중졸	161	(16.5)	219	(17.5)	235	(15.8)	213	(12.8)	828	(15.4)
고졸	385	(39.7)	494	(39.4)	600	(40.3)	712	(42.8)	2,191	(40.8)
전문대졸 이상	206	(21.2)	331	(24.4)	413	(27.7)	479	(28.8)	1,429	(26.6)

[표6-27] 학대행위자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663	(100)	5,375	(100)
고소득	20	(2.1)	29	(2.3)	24	(1.6)	42	(2.5)	115	(2.1)
일반	593	(61.1)	835	(66.6)	980	(65.8)	1,183	(71.1)	3,591	(66.8)
저소득	89	(9.2)	112	(8.9)	80	(5.4)	76	(4.6)	357	(3.6)
수급자	67	(6.9)	87	(6.9)	109	(7.3)	124	(7.5)	387	(7.2)
소득없음	201	(20.7)	190	(15.2)	296	(19.6)	238	(14.3)	925	(17.2)

[표6-28] 학대행위자 경제수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9	(100)	1,663	(100)	5,375	(100)
무직	641	(66.1)	792	(63.2)	1,002	(67.3)	1,036	(64)	3,471	(64.6)
전문직	96	(9.9)	163	(13.0)	118	(7.9)	166	(10.0)	543	(10.1)
서비스, 판매종사자	50	(5.2)	62	(4.9)	85	(5.7)	100	(6.0)	297	(5.5)
단순 노무 종사자	72	(7.4)	102	(8.1)	115	(7.7)	149	(9.0)	438	(8.1)
자영업자	28	(2.9)	55	(4.4)	39	(2.6)	65	(3.9)	187	(3.5)
사무종사자	25	(2.6)	25	(2.0)	55	(3.7)	64	(3.8)	169	(3.1)
기술공 및 준전문가	27	(2.8)	15	(1.2)	47	(3.2)	35	(2.1)	127	(2.3)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4	(1.4)	9	(0.7)	10	(0.7)	18	(1.1)	51	(0.9)
농, 어, 축산업 종사자	6	(0.6)	14	(1.1)	7	(0.5)	16	(1.0)	43	(0.8)
기능업 및 관련 기능종사자	4	(0.4)	10	(0.8)	7	(0.5)	5	(0.3)	26	(0.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	(0.3)	2	(0.2)	2	(0.1)	7	(0.4)	14	(0.3)
종교인	4	(0.4)	4	(0.3)	2	(0.1)	2	(0.1)	12	(0.2)

[표6-29]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2	(100)	1,487	(100)	1,637	(100)	5,346	(100)
매우 건강	58	(6.0)	81	(6.5)	103	(6.9)	154	(9.4)	396	(7.4)
건강	210	(21.6)	264	(21.1)	380	(25.6)	457	(27.9)	1,311	(24.5)
보통	457	(47.1)	596	(47.6)	675	(45.4)	708	(43.2)	2,436	(45.6)
건강치 못함	205	(21.1)	259	(20.7)	282	(19.0)	289	(17.7)	1,035	(19.4)
매우 건강치 못함	40	(4.1)	52	(4.2)	47	(3.2)	29	(1.8)	168	(3.1)

[표6-30] 학대행위자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38	(100)	184	(100)	240	(100)	242	(100)	804	(100)
갑상선 질환	0	(0.0)	0	(0.0)	0	(0.0)	3	(1.2)	3	(0.4)
고혈압	19	(13.8)	26	(14.1)	23	(9.6)	22	(9.1)	90	(11.2)
골다공증	2	(1.4)	4	(2.2)	2	(0.8)	4	(1.7)	12	(1.5)
골절,후유증	2	(1.4)	2	(1.1)	4	(1.7)	6	(2.5)	14	(1.7)
관절염	7	(5.1)	7	(3.8)	14	(5.8)	12	(5.0)	40	(5.0)
기타	51	(37.0)	65	(35.3)	101	(42.1)	90	(37.2)	307	(38.2)
녹내장	0	(0.0)	1	(0.5)	0	(0.0)	1	(0.4)	2	(0.2)
당뇨병	28	(20.3)	31	(16.8)	32	(13.3)	34	(14.0)	125	(15.5)
디스크	4	(2.9)	3	(1.6)	5	(2.1)	8	(3.3)	20	(2.5)
만성간염, 간경변	1	(0.1)	3	(1.6)	4	(1.7)	4	(1.7)	12	(1.5)
만성기관지염	1	(0.7)	0	(0.0)	1	(0.4)	1	(0.4)	3	(0.4)
만성신장질환	4	(2.9)	3	(1.6)	3	(1.3)	2	(0.8)	12	(1.5)
백내장	0	(0.0)	1	(0.5)	1	(0.4)	3	(1.2)	5	(0.6)
빈혈	0	(0.0)	2	(1.1)	0	(0.0)	2	(0.8)	4	(0.5)
소화성궤양	0	(0.0)	1	(0.5)	0	(0.0)	1	(0.4)	2	(0.2)
신경통	3	(2.2)	2	(1.1)	4	(1.7)	2	(0.8)	11	(1.4)
악성신생물(암)	4	(2.9)	14	(7.6)	19	(7.9)	16	(6.6)	53	(6.6)
요통,좌골통	2	(1.4)	2	(1.1)	3	(1.3)	3	(1.2)	10	(1.2)
저혈압	0	(0.0)	0	(0.0)	1	(0.4)	1	(0.4)	2	(0.2)
중풍, 뇌혈관 질환	6	(4.3)	8	(4.3)	14	(5.8)	16	(6.6)	44	(5.5)
천식	0	(0.0)	2	(1.1)	3	(1.3)	1	(0.4)	6	(0.7)
폐결핵, 결핵	1	(0.7)	1	(0.5)	1	(0.4)	1	(0.4)	4	(0.5)
피부병	1	(0.7)	1	(0.5)	1	(0.4)	1	(0.4)	4	(0.5)
협심증, 심근경색증	2	(1.4)	4	(2.2)	3	(1.3)	8	(3.3)	17	(2.1)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31] 학대행위자 질병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9	(100)	171	(100)	192	(100)	214	(100)	686	(100)
신체장애	간질	2	(4.9)	3	(10.0)	1	(2.6)	3	(4.8)	9	(5.2)
	뇌병변	3	(7.3)	6	(20.0)	5	(12.8)	6	(9.5)	20	(11.6)
	시각	4	(9.8)	2	(6.7)	1	(2.6)	8	(12.7)	15	(8.7)
	신장	0	(0.0)	3	(10.0)	1	(2.6)	0	(0.0)	4	(2.3)
	심장	0	(0.0)	0	(0.0)	1	(2.6)	0	(0.0)	1	(0.6)
	언어	0	(0.0)	2	(6.7)	0	(0.0)	4	(6.3)	6	(3.5)
	장루, 요루	0	(0.0)	0	(0.0)	1	(2.6)	0	(0.0)	1	(0.6)
	지적	13	(31.7)	0	(0.0)	0	(0.0)	15	(23.8)	28	(16.2)
	지체	10	(24.4)	8	(26.7)	18	(46.2)	19	(30.2)	55	(31.8)
	청각	7	(17.1)	4	(13.3)	10	(25.6)	7	(11.1)	28	(16.2)
	호흡기	2	(4.9)	1	(3.3)	0	(0.0)	0	(0.0)	3	(1.7)
	자폐	0	(0.0)	1	(3.3)	1	(2.6)	1	(1.6)	3	(1.7)
	계	41	(100)	30	(100)	39	(100)	63	(100)	173	(100)
정신장애	반사회적 인격	4	(5.9)	11	(7.8)	16	(10.5)	7	(4.6)	38	(7.4)
	우울	29	(42.6)	39	(27.7)	39	(25.5)	47	(31.1)	154	(30.0)
	정동	4	(5.9)	11	(7.8)	9	(5.9)	23	(15.2)	47	(9.2)
	정신분열	31	(45.6)	54	(38.3)	76	(49.7)	74	(49.0)	235	(45.3)
	지적	0	(0.0)	29	(18.4)	13	(8.5)	0	(0.0)	39	(7.6)
	계	68	(100)	141	(100)	153	(100)	151	(100)	513	(100)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 판정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음

[표6-32]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970	(100)	1,253	(100)	1,486	(100)	1,637	(100)	5,346	(100)
치매없음	864	(89.1)	1,139	(90.9)	1,343	(90.4)	1,491	(91.1)	4,837	(90.5)
치매의증 (치매의심)	71	(7.3)	73	(5.8)	73	(4.9)	73	(4.5)	290	(5.4)
치매진단 (치매진단받음)	35	(3.6)	41	(3.3)	70	(4.7)	73	(4.5)	219	(4.1)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 판정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음

[표6-33] 학대행위자 치매정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78	(100)	225	(100)	238	(100)	225	(100)	866	(100)
도박	6	(3.4)	8	(3.6)	3	(1.3)	10	(4.4)	27	(3.1)
알콜사용장애	167	(93.8)	212	(94.2)	229	(96.2)	211	(93.8)	819	(94.6)
약물사용장애	5	(2.8)	5	(2.2)	6	(2.5)	4	(1.8)	20	(2.3)

[표6-34]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2. 시설학대 사례 분석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4	(100)	167	(100)	188	(100)	212	(100)	671	(100)
노인의료복지시설	79	(76.0)	133	(79.6)	134	(71.3)	148	(69.8)	494	(73.6)
노인주거복지시설	7	(0.8)	6	(3.6)	8	(4.3)	5	(2.4)	26	(3.9)
재가노인복지시설	4	(3.8)	13	(7.8)	9	(4.8)	13	(6.1)	39	(5.8)
요양병원	3	(6.7)	4	(2.4)	20	(10.6)	22	(10.4)	49	(7.3)
일반병원	1	(1.0)	1	(0.6)	1	(0.5)	5	(2.4)	8	(1.2)
공공장소	8	(7.7)	7	(4.2)	8	(4.3)	8	(3.8)	31	(4.6)
기타	2	(1.9)	3	(1.8)	8	(4.3)	11	(5.2)	24	(3.6)

[표6-35] 학대발생 장소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4	167	188	212	671
신근의무자					
소계	24	66	68	79	23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0	1	2	2	5
방문요양과돌봄,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0	0	0	1	1
노인복지시설종사자	10	37	51	40	138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0	0	0	0	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9	2	3	20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0	0	0	1	1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0	6	0	3	9
응급 구조사 및 의료기사	0	1	0	0	1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1	4	5	4	14
노인복지시설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7	8	8	25	48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0	0	0	0	0
비신근의무자					
소계	80	101	120	133	434
학대피해노인	1	1	3	1	6
학대행위자	0	1	1	0	2
친족	46	64	62	77	249
타인	3	0	5	5	13
관련기관 종사자	30	35	49	50	164

[표6-36] 신고자 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65~69세이하	6	(5.8)	10	(6.0)	10	(5.3)	16	(7.5)	42	(6.3)
	70~74세이하	8	(7.7)	18	(10.8)	19	(10.1)	13	(6.1)	58	(8.6)
	75~79세이하	13	(12.5)	21	(12.6)	30	(16.0)	31	(14.6)	95	(14.2)
	80~84세이하	33	(31.7)	39	(23.4)	50	(26.6)	46	(21.7)	168	(25.0)
	85~89세이하	28	(26.9)	44	(26.3)	47	(25.0)	60	(28.3)	179	(26.7)
	90~94세이하	15	(14.4)	24	(14.4)	22	(11.7)	30	(14.2)	91	(13.6)
	95~99세이하	1	(1.0)	10	(6.0)	8	(4.3)	14	(6.6)	33	(4.9)
	100세이상	0	(0.0)	1	(0.6)	2	(1.1)	2	(0.9)	5	(0.7)
	합계	104	(100)	167	(100)	188	(100)	212	(100)	671	(100)
남자	65~69세이하	4	(11.1)	6	(11.3)	3	(5.9)	7	(10.4)	20	(9.7)
	70~74세이하	5	(13.9)	11	(20.8)	7	(13.7)	2	(3.0)	25	(12.1)
	75~79세이하	6	(16.7)	7	(13.2)	10	(19.6)	16	(23.9)	39	(18.8)
	80~84세이하	11	(30.6)	10	(18.9)	15	(29.4)	15	(22.4)	51	(24.6)
	85~89세이하	9	(25.0)	11	(20.8)	12	(23.5)	20	(29.9)	52	(25.1)
	90~94세이하	1	(2.8)	7	(13.2)	3	(5.9)	5	(7.5)	16	(7.7)
	95~99세이하	0	(0.0)	1	(1.9)	1	(2.0)	2	(3.0)	4	(1.9)
	합계	36	(100)	53	(100)	51	(100)	67	(100)	207	(100)
	여자	65~69세이하	0	(0.0)	1	(0.9)	2	(1.5)	2	(1.4)	5
70~74세이하		2	(2.9)	4	(3.5)	7	(5.1)	9	(6.2)	22	(4.7)
75~79세이하		3	(4.4)	7	(6.1)	12	(8.8)	11	(7.6)	33	(7.1)
80~84세이하		7	(10.3)	14	(12.3)	20	(14.6)	15	(10.3)	56	(12.1)
85~89세이하		22	(32.4)	29	(25.4)	35	(25.5)	31	(21.4)	117	(25.2)
90~94세이하		19	(27.9)	33	(28.9)	35	(25.5)	40	(27.6)	127	(27.4)
95~99세이하		14	(20.6)	17	(14.9)	19	(13.9)	25	(17.2)	75	(16.2)
100세이상		1	(1.5)	9	(7.9)	7	(5.1)	12	(8.3)	29	(6.3)
합계		68	(100)	114	(100)	137	(100)	145	(100)	464	(100)

[표6-37] 시설학대 피해노인 연령대

(단위:건,%)

구분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계	104	167	188	212	671
	응급	2	3	0	6	11
	비응급	33	51	54	75	213
	잠재적	69	113	134	131	447
노인의료복지시설	응급	0	0	0	0	0
	비응급	25	42	40	57	164
	잠재적	54	91	94	91	330
노인주거복지시설	응급	0	1	0	0	1
	비응급	2	1	2	1	6
	잠재적	5	4	6	4	19
재가노인복지시설	응급	0	0	0	0	0
	비응급	1	5	0	1	7
	잠재적	3	8	9	12	32
요양병원	응급	0	0	0	0	0
	비응급	0	1	6	4	11
	잠재적	3	3	14	18	38
일반병원	응급	0	0	0	0	0
	비응급	0	0	0	2	2
	잠재적	1	1	1	3	6
공공장소	응급	1	1	0	3	5
	비응급	4	2	3	4	13
	잠재적	3	4	5	1	13
기타	응급	1	1	0	3	5
	비응급	1	0	3	5	9
	잠재적	0	2	5	2	9

[표6-38] 시설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결과 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경제적 학대	2	2	2	13	19
	방임	87	151	130	161	529
	성적학대	14	13	15	16	58
	신체적 학대	45	133	139	121	438
	유기	0	2	2	11	15
	자기방임	4	1	0	1	6
	정서적 학대	42	60	62	56	220
	합계	194	362	350	379	1,285
남자	경제적 학대	0	0	0	6	6
	방임	27	53	41	61	182
	신체적 학대	18	38	47	32	135
	자기방임	3	0	0	1	4
	정서적 학대	20	15	10	24	69
	합계	73	112	103	133	421
여자	경제적 학대	2	2	2	7	13
	방임	60	98	89	100	347
	성적 학대	9	9	10	9	37
	신체적 학대	27	95	92	89	303
	유기	0	0	2	9	11
	자기방임	1	1	0	0	2
	정서적 학대	22	45	52	32	151
	합계	121	250	247	246	864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시설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39] 시설학대 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경제적학대	2	(1.0)	2	(0.6)	2	(0.6)	13	(3.4)	19	(1.5)
	방임	87	(44.8)	151	(41.7)	130	(37.1)	161	(42.5)	529	(41.2)
	성적학대	14	(7.2)	13	(3.6)	15	(4.3)	16	(4.2)	58	(4.5)
	신체적학대	45	(23.2)	133	(36.7)	139	(39.7)	121	(31.9)	438	(34.1)
	유기	0	(0.0)	2	(0.6)	2	(0.6)	11	(2.9)	15	(1.2)
	자기방임	4	(2.1)	1	(0.3)	0	(0.0)	1	(0.3)	6	(0.5)
	정서적학대	42	(21.6)	60	(16.6)	62	(17.7)	56	(14.8)	220	(17.1)
	합계	194	(100)	362	(100)	350	(100)	379	(100)	1,285	(100)
65세 이상 69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0	(0.0)	1	(3.3)	1	(1.2)
	방임	2	(15.4)	5	(21.7)	1	(6.7)	7	(23.3)	15	(18.5)
	성적학대	3	(23.1)	0	(0.0)	1	(6.7)	0	(0.0)	4	(4.9)
	신체적학대	4	(30.8)	10	(43.5)	6	(40.0)	11	(36.7)	31	(38.3)
	자기방임	0	(0.0)	0	(0.0)	0	(0.0)	1	(3.3)	1	(1.2)
	정서적학대	4	(30.8)	8	(34.8)	7	(46.7)	10	(33.3)	29	(35.8)
	합계	13	(100)	23	(100)	15	(100)	30	(100)	81	(100)
70세 이상 74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0	(0.0)	5	(19.2)	5	(4.3)
	방임	4	(22.2)	13	(40.6)	13	(32.5)	8	(30.8)	38	(32.8)
	성적학대	0	(0.0)	0	(0.0)	2	(5.0)	3	(11.5)	5	(4.3)
	신체적학대	7	(38.9)	19	(59.4)	17	(42.5)	5	(23.1)	49	(42.2)
	유기	0	(0.0)	0	(0.0)	1	(2.5)	0	(0.0)	1	(0.9)
	정서적학대	7	(38.9)	0	(0.0)	7	(17.5)	4	(15.4)	18	(15.5)
	합계	18	(100)	32	(100)	40	(100)	26	(100)	116	(100)
75세 이상 79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방임	7	(31.8)	19	(38.0)	22	(36.1)	27	(45.0)	75	(38.9)
	성적학대	1	(4.5)	2	(4.0)	2	(3.3)	0	(0.0)	5	(2.6)
	신체적학대	7	(3.8)	17	(34.0)	19	(31.1)	17	(28.3)	60	(31.1)
	유기	0	(0.0)	0	(0.0)	0	(0.0)	4	(6.7)	4	(2.1)
	자기방임	1	(0.0)	1	(0.0)	0	(0.0)	0	(0.0)	2	(1.0)
	정서적학대	6	(27.3)	11	(22.0)	18	(29.5)	12	(20.0)	47	(24.4)
합계	22	(100)	50	(100)	61	(100)	60	(100)	193	(100)	
80세 이상 84세 이하	경제적학대	2	(3.1)	2	(2.8)	0	(0.0)	3	(3.8)	7	(2.2)
	방임	37	(56.9)	39	(54.2)	43	(43.9)	34	(42.5)	153	(48.6)
	성적학대	2	(3.1)	5	(6.9)	2	(2.0)	4	(5.0)	13	(4.1)

[표6-40] 시설학대 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80세 이상 84세 이하	신체적학대	10	(15.4)	15	(20.8)	45	(45.9)	28	(35.0)	98	(31.1)
	유기	0	(0.0)	2	(2.8)	0	(0.0)	1	(1.3)	3	(1.0)
	자기방임	1	(1.5)	0	(0.0)	0	(0.0)	0	(0.0)	1	(0.3)
	정서적학대	13	(20.0)	9	(12.5)	8	(8.2)	10	(12.5)	40	(12.7)
	합계	65	(100)	72	(100)	98	(100)	80	(100)	315	(100)
85세 이상 89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1	(1.2)	3	(2.7)	4	(1.2)
	방임	14	(58.3)	22	(36.7)	14	(36.8)	17	(35.4)	67	(39.4)
	성적학대	2	(8.3)	0	(0.0)	1	(2.6)	1	(2.1)	4	(2.4)
	신체적학대	3	(12.5)	26	(43.3)	14	(36.8)	17	(35.4)	60	(35.3)
	유기	0	(0.0)	0	(0.0)	0	(0.0)	3	(6.3)	3	(1.8)
	자기방임	2	(8.3)	0	(0.0)	0	(0.0)	0	(0.0)	2	(1.2)
	정서적학대	3	(12.5)	12	(20.0)	8	(21.1)	10	(20.8)	33	(19.4)
	합계	24	(100)	60	(100)	38	(100)	48	(100)	170	(100)
90세 이상 94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0	(0.0)	1	(0.9)	1	(0.3)
	방임	14	(58.3)	22	(36.7)	14	(36.8)	17	(35.4)	67	(39.4)
	성적학대	2	(8.3)	0	(0.0)	1	(2.6)	1	(2.1)	4	(2.4)
	신체적학대	3	(12.5)	26	(45.3)	14	(36.8)	17	(35.4)	67	(39.4)
	유기	0	(0.0)	0	(0.0)	0	(0.0)	3	(6.3)	3	(1.8)
	자기방임	2	(8.3)	0	(0.0)	0	(0.0)	0	(0.0)	2	(1.2)
	정서적학대	3	(12.5)	12	(20.0)	8	(21.1)	10	(20.8)	33	(19.4)
	합계	24	(100)	60	(100)	38	(100)	48	(100)	170	(100)
95세 이상 99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0	(0.0)	1	(4.5)	1	(1.5)
	방임	0	(0.0)	5	(15.6)	7	(58.3)	12	(54.5)	24	(35.3)
	성적학대	0	(0.0)	4	(12.5)	0	(0.0)	2	(9.1)	6	(8.8)
	신체적학대	2	(100)	16	(50.0)	2	(16.7)	5	(22.7)	25	(36.8)
	유기	0	(0.0)	0	(0.0)	1	(8.3)	2	(9.1)	3	(4.4)
	정서적학대	0	(0.0)	7	(21.9)	2	(16.7)	0	(0.0)	9	(13.2)
	합계	2	(100)	32	(100)	12	(100)	22	(100)	68	(100)
100세 이상	방임	0	(0.0)	0	(0.0)	0	(0.0)	2	(100)	2	(33.3)
	성적학대	0	(0.0)	0	(0.0)	1	(33.3)	0	(0.0)	1	(16.7)
	신체적학대	0	(0.0)	0	(0.0)	1	(33.3)	0	(0.0)	1	(16.7)
	정서적학대	0	(0.0)	1	(100)	1	(33.3)	0	(0.0)	2	(33.3)
	합계	0	(0.0)	1	(100)	3	(100)	2	(100)	6	(100)

[표6-40] 시설학대 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104	(100)	167	(100)	188	(100)	212	(100)	671	(100)
무학	27	(26.0)	70	(41.9)	77	(41.0)	60	(28.3)	234	(34.9)
초졸	49	(47.1)	74	(44.3)	82	(43.6)	101	(47.6)	306	(45.6)
중졸	16	(20.1)	3	(1.7)	16	(6.9)	22	(10.3)	57	(8.4)
고졸	9	(8.7)	14	(8.4)	10	(5.3)	24	(11.3)	57	(8.5)
전문대졸 이상	3	(2.9)	6	(3.6)	3	(1.6)	5	(2.4)	17	(2.5)

[표6-41] 시설학대피해노인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달에 한번이상	24	(12.4)	31	(8.6)	41	(11.7)	47	(12.4)	143	(11.1)
	1주일에 한번이상	31	(16.0)	70	(19.3)	63	(18.0)	68	(17.9)	232	(18.1)
	3개월에 한번이상	8	(4.1)	8	(2.2)	18	(5.1)	4	(1.1)	38	(3.0)
	6개월에 한번이상	4	(2.1)	19	(5.2)	16	(4.6)	13	(3.4)	52	(4.0)
	매일	40	(20.6)	70	(19.3)	42	(12.0)	82	(21.6)	234	(18.2)
	일회성	87	(44.8)	164	(45.3)	170	(48.6)	165	(43.5)	586	(45.6)
	합계	194	(100)	362	(100)	350	(100)	379	(100)	1,285	(100)
경제전학대	1달에 한번이상	0	(0.0)	2	(100)	0	(0.0)	3	(23.1)	5	(26.3)
	1주일에 한번이상	0	(0.0)	0	(0.0)	0	(0.0)	5	(38.5)	5	(26.3)
	일회성	2	(100)	0	(0.0)	2	(100)	5	(38.5)	9	(47.4)
	합계	2	(100)	2	(100)	2	(100)	13	(100)	19	(100)
미파	1달에 한번이상	10	(11.5)	9	(6.0)	14	(10.8)	16	(9.9)	49	(9.3)
	1주일에 한번이상	8	(9.2)	28	(18.5)	16	(12.3)	18	(11.2)	70	(13.2)
	3개월에 한번이상	2	(2.3)	5	(3.3)	3	(2.3)	3	(1.9)	13	(2.5)
	6개월에 한번이상	2	(2.3)	7	(4.6)	7	(5.4)	3	(1.9)	19	(3.6)
	매일	16	(18.4)	14	(9.3)	12	(9.2)	35	(21.7)	77	(14.6)
	일회성	49	(56.3)	88	(58.3)	78	(60.0)	86	(53.4)	301	(56.9)
	합계	87	(100)	151	(100)	130	(100)	161	(100)	529	(100)
초전학대	1달에 한번이상	1	(7.1)	0	(0.0)	6	(40.0)	1	(6.3)	8	(13.8)
	1주일에 한번이상	7	(50.0)	0	(0.0)	2	(13.3)	4	(25.0)	13	(22.4)
	6개월에 한번이상	0	(0.0)	0	(0.0)	1	(6.7)	0	(0.0)	1	(1.7)
	매일	4	(28.6)	9	(69.2)	3	(20.0)	6	(37.5)	22	(37.9)
	일회성	2	(14.3)	4	(30.8)	3	(20.0)	5	(31.3)	14	(24.1)
	합계	14	(100)	13	(100)	15	(100)	16	(100)	58	(100)

[표6-42] 시설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신체적학대	1달에 한번이상	4	(8.9)	10	(7.5)	16	(11.5)	16	(13.2)	46	(10.5)
	1주일에 한번이상	5	(11.1)	27	(20.3)	30	(21.6)	19	(15.7)	81	(18.5)
	3개월에 한번이상	4	(8.9)	2	(1.5)	6	(4.3)	1	(0.8)	13	(3.0)
	6개월에 한번이상	2	(4.4)	6	(3.8)	5	(3.6)	6	(5.0)	18	(4.1)
	매일	6	(13.3)	45	(33.8)	25	(18.0)	28	(23.1)	104	(23.7)
	일회성	24	(53.3)	44	(33.1)	57	(41.0)	51	(42.1)	176	(40.2)
	합계	45	(100)	133	(100)	139	(100)	121	(100)	438	(100)
유기	1달에 한번이상	0	0.0	0	(0.0)	0	(0.0)	1	(9.1)	1	(6.7)
	1주일에 한번이상	0	0.0	0	(0.0)	0	(0.0)	1	(9.1)	1	(6.7)
	6개월에 한번이상	0	0.0	0	(0.0)	1	(50.0)	2	(18.2)	3	(20.0)
	매일	0	0.0	0	(0.0)	1	(50.0)	0	(0.0)	1	(6.7)
	일회성	0	0.0	2	(100)	0	(0.0)	7	(63.6)	9	(60.0)
	합계	0	0.0	2	(100)	2	(100)	11	(100)	15	(100)
자기방어	매일	4	(100)	0	(0.0)	0	0.0	1	(100)	5	(83.3)
	일회성	0	(0.0)	1	(100)	0	0.0	0	(0.0)	1	(16.7)
	합계	4	(100)	1	(100)	0	0.0	1	(100)	6	(100)
정서적학대	1달에 한번이상	9	(21.4)	10	(16.7)	5	(8.1)	10	(17.9)	34	(15.5)
	1주일에 한번이상	11	(26.2)	15	(25.0)	15	(24.2)	21	(37.5)	62	(28.2)
	3개월에 한번이상	2	(4.8)	1	(1.7)	9	(14.5)	0	(0.0)	12	(5.5)
	6개월에 한번이상	0	(0.0)	7	(11.7)	2	(3.2)	2	(3.6)	11	(5.0)
	매일	10	(23.8)	2	(3.3)	1	(1.6)	12	(21.4)	25	(11.4)
	일회성	10	(23.8)	25	(41.7)	30	(48.4)	11	(19.6)	76	(34.5)
	합계	42	(100)	60	(100)	62	(100)	56	(100)	220	(100)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시설학대피해노인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42] 시설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개월 미만	19	(9.8)	39	(10.8)	18	(5.1)	38	(10.0)	114	(8.9)
1개월이상 1년미만	46	(23.7)	86	(23.8)	117	(33.4)	76	(20.1)	325	(25.3)
1년이상 5년미만	30	(15.5)	63	(17.4)	43	(12.3)	73	(19.3)	209	(16.3)
5년이상	17	(8.8)	14	(3.9)	11	(3.1)	28	(7.4)	70	(5.4)
일회성	82	(42.3)	160	(44.2)	161	(46.0)	164	43.3)	567	(44.1)
합계	194	(100)	362	(100)	350	(100)	379	(100)	1,285	(100)

[표6-43] 시설학대 피해노인 학대 지속기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4	(100)	167	(100)	188	(100)	212	(100)	671	(100)
매우 건강	1	(1.0)	1	(0.6)	0	(0.0)	0	(0.0)	2	(0.3)
건강	2	(1.9)	1	(0.6)	7	(3.7)	4	(1.9)	14	(2.1)
보통	18	(17.3)	38	(22.8)	46	(24.5)	36	(17.0)	138	(20.6)
건강치 못함	65	(62.5)	103	(61.7)	94	(50.0)	133	(62.7)	395	(58.9)
매우 건강치 못함	18	(17.3)	24	(14.4)	41	(21.8)	39	(18.4)	122	(18.2)

[표6-44] 시설학대 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55	(100)	95	(100)	133	(100)	160	(100)	443	(100)
고혈압	11	(20.0)	27	(28.4)	32	(24.1)	45	(28.1)	115	(26.0)
당뇨병	9	(16.4)	15	(15.8)	21	(15.8)	27	(16.9)	72	(16.3)
중풍, 뇌혈관 질환	3	(5.5)	13	(13.7)	12	(9.0)	13	(8.1)	41	(9.3)
관절염	5	(9.1)	7	(7.4)	7	(5.3)	6	(3.8)	25	(5.6)
골다공증	3	(5.5)	4	(4.2)	3	(2.3)	4	(2.5)	14	(3.2)
골절, 후유증	0	(0.0)	1	(1.1)	4	(3.0)	9	(5.6)	14	(3.2)
협심증, 심근경색증	2	(3.6)	1	(1.1)	8	(6.0)	1	(0.6)	12	(2.7)
피부병	1	(1.8)	1	(1.1)	1	(0.8)	5	(3.1)	8	(1.8)
요통, 좌골통	0	(0.0)	0	(0.0)	3	(2.3)	4	(2.5)	7	(1.6)
만성신장질환	1	(1.8)	1	(1.8)	3	(2.3)	1	(0.6)	6	(1.4)
갑상선 질환	0	(0.0)	2	(2.1)	1	(0.8)	2	(1.3)	5	(1.1)
저혈압	0	(0.0)	1	(1.1)	1	(0.8)	2	(1.3)	4	(0.9)
디스크	0	(0.0)	1	(1.1)	1	(0.8)	1	(0.6)	3	(0.7)
백내장	0	(0.0)	0	(0.0)	1	(0.8)	2	(1.3)	3	(0.7)
빈혈	0	(0.0)	1	(1.1)	1	(0.8)	1	(0.6)	3	(0.7)
약성신생물(암)	0	(0.0)	0	(0.0)	2	(1.5)	1	(0.6)	3	(0.7)
천식	2	(3.6)	0	(0.0)	0	(0.0)	0	(0.0)	2	(0.5)
신경통	2	(3.6)	0	(0.0)	0	(0.0)	0	(0.0)	2	(0.5)
만성간염, 간경변	0	(0.0)	0	(0.0)	0	(0.0)	2	(1.3)	2	(0.5)
기타	16	(29.1)	20	(21.1)	32	(24.1)	34	(21.3)	102	(23.0)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시설학대피해노인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45] 시설학대 피해노인 질병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5	(100)	12	(100)	16	(100)	17	(100)	60	(100)
신체장애	간질	0	(0.0)	0	(0.0)	0	(0.0)	1	(9.1)	1	(2.5)
	뇌병변	1	(8.3)	2	(33.3)	0	(0.0)	2	(18.2)	5	(12.5)
	시각	2	(16.7)	1	(16.7)	5	(45.5)	3	(27.3)	11	(27.5)
	언어	2	(16.7)	1	(16.7)	1	(9.1)	0	(0.0)	4	(10.0)
	지적	1	(8.3)	0	(0.0)	0	(0.0)	0	(0.0)	1	(2.5)
	청각	2	(16.7)	1	(16.7)	3	(27.3)	1	(9.1)	7	(17.5)
	소계	12	(100)	6	(100)	11	(100)	11	(100)	40	(100)
정신장애	우울	2	(66.7)	6	(100)	4	(80.0)	6	(66.7)	16	(80.0)
	정동	0	(0.0)	0	(0.0)	1	(20.0)	0	(0.0)	1	(5.0)
	정신분열	1	(33.3)	0	(0.0)	0	(0.0)	2	(33.3)	3	(15.0)
	소계	3	(100)	6	(100)	5	(100)	6	(100)	20	(100)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 시설학대피해노인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음

[표6-46] 시설학대 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4	(100)	179	(100)	188	(100)	212	(100)	671	(100)
치매없음	19	(18.3)	23	(13.8)	47	(25.0)	34	(16.0)	123	(16.8)
치매의증	11	(10.6)	27	(16.2)	25	(13.3)	25	(11.8)	88	(12.0)
치매진단	74	(71.2)	117	(70.1)	116	(61.7)	153	(72.2)	460	(62.9)

[표6-47] 시설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94	(100)	362	(100)	350	(100)	379	(100)	1,285	(100)
1개월 미만	19	(9.8)	39	(10.8)	18	(5.1)	38	(10.0)	114	(8.9)
1개월이상 1년 미만	46	(23.7)	86	(23.8)	117	(33.4)	76	(20.1)	325	(25.3)
1년이상 5년 미만	30	(15.5)	63	(17.4)	43	(12.3)	73	(19.3)	209	(16.3)
5년이상	17	(8.8)	14	(3.9)	11	(3.1)	28	(7.4)	70	(5.48)
일회성	82	(42.3)	160	(44.2)	161	(46.0)	164	(43.3)	567	(44.1)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시설학대피해노인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48] 시설학대 유형별 학대지속기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4	(100)	167	(100)	188	(100)	212	(100)	671	(100)
독립(피해자)	5	(4.8)	11	(6.6)	7	(3.7)	7	(3.3)	30	(4.5)
독립(학대행위자)	2	(1.9)	1	(0.6)	3	(1.6)	0	(0.0)	6	(0.9)
병원입원(피해자)	18	(17.3)	12	(7.2)	8	(4.3)	9	(4.2)	47	(7.0)
병원입원 (학대행위자)	0	(0.0)	0	(0.0)	1	(0.5)	2	(0.9)	3	(0.4)
부양강화	2	(1.9)	1	(0.6)	7	(3.7)	2	(0.9)	12	(1.8)
시설입소(피해자)	8	(7.7)	16	(9.6)	8	(4.3)	20	(9.4)	52	(7.7)
시설입소 (학대행위자)	0	(0.0)	1	(0.6)	0	(0.0)	0	(0.0)	1	(0.1)
지지자원강화	10	(9.6)	32	(19.2)	11	(5.9)	16	(7.5)	69	(10.3)
지지자원거부	0	(0.0)	1	(0.6)	0	(0.0)	0	(0.0)	1	(0.1)
타가족동거 (피해자)	2	(1.9)	4	(2.4)	4	(2.1)	5	(2.4)	15	(2.2)
타기관의뢰	2	(1.9)	5	(3.0)	5	(2.7)	5	(2.4)	17	(2.5)
타지역노인전문 기관의뢰	0	(0.0)	0	(0.0)	0	(0.0)	1	(0.5)	1	(0.1)
피해자 개입거부	2	(1.9)	3	(1.8)	3	(1.6)	1	(0.5)	9	(1.3)
피해자사망	8	(7.7)	20	(12.0)	9	(4.8)	16	(7.5)	53	(7.9)
학대행위자태도 변환	8	(7.7)	10	(6.0)	9	(4.8)	9	(4.2)	36	(5.4)
형사처벌 (학대행위자)	1	(1.0)	1	(0.6)	5	(2.7)	2	(0.9)	9	(1.3)
내담자의 무리한 요구	1	(1.0)	0	(0.0)	0	(0.0)	0	(0.0)	1	(0.1)
기타 (이민 및 이주 등)	15	(14.4)	27	(16.2)	39	(20.7)	75	(35.4)	156	(23.2)
무응답	20	(19.2)	22	(13.2)	69	(36.7)	42	(19.8)	153	(22.8)

[표6-49] 시설학대 피해노인 종결현황과 사유

3. 재학대 사례 분석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재학대 사례	105	120	156	212
	건수				
	비율(%)	11.5	10.1	10.9	13.5
전년 대비 재학대 발생 증감률(%)		-18.6	14.3	30.0	35.9

[표6-50] 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 건수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65~69세이하	18	(17.1)	13	(10.8)	33	(21.2)	35	(16.5)	99	(16.7)
	70~74세이하	31	(29.5)	36	(30)	34	(21.8)	54	(25.5)	155	(26.1)
	75~79세이하	25	(23.8)	32	(26.7)	41	(26.3)	53	(25)	151	(25.5)
	80~84세이하	21	(20)	24	(20)	29	(18.6)	42	(19.8)	116	(19.6)
	85~89세이하	6	(5.7)	11	(9.2)	11	(7.1)	21	(9.9)	49	(8.3)
	90~94세이하	3	(2.9)	2	(1.7)	2	(1.3)	2	(0.9)	7	(1.2)
	95~99세이하	1	(1)	2	(1.7)	2	(1.3)	2	(0.9)	7	(1.2)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남자	65~69세이하	5	(18.5)	1	(4.5)	5	(15.6)	3	(7.5)	14	(11.6)
	70~74세이하	8	(29.6)	8	(36.4)	5	(15.6)	13	(32.5)	34	(28.1)
	75~79세이하	4	(14.8)	5	(22.7)	7	(21.9)	4	(10)	20	(16.5)
	80~84세이하	7	(25.9)	3	(13.6)	9	(28.1)	12	(30)	31	(25.6)
	85~89세이하	1	(3.7)	3	(13.6)	3	(9.4)	6	(15)	13	(10.7)
	90~94세이하	2	(7.4)	1	(4.5)	3	(9.4)	2	(5)	8	(6.6)
	95~99세이하	0	(0)	1	(4.5)	0	(0)	0	(0)	1	(0.78)
	합계	27	(100)	22	(100)	32	(100)	40	(100)	121	(100)
여자	65~69세이하	13	(16.7)	12	(12.2)	28	(22.6)	32	(18.6)	85	(18)
	70~74세이하	23	(29.5)	28	(28.6)	29	(23.4)	41	(23.8)	121	(25.6)
	75~79세이하	21	(26.9)	27	(27.6)	34	(27.4)	49	(28.5)	131	(27.8)
	80~84세이하	14	(17.9)	21	(21.4)	20	(16.1)	30	(17.4)	85	(18)
	85~89세이하	5	(6.4)	8	(8.2)	8	(6.5)	15	(8.7)	36	(7.6)
	90~94세이하	1	(1.3)	1	(1)	3	(2.4)	3	(1.7)	8	(1.7)
	95~99세이하	1	(1.3)	1	(1)	2	(1.6)	2	(1.2)	6	(1.3)
	합계	78	(100)	98	(100)	124	(100)	172	(100)	472	(100)

[표6-51] 재학대 피해노인 연령대(평균연령=76.4세)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비응급	52	(49.5)	73	(60.8)	110	(70.5)	119	(56.1)	354	(59.7)
	응급	5	(4.8)	4	(3.3)	4	(2.6)	8	(3.8)	21	(3.5)
	잠재력	48	(45.7)	43	(35.8)	42	(26.9)	85	(40.1)	218	(36.8)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남자	비응급	15	(55.6)	15	(68.2)	20	(62.5)	18	(45)	68	(56.2)
	응급	1	(3.7)	0	(0)	1	(3.1)	0	(0)	2	(1.7)
	잠재력	11	(40.7)	7	(31.8)	11	(34.4)	22	(55)	51	(42.1)
	합계	27	(100)	22	(100)	32	(100)	40	(100)	121	(100)
여자	비응급	37	(47.4)	58	(59.2)	90	(72.6)	101	(58.7)	286	(60.6)
	응급	4	(5.1)	4	(4.1)	3	(2.4)	8	(4.7)	19	(4)
	잠재력	37	(47.4)	36	(36.7)	31	(25)	63	(36.6)	167	(35.4)
	합계	78	(100)	98	(100)	124	(100)	172	(100)	472	(100)

[표6-52]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사례판정 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경제적학대	3	2	5	16	26
	방임	9	6	4	13	32
	성적학대	1	2	6	4	13
	신체적학대	99	138	158	204	599
	유기	0	0	1	3	4
	자기방임	2	3	0	1	6
	정서적학대	135	139	206	216	696
	무응답	0	0	2	0	2
합계	249	290	382	457	1,378	
남자	경제적학대	2	0	1	2	5
	방임	9	2	0	8	19
	신체적학대	25	27	31	34	117
	자기방임	1	0	0	1	2
	정서적학대	28	22	48	38	136
	무응답	0	0	1	0	1
	합계	65	51	81	83	280
여자	경제적학대	1	2	4	14	21
	방임	0	4	4	5	13
	성적학대	1	2	6	4	13
	신체적학대	74	111	127	170	482
	유기	0	0	1	3	4
	자기방임	1	3	0	0	4
	정서적학대	107	117	158	178	560
	무응답	0	0	1	0	1
합계	184	239	301	374	1,098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재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53]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5세 이상 - 69세 이하	경제적학대	2	(5.0)	0	(0.0)	0	(0.0)	0	(0.0)	2	(1.0)
	방임	1	(2.5)	0	(0.0)	0	(0.0)	0	(0.0)	1	(1.0)
	성적학대	0	(0.0)	0	(0.0)	0	(0.0)	2	(3.0)	2	(1.0)
	신체적학대	10	(25.0)	13	(46.0)	30	(42.0)	30	(48.0)	83	(41.0)
	자기방임	1	(0.4)	0	(0.0)	0	(0.0)	0	(0.0)	1	(1.0)
	정서적학대	26	(65.0)	15	(54.0)	40	(56.0)	31	(49.0)	112	(55.0)
	무응답	0	(0.0)	0	(0.0)	1	(1.0)	0	(0.0)	1	(1.0)
	합계	40	(100)	28	(100)	71	(100)	63	(100)	202	(100)
70세 이상 - 74세 이하	경제적학대	1	(1.5)	0	(0.0)	1	(1.0)	0	(0.0)	2	(1.0)
	성적학대	0	(0.0)	0	(0.0)	2	(2.0)	2	(2.0)	4	(1.0)
	신체적학대	21	(35.0)	48	(49.0)	41	(53.0)	53	(56.0)	163	(50.0)
	자기방임	1	(1.5)	3	(3.0)	0	(0.0)	0	(0.0)	4	(1.0)
	정서적학대	37	(62.0)	46	(47.0)	34	(44.0)	39	(41.0)	156	(47.0)
	합계	60	(100)	97	(100)	78	(100)	94	(100)	329	(100)
75세 이상 - 75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3	(2.0)	7	(6.0)	10	(3.0)
	방임	7	(9.0)	2	(3.0)	0	(0.0)	2	(2.0)	11	(3.0)
	성적학대	0	(0.0)	0	(0.0)	3	(2.0)	0	(0.0)	3	(1.0)
	신체적학대	29	(39.0)	34	(49.0)	40	(32.0)	43	(35.0)	146	(37.0)
	정서적학대	39	(52.0)	33	(48.0)	79	(63.0)	72	(58.0)	223	(57.0)
	합계	75	(100)	69	(100)	125	(100)	124	(100)	393	(100)
80세 이상 - 84세 이하	경제적학대	0	(0.0)	0	(0.0)	0	(0.0)	6	(5.0)	6	(2.0)
	방임	1	(2.0)	0	(0.0)	1	(2.0)	5	(4.0)	7	(2.0)
	성적학대	0	(0.0)	2	(3.0)	0	(0.0)	0	(0.0)	2	(1.0)
	신체적학대	27	(49.0)	27	(44.0)	30	(48.0)	51	(44.0)	135	(46.0)
	정서적학대	27	(49.0)	32	(52.0)	31	(50.0)	54	(47.0)	144	(49.0)
	합계	55	(100)	61	(100)	62	(100)	116	(100)	294	(100)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재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54] 재학대 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미혼	1	(1)	2	(1.7)	0	(0)	2	(0.9)	5	(0.8)
별거	1	(1)	0	(0)	1	(0.6)	2	(0.9)	4	(0.7)
사별	27	(25.7)	36	(30)	42	(26.9)	59	(27.8)	164	(27.7)
사실혼	4	(3.8)	4	(3.3)	5	(3.2)	4	(1.9)	17	(2.9)
이혼	5	(4.8)	3	(2.5)	11	(7.1)	8	(3.8)	27	(4.6)
재혼	5	(4.8)	6	(5)	6	(3.8)	16	(7.5)	33	(5.6)
초혼	62	(59)	69	(57.5)	91	(58.3)	121	(57.1)	343	(57.8)

[표6-55] 재학대 피해노인 결혼상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동거	95	(90.5)	101	(84.2)	133	(85.3)	177	(83.5)	506	(85.3)
비동거	10	(9.5)	19	(15.8)	23	(14.7)	35	(16.5)	87	(14.7)

[표6-56]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16	(100)	156	(100)	212	(100)	593	(100)
가정내	105	(100)	0	(96.7)	152	(97.4)	211	(99.5)	584	(98.5)
노인의료복지시설	0	(3.8)	4	(3.3)	0	(0.0)	0	(0.0)	4	(0.7)
공공장소	0	(1)	0	(0)	2	(1.3)	0	(0.0)	2	(0.3)
기타	0	(25.7)	0	(0)	2	(1.3)	1	(0.5)	3	(0.5)

[표6-57] 재학대 발생장소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기타	1	(1.0)	2	(1.7)	1	(0.6)	2	(0.9)	6	(1.0)
무상	1	(1.0)	3	(2.5)	4	(2.6)	3	(1.4)	11	(1.9)
영구임대아파트	13	(12.4)	6	(5.0)	11	(7.1)	24	(11.3)	54	(9.1)
월세	7	(6.7)	11	(9.2)	4	(2.6)	12	(5.7)	34	(5.7)
의료복지시설	0	(0.0)	3	(2.5)	0	(0.0)	0	(0.0)	3	(0.5)
의료시설	0	(0.0)	1	(0.8)	0	(0.0)	0	(0.0)	1	(0.2)
자택	62	(59.0)	76	(63.3)	105	(67.3)	141	(66.5)	384	(64.8)
전세	21	(20.0)	17	(14.2)	31	(19.9)	29	(13.7)	98	(16.5)
주거복지시설	0	(0.0)	0	(0.0)	0	(0.0)	1	(0.5)	1	(0.2)
주야간보호시설	0	(0.0)	1	(0.8)	0	(0.0)	0	(0.0)	1	(0.2)

[표6-58] 재학대 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기타	0	(0)	5	(4.2)	1	(0.6)	3	(1.4)	9	(1.5)
노인단독	9	(8.6)	10	(8.3)	15	(9.6)	24	(11.3)	58	(9.8)
노인부부	42	(40)	37	(30.8)	49	(31.4)	75	(35.4)	203	(34.2)
손자녀동거	6	(5.7)	5	(4.2)	11	(7.1)	6	(2.8)	28	(4.8)
자녀,손자녀동거	6	(5.7)	5	(4.2)	3	(1.9)	8	(3.8)	22	(3.7)
자녀동거	42	(40)	58	(48.3)	77	(49.4)	96	(45.3)	273	(46)

[표6-59]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43	(100)	161	(100)	203	(100)	268	(100)	775	(100)
기타 동거인	0	(0)	1	(0.6)	1	(0.5)	4	(1.5)	6	(0.8)
기타 친,인척	0	(0)	2	(1.2)	1	(0.5)	0	(0)	3	(0.4)
딸	9	(6.3)	15	(9.3)	19	(9.4)	22	(8.2)	65	(8.4)
며느리	2	(1.4)	3	(1.9)	2	(1)	6	(2.2)	13	(1.7)
배우자	65	(45.5)	64	(39.8)	73	(36)	102	(38.1)	304	(39.2)
사위	1	(0.7)	0	(0)	0	(0)	1	(0.4)	2	(0.3)
손자녀	12	(8.4)	10	(6.2)	20	(9.9)	18	(6.7)	60	(7.7)
시설	0	(0)	2	(1.2)	0	(0)	1	(0.4)	3	(0.4)
아들	44	(30.8)	52	(32.3)	70	(34.5)	93	(34.7)	259	(33.4)
무응답	10	(7)	12	(7.5)	17	(8.4)	21	(7.8)	60	(7.7)

*학대피해노인이 2명이상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60]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자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고졸	10	(9.5)	9	(7.5)	31	(19.9)	47	(22.2)	97	(16.4)
무학	23	(21.9)	25	(20.8)	28	(17.9)	38	(17.9)	114	(19.2)
전문대졸이상	3	(2.9)	8	(6.7)	4	(2.6)	9	(4.2)	24	(4)
중졸	17	(16.2)	18	(15)	34	(21.8)	33	(15.6)	102	(17.2)
초졸	52	(49.5)	60	(50)	59	(37.8)	85	(40.1)	256	(43.2)

[표6-61] 재학대 피해노인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고소득	2	(1.9)	3	(2.5)	0	(0.0)	2	(0.9)	7	(1.2)
일반	55	(52.4)	70	(58.3)	86	(55.1)	110	(51.9)	321	(54.1)
저소득	21	(20.0)	12	(10.0)	18	(11.5)	23	(10.8)	74	(12.5)
수급자	14	(13.3)	18	(15.0)	29	(18.6)	37	(17.5)	98	(16.5)
소득없음	13	(12.4)	17	(14.2)	23	(14.7)	40	(18.9)	93	(15.7)

[표6-62] 재학대 피해노인 경제수준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1주일에 한번이상	32	(30.5)	20	(16.7)	30	(19.2)	33	(15.6)	115	(19.4)
1달에 한번이상	26	(24.8)	36	(30.0)	31	(19.9)	57	(26.9)	150	(25.3)
3개월에 한번이상	8	(7.6)	25	(20.8)	34	(21.8)	42	(19.8)	109	(18.4)
6개월에 한번이상	17	(16.2)	28	(23.3)	36	(23.1)	53	(25.0)	134	(22.6)
매일	14	(13.3)	5	(4.2)	8	(5.1)	13	(6.1)	40	(6.7)
일회성	8	(7.6)	6	(5.0)	17	(10.9)	14	(6.6)	45	(7.6)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재학대사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63] 재학대 발생빈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1개월 미만	0	(0.0)	2	(1.7)	3	(1.9)	1	(0.5)	6	(1.0)
1개월이상 1년 미만	6	(5.7)	22	(18.3)	12	(7.7)	16	(7.5)	56	(9.4)
1년이상 5년 미만	39	(37.1)	53	(44.2)	73	(46.8)	108	(50.9)	273	(46.0)
5년 이상	53	(50.5)	39	(32.5)	52	(33.3)	74	(34.9)	218	(36.8)
일회성	7	(6.7)	4	(3.3)	16	(10.3)	13	(6.1)	40	(6.7)

[표6-64] 재학대 지속기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기타	1	(1)	2	(1.7)	1	(0.6)	2	(0.9)	6	(1)
무상	1	(1)	3	(2.5)	4	(2.6)	3	(1.4)	11	(1.9)
영구임대아파트	13	(12.4)	6	(5)	11	(7.1)	24	(11.3)	54	(9.1)
월세	7	(6.7)	11	(9.2)	4	(2.6)	12	(5.7)	34	(5.7)
의료복지시설	0	(0)	3	(2.5)	0	(0)	0	(0)	3	(0.5)
의료시설	0	(0)	1	(0.8)	0	(0)	0	(0)	1	(0.2)
자택	62	(59)	76	(63.3)	105	(67.3)	141	(66.5)	384	(64.8)
전세	21	(20)	17	(14.2)	31	(19.9)	29	(13.7)	98	(16.5)
주거복지시설	0	(0)	0	(0)	0	(0)	1	(0.5)	1	(0.2)
주야간보호시설	0	(0)	1	(0.8)	0	(0)	0	(0)	1	(0.2)

[표6-65] 재학대 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20	(100)	156	(100)	212	(100)	593	(100)
무직	89	(84.8)	106	(88.3)	137	(87.8)	175	(82.5)	507	(85.5)
전문직	1	(1.0)	1	(0.8)	0	(0.0)	2	(0.9)	4	(0.7)
서비스, 판매종사자	3	(2.9)	2	(1.7)	2	(1.3)	1	(0.5)	8	(1.3)
단순 노무 종사자	9	(8.6)	7	(5.8)	9	(5.8)	24	(11.3)	49	(8.3)
자영업자	1	(1.0)	2	(1.7)	3	(1.9)	2	(0.9)	8	(1.3)
사무종사자	1	(1.0)	0	(0.0)	0	(0.0)	0	(0.0)	1	(0.2)
기술공 및 준전문가	0	(0.0)	0	(0.0)	1	(0.6)	1	(0.5)	2	(0.3)
농,어, 축산업 종사자	1	(1.0)	2	(1.7)	4	(2.6)	5	(2.4)	12	(2.0)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	(0.0)	0	(0.0)	0	(0.0)	1	(0.5)	1	(0.2)
종교인	0	(0.0)	0	(0.0)	0	(0.0)	1	(0.5)	1	(0.2)

[표6-66] 재학대 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5	(100)	119	(100)	156	(100)	212	(100)	593	(100)
매우 건강	2	(1.9)	0	(0.0)	6	(3.8)	5	(2.4)	13	(2.2)
건강	20	(18.9)	26	(21.7)	32	(20.5)	42	(19.8)	120	(20.2)
보통	38	(36.2)	52	(43.3)	76	(48.7)	109	(51.4)	275	(46.4)
건강치 못함	38	(36.2)	39	(32.5)	37	(23.7)	53	(25.0)	167	(28.2)
매우 건강치 못함	7	(6.7)	3	(2.5)	5	(3.2)	3	(1.4)	18	(3.0)

[표6-67] 재학대 피해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45	(100)	66	(100)	71	(100)	80	(100)	262	(100)
고혈압	6	(13.3)	9	(13.6)	9	(12.7)	14	(17.5)	38	(14.5)
당뇨병	1	(2.2)	8	(12.1)	13	(18.3)	9	(11.3)	31	(11.8)
중풍,뇌혈관 질환	4	(8.9)	2	(3.0)	1	(1.4)	1	(1.3)	8	(3.1)
관절염	6	(13.3)	10	(15.2)	10	(14.1)	20	(25.0)	46	(17.6)
골다공증	3	(6.7)	4	(6.1)	5	(7.0)	3	(3.8)	15	(5.7)
골절,후유증	0	(0.0)	4	(6.1)	3	(4.2)	2	(2.5)	9	(3.4)
협심증, 심근경색증	2	(4.4)	4	(6.1)	0	(0.0)	1	(1.3)	7	(2.7)
피부병	0	(0.0)	1	(1.5)	2	(2.8)	1	(1.3)	4	(1.5)
요통,좌골통	2	(4.4)	2	(3.0)	2	(2.8)	0	(0.0)	6	(2.30)
소화성궤양	1	(2.2)	0	(0.0)	0	(0.0)	0	(0.0)	1	(0.4)
만성신장질환	0	(0.0)	1	(1.5)	0	(0.0)	1	(1.3)	2	(0.8)
갑상선 질환	1	(2.2)	0	(0.0)	2	(2.8)	0	(0.0)	3	(1.1)
저혈압	0	(0.0)	0	(0.0)	1	(1.4)	0	(0.0)	1	(0.4)
디스크	2	(4.4)	4	(6.1)	6	(8.5)	3	(3.8)	15	(5.7)
백내장	3	(6.7)	0	(0.0)	0	(0.0)	0	(0.0)	3	(1.1)
빈혈	1	(2.2)	1	(1.5)	0	(0.0)	0	(0.0)	2	(0.8)
약성신생물(암)	0	(0.0)	0	(0.0)	4	(5.6)	3	(3.8)	7	(2.7)
천식	0	(0.0)	1	(1.5)	0	(0.0)	2	(2.5)	3	(1.1)
신경통	1	(2.2)	5	(7.6)	1	(1.4)	1	(1.3)	8	(3.1)
녹내장	0	(0.0)	0	(0.0)	0	(0.0)	1	(1.3)	1	(0.4)
기타	12	(26.7)	10	(15.2)	12	(16.9)	18	(22.5)	52	(19.8)

*질병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학대사례 통계 수치(156건)와 차이가 있음

[표6-68] 재학대 피해노인 질병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5	(100)	10	(100)	13	(100)	25	(100)	63	(100)
신체장애	시각	0	(0.0)	1	(12.5)	2	(22.2)	4	(22.2)	7	(16.7)
	신장	0	(0.0)	0	(0.0)	1	(11.1)	0	(0.0)	1	(2.4)
	뇌병변	1	(14.3)	0	(0.0)	0	(0.0)	0	(0.0)	1	(2.4)
	지적	0	(0.0)	0	(0.0)	0	(0.0)	1	(5.6)	1	(2.4)
	청각	1	(14.3)	3	(37.5)	4	(44.4)	6	(33.3)	14	(33.3)
	지체	5	(71.4)	4	(50.5)	2	(22.2)	7	(38.9)	18	(42.9)
	계	7	(100)	8	(100)	9	(100)	18	(100)	42	(100)
정신장애	우울	6	(75.0)	2	(100)	3	(75.0)	7	(100)	18	(85.7)
	정동	2	(25.0)	0	(0.0)	0	(0.0)	0	(0.0)	2	(9.5)
	지적	0	(0.0)	0	(0.0)	1	(25.0)	0	(0.0)	1	(4.8)
	계	8	(100)	2	(100)	4	(100)	7	(100)	21	(100)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학대상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음

[표5-69] 재학대 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106	(100)	92	(119)	156	(100)	212	(100)	593	(100)
치매없음		81	(76.4)	94	(79.0)	135	(86.5)	169	(79.7)	479	(80.8)
치매의증		18	(17.0)	14	(11.8)	12	(7.7)	22	(10.4)	66	(11.1)
치매진단		7	(6.6)	11	(9.2)	9	(5.8)	21	(9.9)	48	(8.1)

[표6-70]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2,310	(100)	2,552	(100)	3,344	(100)	4,642	(100)	12,848	(100)
가정내	부분도움	486	(21.0)	875	(34.3)	1,273	(38.1)	1,049	(22.6)	3,683	(28.7)
	완전도움	59	(2.6)	75	(2.9)	52	(1.6)	73	(1.6)	259	(2.0)
	완전자립	1,765	(76.5)	1,602	(62.8)	2,019	(60.4)	3,520	(75.8)	8,906	(69.3)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의 수행 능력을 의미함

[표6-71] 재학대 피해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법률 서비스	법률상담 연결	2	(100)	1	(33.3)	2	(100)	1	(50)	6	(66.7)
	법률소송 지원	0	(0)	2	(66.7)	0	(0)	1	(50)	3	(33.3)
	합계	2	(100)	3	(100)	2	(100)	2	(100)	9	(100)
보호 서비스	시설보호 (기타)	0	(0)	0	(0)	1	(10)	0	(0)	1	(1.8)
	시설보호 (노인의료 복지시설)	0	(0)	0	(0)	0	(0)	4	(15.4)	4	(7.1)
	시설보호 (노인주거 복지시설)	0	(0)	1	(8.3)	0	(0)	1	(3.8)	2	(3.6)
	임시보호 (기타)	0	(0)	1	(8.3)	0	(0)	3	(11.5)	4	(7.1)
	임시보호 (노인보호 쉼터)	8	(100)	10	(83.3)	8	(80)	16	(61.5)	42	(75)
	임시보호 (노인주거 복지시설)	0	(0)	0	(0)	1	(10)	1	(3.8)	2	(3.6)
	지킴이연결	0	(0)	0	(0)	0	(0)	1	(3.8)	1	(1.8)
	합계	8	(100)	12	(100)	10	(100)	26	(100)	56	(100)
복지 서비스	국민기초 수급원 연결	0	(0)	0	(0)	0	(0)	1	(0.3)	1	(0.1)
	기타지원 연결	8	(12.9)	204	(66.7)	25	(17.5)	44	(13.7)	201	(33.7)
	긴급복지 지원연결	0	(0)	0	(0)	0	(0)	2	(0.6)	2	(0.2)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32	(51.6)	44	(14.4)	45	(31.5)	42	(13)	163	(19.6)
	재가 서비스 연결	1	(1.6)	1	(0.3)	0	(0)	1	(0.3)	3	(0.4)
	직접후원	16	(25.8)	54	(17.6)	61	(42.7)	146	(45.3)	277	(33.3)
	후원 연결	5	(8.1)	3	(1)	12	(8.4)	86	(26.7)	106	(12.7)
	합계	62	(100)	306	(100)	143	(100)	322	(100)	833	(100)
사후 관리	시모니터링 비대면 사후관리	0	(0)	0	(0)	0	(0)	59	(100)	59	(100)
	합계	0	(0)	0	(0)	0	(0)	59	(100)	59	(100)

[표6-72] 재학대 피해노인 제공서비스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상담 서비스	가족상담	92	(7.5)	192	(8.7)	146	(6.9)	190	(6.7)	620	(7.4)
	관련자상담	364	(29.9)	703	(31.8)	740	(35)	899	(31.8)	2,706	(32.3)
	심리 및 기타검사	0	(0)	20	(0.9)	2	(0.1)	0	(0)	22	(0.3)
	피해자 개별상담	765	(62.7)	1288	(58.3)	1223	(67.8)	1740	(61.5)	5,016	(59.9)
	피해자 집단상담	0	(0)	6	(0.3)	5	(0.2)	0	(0)	11	(0.1)
	합계	1,221	(100)	2,209	(100)	2,116	(100)	2,829	(100)	8,375	(100)
의료 서비스	연계 (방문간호)	0	(0)	1	(12.5)	0	(0)	1	(4.5)	2	(3.9)
	연계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1	(5.6)	3	(37.5)	0	(0)	5	(22.7)	9	(17.6)
	연계(이송)	1	(5.6)	1	(12.5)	1	(33.3)	0	(0)	3	(5.9)
	지원 (의료비지급)	0	(0)	0	(0)	0	(0)	9	(40.9)	9	(17.6)
	지원 (이송및동행)	16	(88.9)	3	(37.5)	2	(66.7)	7	(31.8)	28	(54.9)
	합계	18	(100)	8	(100)	3	(100)	22	(100)	51	(100)
정보 제공 서비스	재학대 예방교육	123	(10.7)	96	(5.3)	98	(5.8)	63	(3.3)	380	(5.8)
	정보제공	1,027	(89.3)	1,722	(94.7)	1,606	(94.2)	1,870	(96.7)	6,225	(94.2)
	합계	1,150	(100)	1,818	(100)	1,704	(100)	1,933	(100)	6,605	(100)

[표6-72] 재학대 피해노인 제공서비스

(단위:건,%)

구분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무응답	계
계	599	696	13	26	32	6	4	2	1,378
	(43.5)	(50.5)	(0.9)	(1.9)	(2.3)	(0.4)	(0.3)	(0.1)	(100)
일회성	27	22	4	3	4	0	0	0	60
	(45.0)	(36.7)	(6.7)	(5.0)	(6.7)	(0.0)	(0.0)	(0.0)	(100)
1개월 미만	5	5	0	1	1	0	0	0	12
	(41.7)	(41.7)	(0.0)	(8.3)	(8.3)	(0.0)	(0.0)	(0.0)	(100)
1개월 -1년 미만	55	59	3	1	7	2	0	0	127
	(43.3)	(46.5)	(2.4)	(0.8)	(5.5)	(1.6)	(0.0)	(0.0)	(100)
1년 -5년 미만	263	309	4	7	17	0	3	1	604
	(43.5)	(51.2)	(0.7)	(1.2)	(2.8)	(0.0)	(0.5)	(0.2)	(100)
5년 이상	249	301	2	14	3	4	1	1	575
	(43.3)	(52.3)	(0.3)	(2.4)	(0.5)π	(0.7)	(0.2)	(0.2)	(100)

*학대유형 중복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재학대사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표6-73] 2019~2022년 재학대 유형별 학대지속기간

(단위: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계	105	(120)	120	(100)	150	(100)	212	(100)	593	(100)
피해자 개입거부	18	(27)	27	(22.5)	38	(24.4)	30	(14.2)	113	(19.1)
학대행위자 태도변화	22	(27)	27	(22.5)	22	(14.1)	40	(18.9)	111	(18.7)
병원입원 (학대행위자)	10	(7)	7	(5.8)	8	(5.1)	19	(9)	44	(7.4)
지시자원거부	9	(6)	6	(5)	13	(8.3)	10	(4.7)	38	(6.4)
지시자원강화	4	(8)	8	(6.7)	12	(7.7)	6	(2.8)	30	(5.1)
내담자의 무리한요구	2	(2)	2	(1.7)	3	(1.9)	3	(1.4)	10	(1.7)
독립 (피해자)	1	(8)	8	(6.7)	7	(4.5)	3	(1.4)	19	(3.2)
독립 (학대행위자)	6	(6)	6	(5)	8	(5.1)	5	(2.4)	25	(4.2)
병원입원 (피해자)	1	(0)	0	(0)	1	(0.6)	3	(1.4)	25	(4.2)
부양강화	2	(4)	4	(3.3)	4	(2.6)	3	(1.4)	13	(2.2)
시설입소 (피해자)	2	(2)	2	(1.7)	1	(0.6)	5	(2.4)	10	(1.7)
시설입소 (학대행위자)	1	(0)	0	(0)	0	(0)	1	(0.5)	2	(0.3)
타가족동거 (피해자)	3	(3)	3	(2.5)	3	(1.9)	5	(2.4)	14	(2.4)
타기관의뢰	0	(2)	2	(1.7)	8	(5.1)	5	(2.4)	15	(2.5)
피해자 사망	1	(1)	1	(0.8)	1	(0.6)	4	(1.9)	7	(1.2)
학대행위자 사망	1	(0)	0	(0)	1	(0.6)	0	(0)	2	(0.3)
형사처벌 (학대행위자)	2	(2)	2	(1.7)	2	(1.3)	9	(4.2)	15	(2.5)
기타	9	(11)	11	(9.2)	11	(7.1)	6	(2.8)	37	(6.2)
무응답	11	(4)	4	(3.3)	13	(8.3)	55	(25.9)	83	(14.0)

[표6-74] 재학대 피해노인 증결현황과 사유 분포

2022년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작성인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

편집인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연구팀 김은별 주임

발행처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